

국가인권위원회 2021년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

# 과거 해외입양절차 인권침해사례 보고서: 심층 인터뷰

## 해외입양인 당사자들의 목소리

2021. 11





## 발행정보

국가인권위원회 2021년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  
과거 해외입양절차 인권침해사례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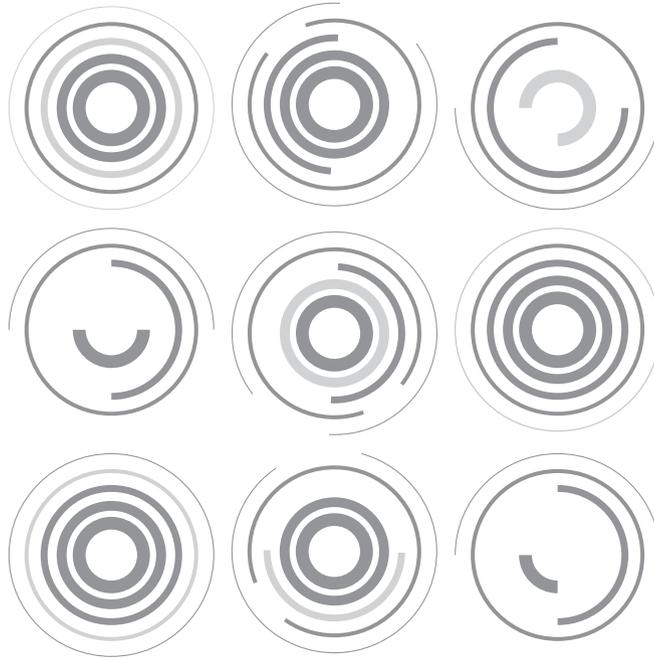
**발행일** 2021.11.30  
**발행처** 사단법인뿌리의집  
**발행인** 김도현  
**기획편집** 황선미 김창선  
**주소** 03031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25-10  
**전화** 02-3210-2451  
**팩스** 02-3210-2453  
**홈페이지** [www.koroot.org](http://www.koroot.org)  
**디자인인쇄** 해든디앤피 02-2266-6372

국가인권위원회 2021년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

**과거 해외입양절차 인권침해사례 보고서:  
심층 인터뷰**

**해외입양인 당사자들의 목소리**

2021. 11



# 목 차

<b>들어가는 말</b> .....	006
<b>이 보고서를 위한 조사 작업</b> .....	008
<b>1. 조사의 배경: 왜 해외입양이 인권의제인가?</b> .....	011
<b>2. 과거 해외입양절차 심층 인터뷰</b> .....	023
<b>2.1 해외입양절차: 해외입양인의 경우</b> .....	025
<b>1) 해외입양절차</b> .....	026
① 입양의뢰	
② 고아호적창설	
③ 신분변경	
④ 기록의 접근성: 기록의 조작	
⑤ 불명확한 입양과정 혹은 제3자에 의한 입양	
⑥ 성장과정: 입양가족과의 관계 및 사후관리의 부재	
⑦ 모국방문 및 가족찾기	
<b>2) 해외입양절차에서 국가의 역할</b> .....	081
① 해외입양절차에서 국가의 공백	
② 시민권 취득의 문제	
③ 국적회복의 사안	
<b>3) 해외입양에 관한 단상</b> .....	094
<b>2.2 해외입양절차: 입양관계자의 경우</b> .....	100
<b>1) 해외입양절차</b> .....	101
① 해외입양절차에서 드러난 입양기관의 인식	
② 입양아동의 의뢰 경로	
③ 해외입양절차의 완료	
④ 사후관리 및 가족찾기	

2.3 해외입양절차와 인권 .....	113
1) 해외입양의 국가폭력적 성격 .....	114
2) 인권 책무자로서의 국가의 역할 .....	116
<b>3. 해외입양절차에 관한 국내법제 및 국제인권규범 .....</b>	<b>121</b>
3.1. 과거 해외입양절차에 관한 국내법제 검토 .....	124
3.2. 해외입양절차에 관한 국제인권규범 검토 .....	151
<b>4. 국제입양에 대한 정부차원의 조사 해외 사례 .....</b>	<b>161</b>
4.1. 네덜란드 .....	163
4.2. 벨기에 .....	166
4.3. 아일랜드 .....	167
4.4. 호주 .....	170
4.5. 그 외 조사계획 중인 국가 .....	171
<b>5. 결론 및 제언 .....</b>	<b>177</b>
5.1. 결론 .....	179
5.2. 제언 .....	183
해외입양인 10인 인터뷰 감회 .....	189
함께해주신 분들 .....	197
뿌리의집 .....	198



본 보고서에 흔쾌히 마음을 열고,  
자신의 삶을 증언해주신 열 분의 해외입양인 당사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Dae-won Kim (Jan Wenger)

한국명 김대원

—

Emily Warnecke

한국명 강숙원

—

Kara Bos

한국명 강미숙

—

Kim Goudreau

한국명 김명숙

—

Matthew Robert Scherer

한국명 서마태로버트

—

Robyn Park

한국명 박주영

—

Shiko Yoon-shik Boxman

한국명 김윤식

—

이름을 원한 세 분의 입양인

—

어떤 사건을 목격하거나 피해자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침묵하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

-한홍구, 성공회대학교 교수

(사)뿌리의집은 2003년 설립 이후 18년 동안 한편으로는 해외입양인 비영리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해외입양 관련 인식개선과 법제 개혁에 진력해왔다. 이 일을 하는 동안 뿌리의집은 해외입양인들과 슬픔과 기쁨을 함께하는 중에 끊임없이 그들의 목소리에 노출되었다. 수많은 낮과 밤을 이 조사에 나타나는 이야기들보다 훨씬 많은 상처와 트라우마로 가득한 이야기들 한가운데서 살아왔다. 사실, 목격자로 혹은 증언자로서 뿌리의집은 해외입양 인권 의제를 해외입양 관련 법제를 개정하는 일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는 했다. 그러나 그 법제는 그 법제의 개정 이후, 그 법의 적용에 따라 입양되는 사람들의 인권이 보호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훼손된 인권으로 고통을 겪어온 입양인들을 위해, 한국 사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아무것도 진척시키지 못했다. 돌아보면 그것이 최선이었다 하더라도, 너무 늦게 목격자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다는 자괴감이 없지 않다. 이제서야 비로소 해외입양인 인권의제를 이 공모사업 보고서의 틀 안에서 제기하게 되었다. 이 보고서가 해외입양인 인권침해의 장기지속 사안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본격적으로 들여다 보는 계기가 되기를 온 마음을 다해 희망한다.

이 조사사업의 출발로부터 완결까지, 결정적으로 공헌한 분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이 보고서에 나타나는 10분의 입양인 인터뷰이들이다. 이 분들이 흔쾌히 마음을 열고 증언해주시지 않았다면, 이 보고서 자체는 불발되었을 것이다.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한 분도 거절하시지 않았다. 아니 매우 적극적으로 인터뷰의 의사를 표명해주셨다. 해외입양인들은 자신들의 삶 가운데 증언의 말들이 가득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인권 침해해 겪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털어 놓은 순간, 그 아픔과 비극을 재경험하곤 한다. 트라우마의 재현! 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고통을 겪은 분들도 있었다. 나름 힘이 되어 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바라건대 이 분들이 자신들의 상처 입은 사적 삶의 취약성을 기꺼이 열어 보이면서, 한국 사회의 해외입양에 대한 재성찰을 기대하면서, 인터뷰에 응해주신 일에 감사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 자리를 빌려 네덜란드, 스위스,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로 아동 시기의 이주와 입양이라는 고단한 삶을 헤치고 살아오신 열 분의 인터뷰이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입양 실천과 가족찾기에 실무적으로 관여하셨던 5분의 관계자 인터뷰 역시, 이 보고서의 핵심적 보완요소가 되었다. 입양인들의 경험이 어떤 입양절차와 경로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선명히 드러내어 주는 증언들이었다. 그러나 더 적절한 인터뷰이들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 일은 쉽지 않았다. 가장 의미 있는 증언을 해주시리라 바라고 요청 드렸던 했던 몇 분들은 인터뷰를 거절했고, 흔쾌히 인터뷰

를 하신 후에 참여 의사를 번복한 분도 계셨다. '사랑과 구원의 서사'에 '인권'의 렌즈를 가지고 들어오는 일을 거북해하시는 분들인 것으로 짐작이 되고 또 예상하던 일이기도 했다. 그 만큼 해외입양 인권의제는 우리사회에서 낯선 일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금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증좌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정을 배경으로 하고 인터뷰에 기꺼이 응해주신 다섯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이 조사사업의 인터뷰어로 수고해주신 김성수, 김재민, 신필식 세 분의 박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특히 영어로 진행된, 10분의 입양인들과의 인터뷰를 맡아주신 김성수 박사님께서 인터뷰의 가장 커다란 분량을 책임져 주셨다. 속도감 있게 일을 추진하시고 결과를 내어 주신 일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각별한 감사를 드린다. 김재민 박사는 세 분의 입양실천 관계자 인터뷰를 해주셨고, 바쁘신 중에도 이 사업의 기획단계 부터 보고서 작업 전반을 책임져주시고 거의 100쪽에 달하는 보고서 원고 작업을 해주셨다. 각별한 감사를 드린다. 신필식 박사님은 관계자 인터뷰 두 분을 맡아주셨고 큰 열정을 가지고 전문가적 조언을 거듭해주셨다. 각별한 감사를 드린다.

사단법인 두루의 세 분 변호사님들 강정은, 김진, 마한열님과 함께 이 일을 기획하고 협력할 수 있었음에 대해서 큰 감사의 마음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공동기획과 사업의 진행 과정을 전반을 법률적 차원에서 검토해주시고, 조언을 주셨으며, 법률 관련 챗터를 저술해주셨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소라미 교수님께서도 이 조사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소중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다. 각별한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이 일을 정교하게 기획하고, 추진해 준 뿌리의집 황선미님과 조력해주신 김창선님께 감사 드린다. 프로젝트의 설계에서부터 제안서 작업, 인터뷰이와 인터뷰어와의 소통, 영문인터뷰의 녹취록 풀기와 번역 의뢰 등 온갖 까다로운 작업을 빈틈없이 수행해 준 두 분이 자랑스럽고 고맙다. 또한 국제입양에 대한 정부차원의 해외조사 사례를 리서치해 주신 최진경님께도 감사드린다.

다시 한번 바라거니와, 이 공모사업 보고서가 장차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해외입양인 인권 의제화에 대한 주요 촉발점 중의 하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들어가는 말을 가름하고자 한다.

2021년 11월 26일  
(사)뿌리의집 대표 김도현



## 이 보고서를 위한 조사 작업

---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최대 국제 입양 송출국으로 1953년 이후 지난 68년간 20만명의 자국 아동을 내보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70~80년대에는 1년에 최대 8천명에 이르는 아동을 송출하였으며, 이들은 현재 30대에서 50대에 이르러, 태어난 나라인 한국을 방문하고,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입양인들도 다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1950년대부터 17만여명의 한국 아이들이 해외입양됐다. 이는 공식 통계이기 때문에 누락된 통계도 많다. 미군정 시절부터 미군 등을 통해 직접 입양된 혼혈아들과 4대 입양기관이 아닌 호주의 펄벅재단 등 다른 법인을 통해 입양된 경우 등까지 더하면 한국의 해외입양아는 20만명을 상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출처〉세계일보 2019. 05. 13 김준영 기자

해외입양은 사실상 다양한 층위에서 아동의 인권을 훼손하는 일에 기초해서 전개되어 오고 실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1953년부터 2013년 가을까지 사실상 반인권적인 ‘대리입양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다. 입양은 입양부모가 아동과의 개인적 인격적 만남과 주관적 결심이라는 조건과 국가의 공공적 승인라고 할 수 있는 입양판결이라고 하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성립된다. 한국은 입양부모가 한국을 오지 않아도 되는 제도, 공공적 승인으로서의 입양판결제도 없이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냈던 나라였다. 이 기간 동안 미국으로 입양 보내어진 아동들은 IR-4비자를 받아 입국했고, 도착 후 영주권 자격을 얻었으며, 이 시기에 입양된 한국계 입양인 중 20~30%는 성인이 되었을 때, 미국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국으로 추방되는 사람들이 발생했다. 국가가 법제의 층위에서 해외입양아동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장기지속 국가부재 사태의 자명한 결과 중의 하나였다.

2012년 가정법원의 판결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해외입양은 아동신분세탁의 온상이었다. 빈곤가정, 미혼모 가정, 혼외 가정에서 태어난 아동들은 친생가족과의 연결고리이자 자신의 출생의 진실성이 담보되지 못한 채, 고아호적 만들기에 의해서 신분이 세탁되어 미국으로 입양 보내졌다. 이름과 출생연월일이 가짜로 기재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며, 친생가족에 대한 정보는 멸실되거나 은닉되었다. 입양인들은 가족찾기의 과정에서 종종 자신의 신분에 관한 문서가 멸실, 위조, 조작, 대체, 혼합된 사실에 직면한다. 출생의 진실에 기초해서 신분이 등록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기는커녕, 제도의 층위에서 훼손하는 정교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다.

이 보고서는 과거 해외입양절차에 있어서 인권침해사안을 드러내기 위한 권이용호활동의 일환으로 작성되었다. 뿌리의집은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이 사안의 직접 당사자인 해외입양인 10명과 해외입양 관계자 5명을 인터뷰하고 녹취록, 번역 및 분석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스위스, 한국 등 전세계에 흩어져있는 입양인 당사자와의 인터뷰를 화상인터뷰로 진행했다. 해외입양 관계자의 경우 과거 입양기관실무자로 일했거나 현재 해외입양인들의 가족찾기를 돕는 실무자 등이 인터뷰에 참여했다. 이렇게 진행된 인터뷰 기록을 기반으로 하여 과거 해외입양절차 인권침해사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보고서로 작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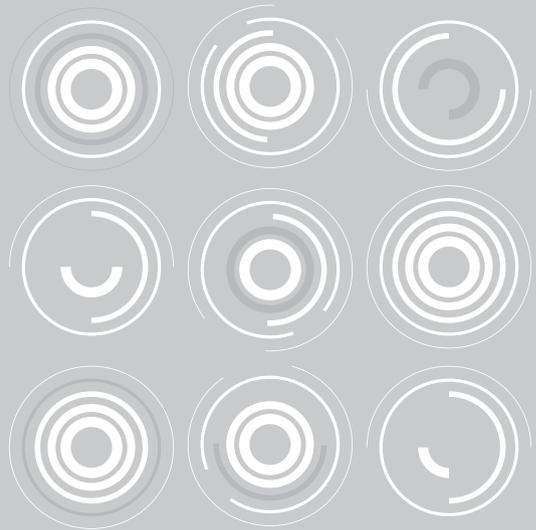


과거 해외입양절차 인권침해사례 보고서:  
심층 인터뷰

# PART 1

## 조사의 배경: 왜 해외입양이 인권의제인가?

김도현 · 뿌리의집 대표





## 1. 조사의 배경: 왜 해외입양이 인권의제인가?

한국의 해외입양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바라보는 일은 낯설다. 사람들은 가족을 상실한 아동에게 해외입양을 통해 가정을 찾아주는 일을 폄훼할 일은 아니라고 여겨왔다. 그리고 이런 이해가 한국 해외입양 68년을 관통하고 있는 정서이다. 그러나 해외입양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해외입양은 사실상 다양한 층위에서 아동의 인권을 훼손하는 일에 기초해서 전개되어 오고 실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해외입양은 비록 제주4·3사건이나 보도연맹학살사건, 혹은 5·18민주화운동과 같은 사건에서 보이듯이 국가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민들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인권침해 사건과 궤를 같이하는 일은 아니다. 국가의 직간접적 조력이나 방임에 의해서 일어난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이나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과도 의견상 조금 결이 다르거나 가볍게 여겨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해외입양 역시 사실상 국가폭력이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오히려 정신적 폭력 혹은 트라우마는 종종 나타나는 신체적 폭력에 비견할 수 없는 더 깊은 손상과 장기적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해외입양의 인권침해는 매우 중대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입양 혹은 해외입양의 경우에는 언제나 ‘사랑과 구원의 서사’로 덧칠된, 덧코드화된 “극진한 찬사의 이미지(Glowing Image)”가 이런 비판적 접근을 가로막고 나선다. 바로 이런 연유로 인해서 해외입양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정식으로 ‘인권침해사안’으로서의 자격을 획득하지 못했다. 그러나 해외입양의 핵심 당사자이자 주체인 입양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사태를 면밀하게 살펴본다면, 해외입양 역시 ‘인권침해사안’으로 해석되고 판단되기에 부족함이 결코 없다. 여전히 해외입양을 ‘인권침해사안’으로 바라보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약간의 힌트를 드리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한국의 해외입양은 어떤 방식으로 수행되었나, 무슨 문제가 있었나, 왜 실패했나, 결국 왜 인권침해가 일어났나, 이런 질문들에 대해 다소 파편적 방식이기는 하나 몇 가지를 서술하면 아래와 같다. 바로 이런 이해들이 이 조사사업의 배경이기도 하다.

## 1) 공적 책임의 원칙

인권의 보호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게 귀속된다. 인권의 보호를 개인에게 부탁하지는 않는다. 개인은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일 수도 있지만, 해칠 수도 있다. 해치는 것이 옳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개인에게 도덕성과 인륜성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는 있어도 그것을 법적 의무로 강제할 수는 없다. 입양의 경로에 놓인 아동의 인권 보호의 책임은 오롯이 국가에게 있다. 아동의 입양을 민간에게 맡겨두지 않고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1조 가항은 입양의 결정과 허가는 국가의 공적 책무임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면서 제21조 가항에 대해서 유보를 선언했다. 입양의 결정과 허가의 주체로서의 국가 책무를 회피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었다. 다른 말로는 민간입양기관들이 수행해오던 입양의 결정과 실천의 전과정을 계속해서 용인하겠다는, 민간에게 맡기겠다는 결정이었다. 다른 말로는 국가가 입양의 경로에 오른 아동의 인권보호를 외면하겠다는 결정이었고, 이 결정은 2017년 제21조 가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때까지 장장 26년 동안 지속되었다.

2017년 이 조항의 유보를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입양의 경로에 오른 아동의 인권보호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021년 6월 30일부터 위기가정의 아동분리 상담(혹은 입양 상담)이 비록 국가의 공적 체계로 편입되었다고는 하지만, 아동의 분리와 보호, 아동의 입양적격성판단, 입양부모의 적격성 판단,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른 아동과 입양부모의 결연에 대한 판단 등에 대해서는 정교한 공적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채로 여전히 회색지대에 남아있다. 이런 연유로 인해, 가정법원의 판결제도가 도입된 2011년 이후에도, 입양 아동 인권의 훼손과 침해는 진행형이다. 2014년에는 미국으로 입양된 현수가 양부모에 의해 사망했다. 2015년에는 울산의 사랑이가 양모의 학대로 죽었다. 2016년에는 대구의 은비가 죽었고, 2020년에는 양친구의 정인이가 죽었다. 2021년에는 화성의 민영이가 죽었다. 국가가 가정법원의 입양판결을 제외한 모든 절차를 여전히 민간입양기관이 시행하도록 위탁하고 있고, 이런 비극이 일어나도 사실상 국가 권력 내부에 있는 어떤 구성원도 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한 마디로 국가의 공무체계에서 면책이나 감봉 혹은 직위해제가 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입양의 경로 위에서 아동들이 죽음을 당해도 정부의 공무체계 안에서는 실질적 책임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 매우 편리한 제도를 정부는 운영하고 있다.

## 2) 원가정 보호의 원칙

아동 입양의 최소 조건, 혹은 근원적 조건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이다. 아동이 원가정으로부터 분리가 일어나고, 아동과 친생부모가 이별과 상실을 경험해야만, 입양 실천의 발생조건이 만들어진다. 아동의 경험을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방임이나 폭력을 제외하고는, 분리의 경험 자체는 ‘학대’ 그 자체이다. 친생가족에게도 친생자녀의 양육의 실패와 좌절은 존재성 패배 경험일 수 있다. 이 분리의 경험은 아동과 부모에게 장기적 트라우마를 남기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국가에게는 입양을 장려하고 선양하려는 제도의 마련에 우선해서, 원가정의 보호 정책의 수행을 통해서, 이 분리와 상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민보호의 기본직무 중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은 거의 70년에 이르는 동안, 이 직무에 대한 각성이 없는 채로, 입양의 ‘빛나는 이미지(Glowing Image)’에 현혹되어 2006년 ‘입양의 날’을 제정하고, 입양이 더 많이 보내어지는 사회의 꿈을 키워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비록 2019년에 이르러서야 정부가 ‘한부모가족의 날’을 제정하고, ‘아동이 입양 보내어지기 보다는 먼저 원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뜻을 표명했지만, 이 날이 실효적으로 기념되고 있지는 못하다.

거의 70년 동안 국가는 미군위안부 가정, 극빈 가정, 미혼모 가정 등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을 입양기관에게 맡기고, 입양기관들이 아동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둔 채로 오늘날에 이르렀다. 입양기관들의 본질적인 목적은 아동의 인권 보호나 아동의 원가정보호에 있지 않았고, 입양 가능한 아동의 획득 그 자체가 사업의 본령이었다. 분리와 이별, 상실과 낯선 가정에서의 성장 노동이 주는 곤경에 내어몰린 아동을 국가는 외면했다. 아니 바로 그런 방식의 국가 운영이 국가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사태를 사실상 엔조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때 더 많은 아동의 해외입양을 통해 국익이나 정권의 안위를 도모했던 정부를 가졌던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021년 6월 30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정부는 아동의 분리와 이별에 내어 몰린 위기가정 상담을 국가의 직무로 가지고 왔다. 그것도 비정규직 공무원인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최일선 현장 배치를 통해서 겨우 걸음마를 내딛고 있을 뿐이다.

### 3) 아동 최상의 이익의 원칙

한국의 해외 입양의 역사는 아동 최상의 이익의 원칙이 한 번도 제대로 고려된 적이 없었다. 혼혈아동의 최상의 이익은 무엇인가, 극빈 아동의 최상의 이익은 무엇인가, 미혼모 가정의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을 실현해주는 길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았다. 해외입양을 자명한 해답으로 믿었을 뿐이었다. 어떤 결정이 숙고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자명한 것으로 간주되는 동안, 무엇이 그 특정 아동의 형편에 비추어서 최상의 이익이 되는지를 저울질하고 숙고할 기회는 등장하지 않는다.

아동 최상의 이익의 결정의 주체는 국가이다. 개인이나 민간이 최상의 이익 판단에 복무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정체성의 자기부정이다. 최상의 이익을 판단하는 근거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검토와 자원의 총량을 검토하고 규율할 수 있는 주체, 즉, 국가의 행위에 귀속되어야 한다. 국가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자'로서 그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판단할 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상의 이익 결정(Best Interest Determination/BID)의 요건들에 대한 섬세한 검토에 기초한 판단자료를 활용해서 최상의 이익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지, 입양기관의 사회복지사가 해외입양이 그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었노라고 임의적으로 결론을 내리게 하고, 그 결론을 무비판적으로 옹호하는 복무자로 일하라고 국가가 부른다면, 국가는 국가 이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거기다가 아동 최상의 이익은 개별 아동마다 그 나이나 성숙도 혹은 건강, 각기 상이함을 드러내는 친생부모의 출산과 양육의 조건들, 아동의 원가족 복귀, 최상의 이익이 되는 아동의 보호의 방식과 가정위탁, 입양, 그룹홈 등 아동의 배치를 결정할 수 있는 조건들, 아동과 사회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적 지원 가능성의 총량의 크기, 나아가 특정 입양 아동의 특정 입양부모와의 결연 등등에서 개별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정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해외입양이 시작된 이래로 오늘날까지 이 '아동 최상의 이익'에 대한 결정을 실천한 바가 전혀 없다. 아동복지법이나 입양특례법과 같은 법문들에 선언되고 있을 뿐이다. 거기에는 어떤 조직을 가동하고 어떤 근거가 마련되고, 어떤 방식으로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행 가능한 시령도, 시행세칙도, 심지어 매뉴얼도 존재하지 않고 그 노하우도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 4) 보충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대안양육체계 전반에서 작동해야 한다. 아동 최상의 이익의 원칙에 따라 아동을 배치한다고 하면, 보충성의 원칙의 출발점은 사실상 원가정 보호에서부터 출발해야 하고, 원가정을 강화하는 일을 통해 아동의 분리를 예방하고 최소화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이미 분리된 아동도 아동 최상의 이익의 원칙에 따라 아동 보호 배치를 하되, 원가정 복귀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배치할 필요가 있다. 사후적으로 원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친생부모의 아동양육에 대한 의지와 조건들을 향상시킨 후, 가능한 한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아동 최상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대안양육체계에서 중대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아동의 분리는 친생부모의 아동에 대한 회복이 불가능 수준의 방임이나 폭력, 혹은 아동에 대한 성폭력, 치료 불가 수준의 약물 혹은 알코올 중독이나 아동양육을 허용하기 어려운 정신질환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국가의 권력 체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분리가 아동 최상의 이익의 원칙에 따른 결정(BID)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며, 아동의 원가정 복귀도 마찬가지다. 분리가 불가피하고, 원가정 복귀도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대체로는 위탁가정(원가정과 아동의 완전단절이 이루어지지 않는)이나 입양가정(원가정과 아동의 완전단절이 일어나는)에 배치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역시 바로 그 특정 아동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된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에 따라 배치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다음은 소규모 그룹홈을 통한 시설보호가 될 것이다.

한국에서의 대안양육은 매우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것은 대규모 시설에 아동을 배치하는 일이 아직도 매우 큰 규모로 실천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대규모 시설에 아동을 보호하는 반인권적 사태를 혁파하는 긴급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대규모 시설 보호나 해외입양은 권고되기 어려운데, 대규모 시설 보호나 해외입양을 통한 아동의 양육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커다란 장애로 작동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해외입양은 아동이 친족과 사회, 언어와 문화를 상실한 채로 대륙을 건너 다른 곳에서 성장하는 동안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성장노동을 감내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로 권고할만한 일이 아니고, 복지적 프로그램이라고 이름 하기도 어렵다고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양기관이 이미 보호를 시작한 아동 중, 명목상 보충성의 원리를 따른다고 하면서, 즉,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했으나 국내의 입양가정을 찾지 못한 아동으로 입양기관들의 자의적으로 분류해 놓은 아동들이 매년 수백 명 수준이고, 이 아이들 중 매년 3백 명 남짓 되는 아동들이 해외입양 보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 아동들의 경우 입양기관의 최초상담과 보호를 통해 아동의 인적사항 자체가 공개되지 않은 아동들이고, 정부가 이 아동들의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국내에서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보호와 양육의 길을 모색하고자 하지만, 입양기관들의 저항으로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에 의해서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에 따라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아동의 해외입양 배치의 불가피성 판단(해외입양적격성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채로, 또 입양기관이 법이 있음에도 법망의 허술함을 악용해서 여전히 해외입양을 고집하고 국가는 사실상 입양기관들에게 질질 끌려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늘의 이런 현실에 비추어서 보면 지난 50년대로부터 시작해서 2011년 입양특례법 개정의 고비를 넘고 나서도 현재까지 국가부재 사태 아래 아동들이 놓여 있는 것이다. 위기에 처한 원가정 상담이 지난 6월 30일 정부 기능으로 편입되기 전까지, ‘위기가정(미혼모가정)에 대한 상담을 통한 아동의 분리와 획득’, ‘아동의 일시 보호’, ‘입양적격성 판단’, ‘입양부도적격성 판단’, ‘자의적 보충성의 원리의 적용’, ‘해외입양 배치의 적격성에 대한 판단’ 등을 입양기관이 전횡했다. 국가는 공적 직무를 해태했다. 그 여럿 중의 하나인 ‘보충성의 원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동들은 입양기관의 산업 흥왕과 이익 창출의 결정적 토대와 수단으로 편재되어 해외로 송출되고 있다. 2021년 현재에도 입양기관들은 대체로 한 아이 당 3,000만 원 정도의 입양 수수료를 받으면서 해외입양을 보내고 있다. 정부가 ‘보충성 원리’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하고 있는 틈을 타서 말이다.

## 5) 출생의 진실을 보존해줘야 할 국가의 의무

출생의 진실을 아는 일은 한 인간의 존재성의 기반이다. 출생의 진실을 허물어 버리는 것은 인간 존엄성의 훼손이다. 한국은 해외입양제도의 출발부터 2011년 가정법원의 판결제도를 도입한 입양특례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60년 동안 입양아동(인)들의 존재성의 기반인 출생의 진실을 지켜주지 못했다. 민간 입양기관들이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을 선호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조작하는 동안, 혹은 아동을 입양에 의뢰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법적 신분 감추기를 도모하는 동안 국가는 손을 놓고 있었다. 심지어 국가는 입양기관들과 사실상 협력해서 고아호적을 만들어 아동들의 해외입양에 최적화되도록 하는 일에 거침이 없었다. 출생신고제가 엄연히 법으로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주대낮에 그것도 법의 진실한 집행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국가가 나서서사실상의 범법행위의 주체가 되었다는 사실은 경악스럽다. 결국 이런 해외입양의 실천은 20만 해외입양인들의 존재성 기반의 모색 여정에 상상을 불허하는 장애와 곤경을 야기했다. 이는 단순히 기

술적 근거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성의 뿌리에 접근하고 거기에서 자신의 존엄성 회복의 마지막 지점에 도달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결국 인간에 대한 모멸의 저수지가 되었다. 60년 동안 민간 입양기관들이 엄존하는 출생신고제의 치외법권지대로 작동했던 명망성은 마침내 입양을 보낼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허용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대중적 착각을 창조해내었다. 2012년 말, 2013년 초 베이비박스의 등장과 함께 언론은 ‘출생신고를 해야 입양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동들이 증가했다.’라는 담론을 대대적으로 받아 적는 사태를 만들고, 진실한 출생신고를 통해 인간 존엄성의 뿌리를 지켜줘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뒤흔드는 ‘바보들의 천국’ 잔치를 벌였다. 뿐 아니라 국가가 의무를 유기하고 범법을 행한 그 일로 비롯된 입양인들의 비애에 찬 가족찾기의 치열한 여정이 거듭되고 있고, 이에 대한 언론 보도를 온 국민으로 하여금 애잔한 눈길로 바라보게 하는 사회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인간으로서 전존재를 걸고 존엄성의 뿌리를 찾고자 나선 사람들에게 대해서 국가는 일말의 회오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대신 이에 책임을 걸머지고 있는 국가기관(아동권리보장원)은 오히려 거의 국책언론기관이나 다름없는 언론(연합뉴스)과 자랑스러운 MOU를 맺고 입양인들의 가족 재회 스토리를 자신들의 성공적 직무 수행으로 포장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에 퍼 나르며, 애완을 구걸하고 있다.

## 6) 송출국의 입양판결을 통한 인권보호 최대치의 구현 실패

1)항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입양은 국가의 공공적 책무여야 한다는 것은 인류공동체의 지혜가 낳은 합의이다. 또한 2),3),4)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입양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국가의 공적 개입과 책임은 입양아동 혹은 입양인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그 어느 한 절차라도 탈각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설사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가정법원의 판결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특히 미국으로 입양되는 아동들이 가정법원이 판결을 시작한 후부터 미국입국비자 IR-3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이를 통해 미국에 도착하는 입양아동은 즉시 시민권을 신청·획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2013년 가정법원이 판결을 시작하기 이전에 미국으로 입양 보내어진 아동 중, 최소 43,830명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sup>1)</sup>, 여차하면 이들이 한국으로 추방될 위

1) 2013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의 보도설명자료에 의하면, 국적 취득 여부 미확인가가 2만 3천명 정도라고 밝혔는데, 그 숫자를 확인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았다. 2021년 김성주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고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숫자가 48,830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조사와 통계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기에 놓여 있음을 생각하면, 입양 절차에 있어서 가정법원이 수행하고 있는 인권보호의 기능이 얼마나 결정적인 것인가를 알 수 있다.

문제는 68년에 이르고 있는 한국해외입양의 역사 중 가정법원의 판결 제도의 도입은 겨우 8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한국은 입양아동 인권 보호에 근원적 계움을 피운 나라라는 사실이다. 입양아동 인권보호의 국내 조치의 최대치가 가정법원의 판결제도라고 하면, 그 최대치의 수행을 왜 그토록 늦게야 시작했는가라는 질타를 피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국가의 무능과 계움의 산 표지가 아니겠는가. 바로 이런 일로 인해서 보호를 받았어야 할 국민이, 아동 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입양의 이름으로, 가족과의 이별과 상실, 사회와 언어와 문화의 상실, 모국으로부터의 배제, 외모가 다른 나라에서의 성장 노동, 때로는 리홈(rehoming)과 학대에 노출되면서 살다가 느닷없는 어느 날 청천의 벽력파도 같이 모국으로 추방당하는 이 가혹한 현실을 만들어낸 나라, 바로 그 나라가 '자랑스러운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이다. 가정법원의 입양판결 도입이 결국 모국으로 돌아와 살던 입양인들이 나서서 개정운동을 벌인 2011년 입양특례법을 통해 이루어진 이 늑장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입양아동 인권보호의 최대치 구현에 실패한 나라! 자국의 시민이었던 입양인들에게 한국정부는 머리를 들 수 있을까. 무릎을 조아릴 수 있을까.

## 7) 대리입양 제도의 장기 지속

해외입양이란 혈연은 물론이거니와 대륙과 국적이 다른 사람이 가족이 되는 일이다. 이 경우, 두 가지 필수 조건이 있다. 하나는 가족이 되는 두 당사자, 즉 입양예비아동과 입양예비부모가 입양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서로 만나야 한다. 비록 영아라 할지라도 입양예비부모는 가족을 삼을 아동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면의 깊은 주관적 결심, 즉 내가 이 특정한 아이의 아빠 혹은 엄마가 되겠다는 내적 결심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입양부모의 자격이 있음을 국가의 공무 체계로부터 인정을 받고 거기에 따른 입양 판결을 받아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 없이, 다른 말로 하면, 국경을 건너 아이를 만나 보지 않고,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고, 아이의 입양의 모든 절차를 입양기관 즉 대리인에게 위탁해서 입양하는 경우를 일컬어 대리입양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대리입양은 미국의 경우 1950년대부터 반인권적인 입양실천으로 비난을 받았고, 법으로 금지된 일이었다. 그러나 이 법을 피해가려는 해리 홀트씨의 전방위적인 미국정부에 대한 로비의 결과 한국으로부터 미국으로의 아동입양은, 2011년 한국의 입양특례법 개정 에 따라 2013년 가을부터 한국 가정법원이 입양예비부모를 법정으로 불러 입양 판결제도를 시행하기까

지, 60년 동안 사실상 대리입양의 방식으로 실천되었다. 이와 같은 실천이 입양아동인권훼손의 토대였는데, 하나는 입양아동에게 발급된 미국입국비자가 영주권 신청자격에 불과한 IR-4였고, 이런 아동의 경우 미국 입국 후 입양부모가 입양판결 절차와 시민권 판결 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리고 그 절차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을 때, 시민권 취득을 하지 못한 입양인들이 추방의 위기에 내어 몰린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입양부모가 한국으로 와서 아이를 데리고 가는 대신, 한국의 입양기관들은 아이를 미국의 입양가정으로 데리고 들어가 줄 일손이 필요했다. 소위 아동에스코트의 거대한 인력이 필요했다. 물론 아동과 에스코트 인력의 항공료는 입양가정들이 한국의 입양기관으로 이미 지불되어 있었다. 입양기관들은 7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는 유학생들에게 무료항공권을 제공해 아동에스코트를 맡겼고, 90년대 여행자유화의 바람을 타고 있을 때는 배낭여행족들에게까지 아동에스코트를 맡겼다. 심지어 어떤 입양기관은 비영리를 천명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여행사를 운영하기도 했다. 대리입양 제도의 장기 지속은 입양기관들의 또 다른 수익원이었다. 이 에스코트 시스템 안에서 아동들은 종종 아동 돌봄에 미숙하고 훈련되지 않은 남성 유학생이나 배낭여행족의 손에 맡겨져, 험난한 항공여행길에 올라야 했다는 점이 또 다른 해외입양의 부수적 인권훼손의 현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상기한 바, 이와 같은 입양제도와 실천은 시스템적으로 아동인권보호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제도이자 실천이었다. 그리고 이 제도와 실천의 과정 속에서 해외입양은 거대한 산업으로 급격하게 성장했다. 그러나 이는 아동인권의 훼손을 디디고 이룬 성공신화일 뿐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산업화를 가능하게 했던 근원적 동력 중의 하나가 “입양에 대한 극진한 찬사의 이미지”라고 하는 상징자본을 한국인의 인식체계 내부로 투자한 전략이었다. 바로 이러한 전략은 성공했고, 하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해외입양의 문제를 인권의제로 접근하고 성찰하는 일에 낯설어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지 너머에서 작동해온 입양제도와 실천의 메커니즘에 시선을 고정시켜야 비로소 해외입양인의 인권침해라는 진실에 이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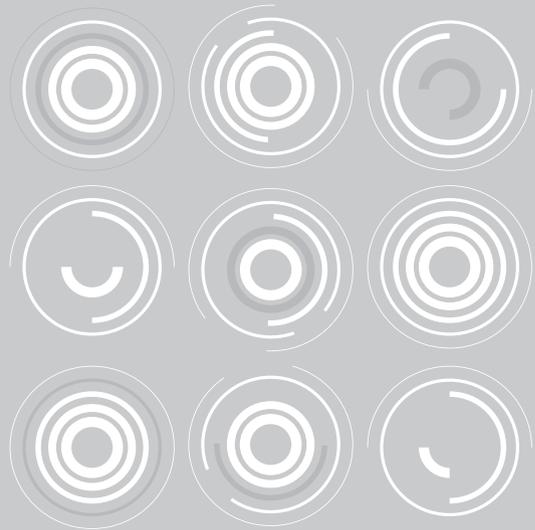


과거 해외입양절차 인권침해사례 보고서:  
심층 인터뷰

# PART 2

## 과거 해외입양절차 인권침해사례 심층 인터뷰

김재민 · 성공회대 사회학 박사





## 2. 과거 해외입양절차 인권침해사례 심층 인터뷰<sup>2)</sup>

### 2.1 해외입양절차: 해외입양인의 경우

본 조사는 과거 해외입양절차에서 발생했던 문제를 해외입양인의 목소리를 직접 드러내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절차상 인권문제의 소지가 있는 10명의 해외입양인을 인터뷰하였다. 이들의 목소리는 해외입양절차에서 어떤 문제가 존재했고 국가는 어떤 역할을 했었는가에 대해 당사자가 직접 문제제기를 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기록의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인터뷰에 참여한 해외입양인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이름	성별	입양국	출생년도 (기록)	입양국 도착년도	입양기관(국내)	비고(아동보호시설 외)
A	여	미국	1975	1976	한국사회봉사회	광주총현원
B	여	미국(캐나다)	1966	1975	홀트아동복지회	천주교성바오로보육원/아동보호소/ 미아보호소
C	남	네덜란드	1982	1982	한국사회봉사회	
D	여	미국	1970	1975	홀트아동복지회	이리기독영아원
E	여	미국	1982	1982	동방사회복지회	천사의집
F	여	프랑스	1972	1984	홀트아동복지회	서울시립아동상담소(육아원천사의집)
G	남	스위스	1968(여권) 1966(추정)	1972	한국사회봉사회	대전 베델홈
H	남	미국	1978	1978	대한사회복지회	
I	여	미국	1981	1984	홀트아동복지회	입양전 고아원에 머무름
J	여	미국	1964	1964	홀트아동복지회	희망보육원

2) 입양인과 관계자 인터뷰 내용은 인터뷰이의 의견입니다. 관련 법제도와 당시 입양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의 검증 및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 1) 해외입양절차

### 1) 해외입양절차

해외입양절차는 아동의 입양이 의뢰되면 심사과정을 거친 후 입양이 결정되면 입양부모에게 인계된다. 그리고 아동이 입양가족의 구성원으로 잘 적응하여 성장하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과거 입양절차 역시 형식적이지만 이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입양아동의 성장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은 부재했으며, 이들이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은 없었다. 따라서 입양아동에 대한 기록은 중요하게 간주하지 않았다. 즉 해외입양인이 모국을 방문하면서 자신의 정보를 요구하였을 때 비로소 기록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해외입양절차에서 입양아동은 완전하게 단절되어 한국과는 무관한 존재가 되어야 했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입양아동의 기록이 부재하거나 왜곡되어 있는 현실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 ① 입양의뢰

아동이 입양기관에 의뢰된 상황과 관련하여 주목할 부분을 증언하고 있는 내용은 입양기관의 설립자와 선감학원, 그리고 형제복지원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다. 이것은 입양의뢰된 아동의 기록이 조작되고 왜 정보가 부정확한지에 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설립자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2020년 8월에 발표된 다큐멘터를 통해서 ‘선감학원’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들의 아동학대 행태가 너무도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선감학원’과 연관성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 OOOOOOO를 설립하기 전에 선감학원의 부원장, 원장을 역임했어요. 그가 선감학원을 설립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강제수용시설’을 운영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로 OOOOOOO에서 일어났을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습니다. … 아이들 중 일부가 형제복지원에서 왔다는 것이 사실 일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는 왜 수 많은 입양인들의 개인사에 대한 정보가 없는지에 대한 이유가 설명됩니다.” (사례: A)

입양의뢰된 아동은 대부분 영아에 의뢰된다. 그렇지만 B는 경제적 이유 등 가족이 처한 어려움으로 인해

성장한 상태에서 해외로 간 연장이동에 해당한다. 10여년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성장했던 삶의 기억은 영아와 달리 상대적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상황에서 익숙했던 공간과 완전히 괴리된 낯선 곳으로의 입양 결정은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입양이 불가피했다면 국내의 가정으로 보낼 수는 없었던 것일까? 그의 입양된 가정에서의 성장과정을 돌이켜보면 해외로 보냈던 결정이 그에게 최선의 이익이었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어머니는 처음 6개월간은 저를 아기처럼 대했지만, 그 후에는 제가 (처음 몇 달 사이에) 너무 빨리 자라서 흥미를 잃은 것 같았어요. ... 캐나다로 온 후에는 (저에게) 완전히 흥미를 잃으신 것 같았어요. ... 어머니는 항상 밖에서 일하고 있었고, 저는 어머니를 잘 볼 수 없었어요. 이 시기에 어머니는 그저 집에 잠시 들르는 정도였고, 그래서 저는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 아버지의 학대가 시작된 게 그 무렵이었습니다.” (사례: B)

B는 연장이동이었기에 자신이 입양의뢰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상대적으로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떠난 것으로 기억하지만 결과적으로 가족의 의사와는 달리 입양이 진행되었다. 본인이 살던 집의 주소까지도 기억했지만 시설에서는 그의 가족을 찾는 노력을 하지않고, 그를 가족에게 보내지 않고 해외로 입양보냈다. 그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이러한 상황마저 경제적으로 양육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해야 할까?

“아버지가 없다고 하시는데 제 머릿속에 바로 떠오른 생각은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는 거였어요. 저는 항상 버림받을까봐 두려웠어요. 어머니를 여윈 후 (버림받을 걸 두려워 한 것이) 그 때가 처음은 아니었어요. 저는 버려졌다고 생각하고는 걸기 시작했는데, ... 아버지를 기다렸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 어떤 남자가 제 앞에 멈춰서 왜 울고 있는지 물었고 몇분 후 경찰관이 지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찾지 못하자 언니가 일하는 집에 와서 언니를 야단치면서 저를 잃어버리게 되면 모두 언니 잘못이라고 했대요. ... 제가 실종되고 나서 아버지가 술을 드시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를 좋아하지 않아서 거짓 기록을 하도록 시켰나 보다고 생각했어요.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가족에게 가보지도 않고 저를 입양 보낸 거였어요.” (사례: B)

D의 경우도 5살까지 시설에서 지냈기 때문에 기억의 조각은 남아있다고 했다. 그렇지만 기억할 것 같은 부분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지 않은 것은 트라우마로 인하여 기억을 차단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의 말이 지니는 울림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고아원에 대한 자잘한 기억들이 조금 있습니다. 저는 익산 고아원에 있었고, 지금은 그 위치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후엔 익산 밖으로 옮겨졌습니다. 익산의 옛 지명은 이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익산이고 고아원은 익산 밖에 있는 시골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건물이 있던 장소로 갔을 때 교회가 있었습니다. 걸어 다니던 골목길이 기억나고 거기에 아이들이 줄을 서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손을 대고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항상 개가 짖는 소리가 들렸던 기억이 납니다. 같은 개가 있었다고 느꼈는데 다른 개였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아직 살아있지 않을 테니까요. 아이들은 항상 그 개를 무서워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한 줄로 서서 일렬로 걸어 다녔습니다. ... 다른 아이들이라든지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곳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냈다고 느껴져서 기억들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 그곳에서 뿌리째 뽑힌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상당 부분을 차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엔 미국으로 입양되기 전까지 6개월 동안 서울에서 지낸 것 같습니다. ... 트라우마가 생겨서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머리 속에서 차단한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사례: D)

C의 경우는 생후 10개월 만에 해외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기억이 없다. 입양부모의 경우 불임이라 생각하고 오래전부터 입양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임신이 가능해져 C가 입양되기 전 친자녀를 출생하였다.

“한국을 떠날 때 생후 10주였기 때문에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 저에 대한 입양 절차는 이미 1976년에 시작됐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물론 부모님께서는 절대 말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자 입양을 선택했고 열혈 입양 부모로 나서게 된 거 같아요. 입양 적격 판정이 떨어지고 대기자로 기다리는 동안 어머니 몸에서 스트레스가 빠져나가고 자연 임신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원래 어머니에게 경미하게 자폐증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성이 그분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되었죠. ‘결혼을 하면(부모님은 1968년에 결혼하셨어요) 응당 아이와 가족을 가져야 한다. 남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잘 안 된 거예요. 스트레스가 쌓이고 ‘아, 우리 아이를 가질 수 없구나. 입양을 해서라도 아이를 갖자.’고 생각하게 되었고 입양 승인이 나자 스트레스가 풀리고 자연 임신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전반적으로 저는 매우 따뜻하고 사랑받는 환경에서 자랐다고 생각해요.” (사례: C)

C는 이후 친생가족을 만나 입양을 보낸 경위를 듣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사회적 금기였던 동성동본이었기 때문이었다. 의사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병원과 입양기관이 유착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추정하게 한다. 해외입양이 일종의 ‘산업’이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동성동본이라는 사회적 금기

는 친생가족으로부터 분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대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해외입양은 입양기관을 중심으로 의료기관이 유착관계를 형성하며 국가의 암묵적인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 ‘산업’이었던 것이다.

“친부모님을 만났을 때 당연히 그 질문이 먼저 떠올랐죠. 이야기를 하자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동성 동본인 ‘김해 김씨’였어요.

동성동본이기 때문이었겠죠. 의사가 어머니에게 제가 사산되었다고 거짓말을 했고, 그 이유가 부모님이 같은 ‘김해 김’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제가 아는 전부예요. 그 때문에 더 아팠는지는 모르겠지만 입양은 상처가 되죠. 상황이 달랐다면 어땠을 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시절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신빙성 있는 이야기라고 해요. 전 잘 모르겠어요. 정부의 강제 정책이었나요? 집에서 태어난 걸 보면 제 동생들도 마땅한 병원이 없었던 것 같아요. 1982년 그 시절엔 많은 것들이 금지되었잖아요. 당시 군부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고, 독재자(전두환)의 통치 아래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죠.” (사례: C)

F는 자신의 동생과 함께 해외의 같은 가족에게 입양된 경우이다. 그는 입양 당시의 상황을 대체로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입양되기 전 2년 정도 시설에서 동생과 함께 지냈으며 시설에서의 기억은 폭력으로 점철된 일상이었다.

“어머니가 우리를 고아원 앞에 놓고 갔어요. 1982년이었는데, 어머니는 나중에 상황이 나아지면 데리러 오겠다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는 1년 동안 어머니를 기다렸지만, 어머니는 오지 않았어요. 고아원 생활은 힘들었어요. 먹을 것이 부족했고, 자주 맞았어요. 저는 어떤 오빠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어요. 그래서 감독자 중 한 명에게 우리가 입양되게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어요. 그 일은 밤에 일어났어요. 그 때는 12제곱미터 방 하나에 30명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보통 그 중 나이 많은 남자애 하나가 감독자를 돕는 일을 했죠. 성폭력은 감독하는 보모가 새벽기도를 가면 일어났어요. 그 오빠는 그 시간, 새벽 시간을 이용했어요. 저를 만지고 성적 학대를 했어요. 아직도 이름을 기억하는데, ... 그곳에서 2년 반 정도 있었어요.

남녀를 분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리됐고 식사시간에만 만날 수 있었어요. 동생이 맞을까봐 걱정됐어요. ... 저는 맞지는 않았지만 성적 학대를 당했어요. 맞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관리자들이 때렸거든요. 왜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일상적인 일이었죠. 우리를 줄 세워 놓고 때렸어요.” (사례: F)

F는 아동을 보호할 정책이 충분히 구축되어 있었다면 본인은 입양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다. 국가의 정책이 부재했기 때문에 입양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곧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입양과정에서 자격이 없는 입양부모가 입양이 가능하게 된 상황을 초래하였고, 입양을 결정하는 것의 신중한 과정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한국 정부가 자국의 아이들을 돌보는 적절한 정책이 있었다면 말이에요. 부모 없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개선된 복지정책과 시스템이 있었다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는 제 조국이 저를 돌볼 수 없어서 한국을 떠난 겁니다.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입양부모로서 적합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뇌물이나 기타 이유로 그 사실을 모른 척했어요. 사실상, 한국도 모른 채 하면서 해외 입양을 장려했어요. ... 양부모님은 우리를 입양하기 위해서 미화 25,000달러를 썼다고 거의 매일 우리에게 말했어요. 거기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는 거였죠.” (사례: F)

G는 친형과 함께 입양을 간 사례이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입양이 되었는데,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복지제도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두 가지 점을 지적하였다.

“그때 당시의 역사와 환경을 봤을 때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전체 시스템에서 문제는, 역사의 어느 한 지점에서 어느 누가 ‘사회 복지 제도를 만들길 원하는가?’ 아니면 ‘입양, 보육원, 입양 기관들을 그대로 두길 원하는가?’ 하는 결정을 해야 했어요. 그건 분명 정치적 결정이죠. 그것에 대해 저는 상당히 확신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보육원에 넣거나 멀리 보내 버리는 것이 더 쉬웠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이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한편으론 여러 환경이 입양을 불가피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 한국이 과거에 만약 ‘그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가족들을 교육시켜야겠다’고 결정했다면 어땠을까요? 6-70년대 한국 역사를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어요. ... 소위 ‘빨갱이’ 라는 이름의 마녀사냥이 자행되었어요. 무고한 사람들도 많이 당했죠. 모든 일에는 복잡한 이면들이 존재해요.” (사례: G)

## ② 고아호적 창설

과거 해외입양은 절차의 간이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결연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부모가 인지될 경우

입양이 가능하지 않았던 입양아동 수령국의 입양제도를 고려하여 입양대상 아동의 고아호적을 발행하여 입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고아’가 아닌 아동을 고아 신분으로 만들 수 있었다는 점 자체는 국가에 의해 일상적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고 인권침해가 국가에 의해 행해졌음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실종된 아동이나 미아인 경우, 가족을 찾아주는 노력보다 입양을 우선 고려했다는 점에서 해외입양은 인권침해의 본질적 속성을 내포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G는 친형과 함께 입양을 갔는데, 형은 항상 우리는 고아가 아니고 어머니가 있다고 말하였다. 그렇지만 입양부모는 서류상 ‘고아’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였다. 이 문제는 입양부모와의 관계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아직도 여전히 문제의 쟁점은 ‘왜 고아도 아닌 아이들을 해외에 보냈는가?’예요. 법적으로 해외에 입양을 보내는 것은 불법이었어요. ... 양부모님은 항상 ‘아냐, 아냐, 너희들은 고아였어. 서류에 고아라고 나와있어.’라고 말하곤 했어요. 서류에는 우리가 고아였지만 그건 위조된 거였어요.” (사례: G)

해외입양인은 고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아로 되어있는 기록을 통해 왜 그런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 기록에 고아로 남게 되었는지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한국에 돌아와서 가족을 찾는다. 고아였다면 가족을 찾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지만 그럼에도 가족을 찾는 여정에 나선다. 왜냐하면 고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입양기관에 종사했던 관계자의 증언을 통해 고아가 아닌 아동에게 고아호적을 만들어 입양을 의뢰했음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 ③ 신분변경

해외입양인 한 개인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뒤바꿔버린 신분조작의 경우에는 지금껏 살아왔던 인생은 모두 거짓이었다는 자괴감에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자신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40여년이 흐른 뒤에 알게 된다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될지 상상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문제는 입양기관은 신분이 바뀌었다는 점을 부인할 뿐 아니라 자신의 ‘진짜’ 신분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8년은 제 신원 정보가 바뀌치기(신원 뒤바뀜)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해이기도 합니다. ... 저의 진짜 한국인/고아 신분을 모릅니다. ... 제 양부모님께 다른 아이를 보낸다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 서류상 신분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즉 저는 그 아이의 아기 때 사진을 저로 알고 자랐고, 그

아이의 이름과 생일이 제 것이고, ... 입양아동 조사 요약서에 “발견 당시 종이 쪽지가 들어 있었음”이란 기록이 제 것이라 생각해 제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믿으며 자랐습니다. 지금은 제 한국인/고아 신분이란 전부 거짓이라는 것과 제가 한 번도 000이었던 적이 없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0000000가 제 신원 정보를 바꿔치기 한 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고, 제 진짜 입양기록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지 않아, 저는 제 진짜 한국 이름도, 출생일이나 출생지도 모릅니다.” (사례: A)

A의 증언에 따르면, 양부모도 어릴 때 종종 사진 속 아이가 아닌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우연히 사진이 바뀌었을 거라 생각했고, ‘신원정보 바꿔치기’에 대해서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아동을 대체하여 입양이 성사되는 경우는 있지만 입양부모에게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비자문제 등을 근거로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아동으로 입양을 보내는 것은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다수의 아동을 보냈던 시기를 감안하여 단순실수라고 가정하더라도 1-2건에 불과해야 할 텐데, 그렇더라도 한 명의 인생을 거짓으로 만들어버린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이 절차에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다른 많은 신원정보가 뒤바뀐 입양인들과 온라인으로 접촉하기 시작했고 한국인 입양에서 ‘신원정보 바꿔 치기’가 조직적이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원정보 바꿔 치기’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가장 흔한 경우는 ‘원(original)’ 입양아가 죽거나 여행을 못할 정도로 아프거나 예정된 입양일 전에 친부모들이 다시 데려가는 경우입니다. 바꿔 치기는 입양 부모에게 그들이 ‘다른 아이’를 입양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입양아동 변경(replacement)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대부분 ‘바꿔 치기’는 비자 절차 때문에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비자 발급 과정은 여러 달이 걸리고 한국의 입양 기관에서 절차를 시작하는데 입양 기관은 많은 양의 ‘원 입양아’에 대한 서류를 취합해야 했습니다. ... ‘새로운 아이’로 비자 발급 과정을 다시 시작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한국 입양기관은 다른 아이를 대신 보냈던 겁니다. ... 입양 부모나 입양아가 이 사실을 통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신원정보 바꿔 치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가짜 신분으로 성장한 것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 1975년부터 1976년 사이에 바꿔 치기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국제 입양에 대한 노출을 줄이기 위해 입양 비자 수를 줄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입양은 둔화되었고 입양기관에서 아이들이 너무 오래 머무르게 되면서 죽거나 여행이 불가할 정도로 아픈 상태가 되었던거죠. 이 문제에 대해 한국만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이 발발하면서 한국과 미국사이에 중요한 힘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 말은 고객은 서양이고 서양은 한국으로부터

터 수입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 (미국, 유럽, 호주의 입양기관들)이 바꿔 치기를 요구했을 것도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양쪽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사례: A)

A는 입양절차상 바꿔 치기가 일상적으로 일어났을 시기로 1975년과 1976년을 언급하였다. 본인이 입양 의뢰 되었던 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입양기관에서 신분교체가 이루어졌다. 당시 입양대상 아동들이 지냈던 환경은 질병과 사망이 빈번했다는 점을 지목했다.

“저는 1975년과 1976년을 한국 입양의 ‘문제 시기’로 보는데 왜냐하면 이 시기에 아주 많은 신원정보 바꿔치기 사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아이들의 사망이 원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OOOOO 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입양 기관에서 신원정보 바꿔 치기가 이뤄졌습니다. … 나쁜 위생 상태 때문에 폐결핵 역시 한국 고아원의 골칫거리였습니다. … 그 당시 폐결핵은 한국에서 큰 문제였습니다. 아이들이 특히 ‘통조림에 든 정어리처럼 밀집되어 함께 지낸다면’ (아기 침대가 서로 접촉된 상태 같은) 사망에 이르게 할 요인은 여럿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 이런 연유로 1970년대 이런 기관/장소에서 질병과 사망이 빈번했습니다. 아이들이 지내던 환경이 일부분 비인간적이었다고 말하고 싶어요. … 사망률과 유병률을 증가시켰는데, 이때가 입양아 신원 정보 바꿔치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사례: A)

신분이 바뀐 경우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은폐되었다. 해외입양절차에서 아동이 입양가정으로 인계 되면 상황은 종료되었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입양가족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강했던 것이다. 또한 신분변경이 이루어진 채 입양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기록과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라는 점도 신분변경의 문제가 공론화되지 않았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입양인이 친생가족을 찾은 경우 신분변경 이전의 가족과 상봉하게 되면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이다. 이는 또 한번의 상처를 남기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었다.

“신원정보 바꿔치기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한 것입니다. … 예를 들어, ‘A 아동’의 생년월일과 ‘B 아동’의 사진을 사용한 경우, ‘B 아동’이 미국에 도착했다면 이는 잠재적으로 신원정보 바꿔치기에 해당하나 사진을 통해서도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 두 개의 신분을 섞어 하나의 비자로 만든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입양기관에서 바꿔치기된 신원정보를 가진 입양인에게 뒤바뀐 신원정보를 기반으로 잘못된 친생부모와 ‘거짓 상봉’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더 나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못된 친생부모와 거짓 상봉을 한 입양인을 최소 다섯 명은 알고 있으며, 이

경우 입양 기관 중 일부는 신원정보가 뒤바뀐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거짓 상봉으로 인한 만남이 수년 간 지속된 이후에 입양인이 DNA 테스트를 통해 친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입양 기관으로 찾아가면 입양 기관은 신원 정보가 바뀌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인정합니다. 이는 입양인과 친생부모를 정서적으로 파괴하지만, 만약 친생부모가 이 과정으로 인해 감정적으로 너무 지쳐서 실제 자녀를 찾는 것을 중단하고 또한 간접적으로 해당 친생부모의 실제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로 인한 피해는 정말 끝이 없습니다. ... 신원 바뀌치기에는 너무 많은 거짓이 겹겹이 쌓여있다는 점에 다시 한번 경악하게 됩니다.” (사례: A)

A는 입양과정에서 신분교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입양기관은 ‘입양가능 아동 조사’ 서류를 작성하여 입양수령국의 입양기관으로 정보를 보내게 되고 입양희망부모는 그 정보를 통해 입양을 결정하게 된다. 입양희망부모가 입양을 결정하게 되면 비자 절차에 들어가는데, 비자 신청 및 승인 절차는 양 국가에서 모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입양대상 아동에게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때 그 아동을 대체하여 다른 아동의 ‘몸’만 보내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신 보내게 된 아동은 본인이 아닌 ‘그’ 아동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입양절차를 보면 그게 문제가 되는 행위라는 것을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것 같다. 왜냐하면 어차피 입양을 간 아동은 입양간 국가와 입양가족의 구성원으로 새로운 이름을 얻고, 국적도 바뀌고 모든 것이 새롭게 출발해야 하는 운명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사례 A도 지적하고 있지만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사실을 통보하고 입양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아동을 보내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다.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이나 질문은 여기에 끼어들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 아동을 위한 불가피한 방법이었다고 선전되는 해외입양의 모순이 드러난다.

“아동의 신원 바뀌치기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 1달 후에 그의 사진이 찍혀 ... 입양 절차의 매우 이른 단계에서 보내지는 거죠 ... 정보가 보내지면 양부모가 입양을 결정하고 ... 입양 절차를 1974년에 시작했는데 저를 만나기까지 9개월이 걸렸어요. 거의 일년이 걸리는 절차인 거죠. 부모님은 000이 태어나기 전에 입양을 신청했기 때문에 어떤 아이와 연결될지 전혀 예상을 못하셨어요. 1975년 9월 29일에 000의 정보가 부모님께 보내졌어요. 000은 10월 1일에 사망했을 수도 있지만 제 양부모님이 000의 정보를 받았고 비자 절차가 이미 시작되었죠(아마 제 부모님이 입양 동의를 하자마자 시작되었겠죠). 그러니까, 비자 신청은 한국에서 시작되고 한국 정부가 승인을 하면 제 부모님께 통보됩니다. 그러면 제 부모님이 미국에서 비자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입양 전문가에 의하면 비자 신청 및 승인 절차는 미국에서는 주정부와 연방 정부 두 곳에서 모두 이루어져야 하는데 두 정부간 조율이 조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몇 달이 걸리기도 해요). 미국 비자가 승인되면 아동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집니다. 모든 정황을 고려해 봤을 때, ... 이미 사망한 상태였을 수도 있었지만 저에게 발급된 비자는 조OO의 정보를 근거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1976년 1월 1일에 뉴욕 JFK공항에 도착해서 제 양부모님 품에 안겼습니다. 때때로 저는 내가 누구인지 누가 알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는 조OO를 대신하여 몸만 보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제 부모님과 서류상의 입양아동인 조OO를 연결하기 전에 그 아이가 사망했다면 왜 그 아이의 사진을 보냈을까요? 제 사진을 안 보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게 시간(timing)의 문제였다고 봅니다. 그 아이는 1975년 9월 30일에서 1976년 1월 2일 사이에 사망했을 수도 있습니다(아니면 여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팠을 수도 있겠죠). 누가 알겠습니까? 원 입양아가 여행을 버티지 못할 정도로 아파서 다른 아이를 대신 보냈는데 그 원 입양아도 나중에 바꿔치기된 사례들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OO이 꼭 사망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모르는 거죠.” (사례; A)

E의 사례에서 재회를 통해 만난 친생모와 유전자가 불일치했다는 점은 신분이 교체되는 상황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게 한다. 이 결과에 대해 입양기관은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

“입양기관은 놀랐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2012년에 입양기관을 방문해서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고 저의 입양기록일 가능성이 있는 다른 서류가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거기서 제 기록일 수 있는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미팅에 제 친구가 같이 참석했고, 그 파일 중에 있던 한 명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따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양기관에서 공유한 한정된 정보로 오클라호마 주에 있는 한 입양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클라호마 주에는 한국 입양인이 많이 없을 것 같았기 때문에 친구와 같이 조사해서 그 입양인을 찾아 연락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던 친가족 정보와 비교하기 위해 유전자검사를 했지만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뭔가 단서를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입양기관은 제가 스스로 조사하고 있는지 몰랐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 그 입양인과 연락이 닿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먼저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실제 상황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전자검사가 생모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입양서류일 수 없었습니다. 처음 입양기관에 연락을 시도했던 그때는 2012년이었습니다. 그 후 2017년에 또 다시 한 친구와 한국에 돌아와서 사회복지사와 입양 프로그램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그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여러 번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이메일을 통해 그리고 이번에는 직접 만나서 동일한 얘기를 했습니다. 신원정보 서류가 다른 시점에 뒤바뀌었을 수 있는 상황 혹은 가상의 상황을 많이 생각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2012년 처

음에 방문했을 때 보다 궁금증이 더 많았습니다. ... 수많은 시나리오와 상황을 가정할 수 있지만 위탁가정에 대해서는 물어봤습니다. 그 후 위탁어머니를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위탁가정에 또 다른 입양인이 같이 있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혹시 그 아기와 신원정보가 바뀐 것은 아닌지 궁금해졌습니다. 입양기관에서는 '아니에요. 이 아이와 바뀌었을 리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아기가 남자였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000은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인줄 알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 그래서 여전히 그 아이의 성별이 남자였어도 저와 신원정보가 뒤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궁금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정보는 얻지 못했고 이 또한 위탁어머니에 대해 모르는 정보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사례: E)

결국 E의 입양기록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정보였던 것이다. 그 사실을 인지했을 때 E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 단순히 슬픔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비단 입양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친생가족이라고 상정된 가족에게도 큰 상실의 문제로 다가온다. 혈연관계일 것으로 생각했던 이가 유전자 검사 결과 불일치하다는 결과를 받았을 때 받게 되는 감정은 모두에게 상처가 될 뿐이다.

“그 사실이 힘든 부분입니다. 제가 갖고 있던 서류는 확실히 다른 입양인의 신원정보가 맞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입양자료가 친어머니에 대한 내용과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담하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어서 충격을 받았습니니다. 처음에는 그게 사실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 후 엄청난 상실감과 슬픔을 겪었습니다. 무엇을 상실했는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감정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친가족 재회 전에 유전자 검사를 생각하지 못한 것이 조금은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2006년 당시에는 가족찾기를 시작하는 입양인들 사이에서 유전자 검사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첫째, 입양기관에서 물어보지 않았고, 둘째 그때까지는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사람에 대해 들어 본적이 없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인지도 몰랐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받아서 미리 알았다면 어땠을지를 생각하면 매우 창피했습니다. 그때 유전자 검사를 해주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친어머니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픡니다.

친어머니의 자매 한 분과 딸 두 명을 만났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후에는 할머니도 뵈었습니다. 어머니는 입양 보내신 것을 비밀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처음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는 단둘이 만났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가족에게 재회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저를 소개시켜 주실 수 없었습니다. 저의 존재를 가족에게 얘기할 만큼 편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친딸을 입양 보냈다는 얘기를 가족과 나눈다는 것이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일이며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셨다는 것을 알아서 그 가족을 생각하면 너무 슬펐습니다.” (사례: E)

이렇듯 신분이 뒤바뀌는 경우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입양절차에서 비롯된 문제의 궁극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 E는 기록관리의 중요성과 유전자 검사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첫째,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 위탁가정과 입양기관과 일해왔고, 미국에서는 자료기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는 정황상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0년대에는 입양인이 많았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확실히 기록관리가 중요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어떤 방식으로 기록했는지, 그리고 제 서류는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도 제 서류를 찾아주거나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전체적으로 이 절차에 대한 책임을 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둘째, 현재 제도와 절차가 어떤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아직까지도 유전자검사는 필수조건이 아닙니다. 정확하지 않은 재회를 방지하고 신원정보가 뒤바뀌는 상황을 알아낼 수 있는 다른 프로토콜이나 정책이나 절차가 도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전자검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례: E)

E의 경우 신분이 교체된 것이기 때문에 기록을 어디서 어떻게 다시 찾아야 하는지, 기록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 입양기록이 분실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 상황을 대처해 나가면서 상당한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기록을 찾기 위한 여정은 계속될 것이고, 다른 입양인들의 기록을 찾는 과정에 도움을 주는 역할도 할 것이라고 하였다.

“사막에서 바늘 찾기와 같기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제 말은 어딘가에 서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로서는 찾을 방법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 유전자정보가 여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여러 군데 등록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정보가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경찰에게도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역사적 배경, 한국의 사회정치적 상황, 사회복지제도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더 넓고 거시적인 측면과 미시적인 개인 경험의 관점으로 이해하려 했고, 때론 이 모든 상황에 분노했습니다. 최악의 날에는 격분할 때도 있지만 괜찮은 날에는 동정심을 갖거나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처음에는 이 사실을 받아들인 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어떤 면에선 아직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더 노력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겠지

만 한 걸음 물러선 상황입니다. 지금은 입양기록을 찾거나 입양기관과 접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추후에는 입양기록을 찾기 위해 더 노력하거나 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입양인을 지지해주고 기록 찾기를 돕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투쟁을 어떻게 이어가고 더 힘있게 싸울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측면에서 제 정신적 건강을 위해 한 걸음 물러서서 다음 수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사례: E)

신분이 뒤바뀐 상황에서도 입양을 진행시켰다는 것은 사회구조적으로 인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그럼에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은 송출국과 수령국 양국이 인신매매를 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너무도 광범위하고 심지어 한국의 전체적인 제도적 부정의를 벗어나 국외에서도 발생했죠. 양국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공급이 있고 미국에 수요가 있었습니다. 같은 두 나라였던 것이죠. 양쪽의 정말 잘못된 제도로 어떻게든 함께 거래하는 구조이죠. 생각해보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인신매매입니다.” (사례: E)

#### ④ 기록의 접근성: 기록의 조작

해외입양인이 가족찾기 등 자신의 기록을 접근하려고 할 때 공공 영역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우선 언어의 접근성이라는 문제이다. 한국어를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영어로 번역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그러나 한국과의 관계가 단절된 현실적인 조건에서 도움을 요청할 개인이나 기관을 찾는 것 자체부터 어려운 작업이다. 입양인은 우선 기록의 해독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사실 기록의 부실도 문제지만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해석을 지원해줘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해외입양인이 기록에 접근한다는 것은 한단계 한단계 힘든 여정을 거쳐야 한다.

“입양 자료에 영어로 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입양인으로서 모국을 방문할 때 우리 모두가 직면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아이들과 같이 의존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 저는 한국에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 저는 제 서류 내용이 무엇인지조차도 몰랐습니다. 곧바로 번역을 받아볼 수도 없었고 제가 발견되었을 당시 종이 쪽지와 함께 있었다는 잘못된 생각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신원정보가 바뀌치기된 것을 알기 전까지는 번역하는 데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는 당연히 번역을 맡기고 기다리고 번역료를 지불해야 하며 통역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쉬운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시간, 돈, 자원을 가지고 있을 만큼 충분히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 0000000가 별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 사실 친생부모들은 수치심에 앞으로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는 실제로는 매우 드물지만, 박씨(자신과 친자관계 가능성이 있었던 분으로 결론적으로 유전자검사 결과 친자가 아니었음)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DNA 계정을 관리하고 자신의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간절히 딸들을 찾고 싶어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박씨의 사례가 제게 가르쳐준 것은 이 일이 무척 쉬울 수도 있지만 동시에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 매우 어려운 과정입니다. 23andMe社は 미국 외에 다른 많은 국가로 배송이 가능하지만 한국으로는 보내지 않는데, 한국 정부가 이를 원하지 않기 때문인가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사례: A)

한 개인에게 기록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해외입양인의 경우 입양이 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비입양인이 본인의 기록에 대해 무관심한 것과는 기록이 가진 의미의 층위가 다르다. 그럼에도 입양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궁금해한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은 모두에게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외로 입양이 된 존재로서 자신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을까에 대한 의문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기록의 중요성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특정 나이가 되면 자신의 과거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되면서 자신의 과거를 들여다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 제가 전혀 모르고 있는 거대한 공동체가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런 공동체의 존재가 굉장히 놀라웠고,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에 관심이 생겼어요. ... 한국인 입양인 관련 이슈에 대한 토론이 있었고, ‘뿌리 찾기’(생물학적 가족 찾기 방법)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었습니다. 저도 모자이크 투어(조각 찾기 여행)에 참여했는데, 바로 ‘2018년 해외 입양인 모국 방문 투어’였고, 그 여행이 저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사례: A)

그러나 자신의 기록을 요구할 때 입양기관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데 적대적인 경우도 있었다. 한국에서 살아갔다면 2등 시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텐데 기록을 요구하는 것 자체를 은혜를 모르는 것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D는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입양기관의 직원 중에는 ‘당신은 좋은 삶을 살고 있고 영어도 가르치고 대학도 다니는데 왜 더 많은 것을 원하느냐’는 식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궁금증은 기본적 권리에 해당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입양기록을 제공하는 것에 비협조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입양기관들은 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정보가 있지 않는 한 입양인들이 은혜를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에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제가 누리고 있는 삶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영어를 할 줄 알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고요? 그들은 제가 한국에 남았다면 고아로서 2급 시민으로 살았을 것이라는 얘길 하는 겁니다.

입양기록을 왜 공유하지 않는지 여러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만약 한국 엄마가 아이를 포기해야 했고, 남편이 학대해서 어머니를 보호해야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하지만 입양인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가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엄마는 상황이 안 좋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여기 입양기록이 있습니다. 훗날에 연락이 닿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는 거죠? 왜 공유하지 못하는 거죠? 왜 사실을 감추는 거죠?” (사례: D)

해외로 송출되는 과정에서 기록이 바뀌어 자신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사례도 존재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개인의 기록을 바꾸가면서까지 해외로 입양보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사회적으로 파악을 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기록을 접했을 때 느낌을 이야기하고 있는 C는 한국 정부가 공모한 인권침해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때가 스물 한 살이었고, 제 양부모님 가족들과 한국 방문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보게 되었어요. 2003년에 한국을 갔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 기록들을 보게 되었죠.

그 기록들과 내가 무관하다는 느낌이었어요. 솔직히 문서가 ‘제삼자’로 쓰여 있어 제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었죠. 지금의 나 이전에 존재했던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라고 느꼈어요.

21살 때 처음 기록을 보았을 때의 느낌은 ‘아냐, 이건 믿을 수 없어’였어요. 우선 저는 버려진 아기가 아니었어요. 내가 사산되었다고 의사가 어머니에게 말한 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입양 기록이 거짓이겠죠. 내가 태어난 병원, 친어머니의 존재, 입양 기관에 나를 넘긴 의사, 지금 밝혀진 많은 것들이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입양 대상이 되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저는 000와 한국 정부가 저를 입양 보내기 위해 기록을 조작하는 데 함께 공모했다고 생각해요. 이걸 심각한 인권침해예요” (사례: C)

동성동본이라는 사회적 금기는 사랑의 결실인 아동을 포기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법적 혼인이 허용되지 않았던 상황은 아동의 출생 자체를 막았다. C의 사례는 부모가 아닌 사회가 그를 사회적 죽음으로 내몰고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해외로 보냈다고 할 수밖에 없다.

“80년대엔 동성동본이 결혼해서 애를 낳는 게 큰 문제였어요. 병원에서 그 사실을 알고 어머니에게 제가 사산되었다고 거짓말했어요. 제 두 동생들(같은 아버지의)은 집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는 저를 낳을 때 폐렴으로 너무 아팠대요. 병원에서 유도분만을 했고 시술 후 어머니가 깨어났을 때 저는 이미 없었다고 해요.” (사례: C)

자신의 기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처음 접했을 때 느끼는 감정은 어떠할까? 상상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겠지만 분노할 대상이 명확하지 않았을 때 그 슬픔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왜 울음이 나왔는지 그때는 몰랐는데, 그 순간에 거짓말의 심각성을 무의식적으로 자각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 미팅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 제 서류들을 번역 의뢰했는데, OOO에 대해서는 더 많은 정보가 있었지만 그 아이의 친부모에 대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 제가 OOO이 아니라 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사례: A)

해외입양인은 본인의 기록을 보여주지 않는 입양기관의 대응과 관련하여 보여주면 안되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이미 기관이 입양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을 모두 알고 있다는 생각과 연관된다. 입양인의 기록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입양기관은 왜 인정하지 않을까? 사실 사례에 따라 쉽게 정보를 획득하거나 가족찾기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기 때문일까? 다시 말해 기록이 왜곡되었거나 조작된 경우는 실수에 의한 소수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은 자기정당화는 아닐까? 그러나 불과 몇몇에게만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갖는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OOOOOOOO가 저에게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까지 저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사실은 모든 OOOOOOOO의 입양 파일 안에 입양인은 절대 볼 수 없는 테이프 형식의 자료가 있다는 것입니다. ... 개인별로 각자의 번호를 갖지 않는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 마침내 제가 OOO과 닮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저의 신원이 바뀌치기 된 것이라면 저의 진짜 신원 정보는 OOO 파일 뒤에 있어야하는데 거기에 없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신도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와의 약속을 앞두고 제 정보를 파일에서 빼 뒀다가 제가 돌아간 이후 다시 돌려 놓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분실했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다른 일이 생겼던 것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포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문제는 OOOOOOOO이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더 낫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 평생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저는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운 좋게’ 도움을 받

아 이만큼 올 수 있었지만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 제 경우와는 달리 많은 입양인들이 0000000를 찾아가 5분 만에 친생가족과 재회하거나, 뒤바뀐 신원정보에 대해 직접 듣고 자신의 진짜 정보가 들어있는 파일을 받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000를 방문하여 겨우 약간의 정보를 얻은 경우도 있으며, 또 어떤 경우에는 거짓된 재회 이후 DNA 테스트를 통해서야 신원정보가 뒤바뀐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다양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따라 누구는 자신의 진짜 신원정보를 얻고, 누구는 얻을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우리를 보냈다는 사실이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례: A)

E의 경우는 자신의 입양기록은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에 와서 입양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는 이전에 보지 못하였던 친부모와 관련한 정보였다고 말했다. 정보가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 실제 자료를 볼 수 없었다고 기억했다.

“제가 갖고 있던 입양기록은 항상 볼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갖고 있었지만 한국에 와서 사회복지사를 직접 만났을 때에는 파일에 다른 정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특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만나지 않았다면 제 파일에 없던 다른 정보가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후 한국을 떠나기 전 아마 2008년에 사회복지사가 입양기록의 한국어 번역본과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 재회했던 친어머니께 보여드려서 정보가 정확한지, 입양서류의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친어머니께 보여드렸고 맞는 정보라는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 정보가 유일하게 제가 어린 시절부터 갖고 있던 파일에 없던 정보였습니다.

자라면서 저희 가족이 보냈던 편지와 사진이 있던 파일이에요. 친어머니께서 제 파일을 언젠가 요청하실 수 있다는 희망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파일은 제가 처음 보는 정보였습니다. 편지들이 어디로 갔는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실제 파일로 잘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 자료가 아직 남아있어서 볼 수 있었고요. 사회복지사가 읽어준 정보에 자세한 내용이 더 많았습니다. 친아버지에 대한 정보를 더 알 수 있었고, 친어머니에 대한 정보도 조금 더 받았고, 교육과 형제관계 등 제 파일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지 않던 여러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정보였습니다. 입양기관이 자료에 대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실제 문서를 보고 만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입양기관에 혼자 갔기 때문에 필기는 했지만 자료를 복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파일에 없었던 친가족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것을 기억합니다.(사례: E)

연장아동으로 입양되었던 B의 경우 자신의 기록이 왜곡되었다는 것을 더욱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기록을 보게 된 특별한 이유는 없었지만, 알고 싶었다는 말을 하고 있다. 알고 싶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명료하게 알 수는 없지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궁금증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문제이며, 특히 가시적으로 다른 ‘존재’로 보이는 경우에는 더욱 그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입양)부모님은 입양 서류를 숨기지 않았어요. 탁자 위에 서류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머니는 그 서류를 좋아했어요. 제가 도착한 날을 상기시켜주는 기념품같이 여겼거든요. 처음 서류를 봤을 때는 아직 미국에서 조금 배운 영어를 알 때라서 기록을 읽어봤는데, (입양 기록에) 제 친생부모가 ‘미상’으로 되어 있었어요. … 저는 어머니의 이름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거든요. 첫 번째 고아원에 있을 때 저는 오빠와 언니들이 있다고 말했고 부모님 이름도 말했어요. 왜 입양 기록에 거짓을 적어 놨는지 모르겠어요. … 뭔가를 기대한 건 아니었고 그냥 알고 싶어서 읽었어요.

가족 정보에 관한 마지막 서류는 몇 년 후에 제가 모든 서류를 보내달라고 입양기관에 서신을 보내고 나서야 받았는데, 여기에 새로운 정보가 있었어요. 그 서류를 읽어봤을 때, 제 (입양)어머니가 왜 제 말을 믿지 않으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처음 2-3년간 저는 한국과 제 가족에 대해 자주 얘기했는데, 그때마다 양어머니는 그건 사실이 아니고 저는 친아버지에 의해 버림받았다고 말했거든요. 그 서류를 읽어보니 어머니가 제 말을 믿지 않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들이 설정한 내용과 기록에 쓰인 것을 믿었던 거죠. 제가 가족에 대해 얘기할 때마다 어머니는 제 말을 무시하거나, 제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거나, “네가 4살 때 네 어머니는 돌아가셨어” 혹은 “네 아버지가 너를 집주인에게 버렸어”라고 대답했어요. 마지막 서류를 보고 나서, 그런 최초 정보가 OOOOOOO에서 나왔다는 걸 알았죠.

그 서류를 입수했을 때에야 확실히 알았죠.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그들은 거짓을 기록했어요. 기록은 사실이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 이름을 알았어요. 다른 입양인들에게서 기록이 거짓일 수 있고 조작됐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서류를 보니 그 말이 사실이었어요.” (사례: B)

B는 입양기관에 요청하여 이미 알고 있는 자료 이외의 자료를 받았지만, 그 자료를 통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가족의 배경정보가 조작되어있는 입양서류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기록의 조작은 매우 많은 사항을 왜곡시킨다. 이것은 입양부모가 알아야 할 권리 역시 침해하는 행위이다. 그러한 조작을 입양을 중재해야 할 기관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입양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한다. 이것은 기관의 문제를 넘어서 가난했다는 이유로 개인의 기록을 조작까지 하면서 해외로 보낸 사건을 ‘국가가 버렸다’고 말하는 그의 증언은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한국인인 게 부끄러웠어요. … 기록을 읽고 나서는 제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썼어요. 가족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걸 원치 않아서 … 한국인들은 거짓 기록을 썼고,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저를 거부했다는 내용이었죠. 제가 쓰레기같이 느껴졌고 저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제가 한국인인 게 부끄러웠던 것뿐만 아니라 저 자신이 그냥 부끄러웠어요. 기록을 읽고 나서, 가족에게만 거부당하는 것보다 나라에 의해 거부당하는 게 더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 한국이 가난하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절 버렸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도 어떻게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저를 팔아넘길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단지 한 가족이 그런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그런 거잖아요.” (사례: B)

입양기관에 기록을 요구했을 때 이미 가지고 있었던 기록만을 넘겨줬지만 가족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는 알려주지 않았다. 특히 그는 가족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기억에 기초하여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후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주었기 때문에 이 의심은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좌절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결코 입양기관은 기록의 조작과 관련하여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잘못의 인정을 넘어 오히려 입양이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할 뿐이었다. 입양기관에게 입양은 철저히 아동의 이익을 위한 선택이었고, 기록의 왜곡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아동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었다는 생각이 깔려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는 국가의 암묵적 동기가 전제되었다는 것 역시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기록의 조작이 입양가족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데 비롯한다. 결국 입양기관이 입양부모와 입양인 모두가 알아야 하는 정보를 왜곡함으로써 모두의 권리를 침해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그럼에도 사례 B의 경우 연장 아동이었기 때문에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을 미약하나마 함께 한 경험을 갖게 하였다.

“설사 제 서류에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 입양기관은 저를 도와주기를 거절했습니다. … 조작된 입양서류를 읽은 첫날부터 답답했습니다. 그 서류의 정보는 제 기억을 의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때때로 저는 제가 미쳤는지, 제 기억이 잘못되었는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간절히 제 가족에 대해 생각했음에도 말이죠. 다른 경우에는 제 기억이 정확하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 가족을 찾고 싶었다면 저는 제 기억을 잘 간직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 OOOOOOO가 내가 내 가족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좌절스러웠습니다. 제가 학대나 알코올 중독 얘기까지 해도 그들은 항상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제가 입양되지 않았으면 학위를 따지 못했을 거라는 등의 말만 했어요. 그 학위는 제겐 중요하지 않아요. 설령 그게 중요하다고 해도 제가 원하는 건 가족뿐이었어요. 관계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부모님은 잘 몰랐으니까요. 아버지는 제 말을 믿었어요. 제가 기록이 허위고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기억하는 … 하지만, 어머니는 그 모든 게 제 상상일 뿐이

고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신경쓰지 않았어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조작은 제가 형제자매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쓰인 부분이에요. 아버지를 잃어버린 후 제가 거쳐 간 모든 곳에서 저는 형제에 대해 말했거든요.” (사례: B)

기록의 왜곡이나 조작은 명백하게 인권침해라고 말하는 입양인의 증언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나의 뿌리를 아는 것은 기본 인권인데 OOOOOOO는 정확한 정보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거짓말 때문에 양어머니는 제가 ‘상상력이 지나치다’고 생각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기록한 거짓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았고, 그들이 한 짓에 영향을 받은 것은 저뿐이에요.

지금은 받아들였지만, 처음 사실을 알았을 때 매우 힘들었어요.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감정적인 면에서 한동안은 매우 화가 났어요. 그 일에 관해 말할 상대도 없었고요. 입양 이후로 줄곧 혼자였기 때문에 외로움에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렇다 해도 가끔은 밖에 나가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아무도 없으니까” (사례: B)

해외입양인은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이전인 아동시기에 외부와 고립된 상황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제약이 있다.

“저는 항상 저만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1989년에 한국에 갔을 때 다른 입양인들은 저보다 어렸어요. 그 사람들은 아기일 때 입양된 거죠. 그래서 입양기록이 조작된 사람은 아마도 저뿐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 하지만, 여러 해가 지난 후에 한국계 입양인 단체를 통해서 저 같은 사람들이 더 있다는 걸 알았죠.” (사례: B)

해외입양인은 자신의 기록을 요청하였을 때 협조적이지 않았던 경험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잘못된 기록에 대해서 입양기관은 어떤 사과의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입양기관 OOO는 입양 기록을 제공하는데 전혀 협조적이지 않았어요. 2003년 OOO를 방문했을 때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았어요. 단지 작은 입양 파일들만 가지고 있었고 제가 가진 것과 동일한 거였죠. 협조적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공식 사과를 피했어요. 그들이 왜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는지 전 알고 있어요. 공식 사과를 하면 책임이 따르니까요. 책임을 인정하면 보상이 따르게 되겠죠. OOO는 나쁜 기관이라고 생각해

요. 입양 관련된 기관 중 상당수가 그래요. 000는 정체가 폭로되고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0000000는 여전히 존재해요. 0000000도 없어져야 해요. ... 입양인 회의에 그들이 스페셜 게스트로 있는 게 납득이 안 됐어요. 이제 2021년이고 이들이 책임을 질 때가 됐어요. 네덜란드 정부도 어느 정도 잘못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과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덜란드 정부가 같이 공모한 건 아니지만 정부가 국가 간 입양에 대한 공식 사과를 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한국 정부도 과거를 인정할 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한국 정부가 입양인들에게 배상과 보상을 하고 더불어 친모들에게도 해주었으면 합니다.” (사례: C)

D는 자신의 기록을 접하고 입양기관이 입양부모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을 진행시켰다는 생각을 하였다. 더욱이 기록의 왜곡으로 가족을 찾는 데 장벽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기록을 보는 것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 편지를 읽고도 양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다는 것을 생각하면 또 다시 화가 납니다. 그런 부분에 의구심을 가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입양기관에서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왜 더 엄격한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입양기록을 찾았습니다. 양아빠가 저희집 지하에서 우연히 찾았습니다. 우연히 찾으셨고 제가 입양기록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셨습니다. 서신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셨습니다. 저를 부르셔서 제가 찾던 입양기록을 찾았다고 하셨습니다. 서류가 쌓여있었습니다. 아빠는 저를 위해 입양기록을 보관했지만 양어머니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 0000000를 방문할 수 있었고, 입양기록을 요청했는데 엄청 두꺼운 파일을 갖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건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 아마 그 자료가 의료기록이었는데, 안보여주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저한테 숨기는 게 많다고 느껴졌습니다. ... 다른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요청했을 때 거절당했습니다. 제게 자료를 볼 수 없다고 했고 저는 의료자료라면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왜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는 하나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양어머니가 아이를 보기 전까지 돈을 더 내고 싶지 않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품없는 아이를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때 처음으로 입양기록을 볼 수 있었고 당시에 20대였습니다. 하지만 거의 30살이 되어서야 실제로 제 입양기록을 봤습니다. ... 저는 정말 백인사회에 갇혀있었습니다. ... 한국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2000년도에 처음 한국에 갔을 때에는 1년만 살 생각이었지만 결국 10년이 넘게 있었습니다. 그 후 제 자신이 누구인지 찾아가면서 가족찾기를 했습니다. ... 저는 적극적으로 가족을 찾았지만 아직까지 결실이 없습니다. 이제는 거의 포기한 상태입니다.” (사례: D)

D의 입양가족은 이미 친자녀가 있는 상황이었다. 그에 따르면 기록과 달리 입양부모는 도움이 필요한 여자아이를 원했다. 이것은 입양가족과의 신뢰관계와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첫 출발부터 어긋났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너를 원하지 않지만 네가 온거야’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그 관계가 친생가족이었다고 하더라도 큰 상처로 남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아는 사람 한명 없는 머나먼 이국땅에 홀로 보내진 어린 아동이었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그리고 그 아동의 성장 과정은 순탄할 수 있었을까?

“입양기록에서 찾은 또 하나의 거짓말이 있는데요. ... 어린아이를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우려고 했던 거죠. ... 여자아이를 돕고 싶어서 입양을 택하신 거죠. 양부모님께 왜 저를 입양했냐고 여쭙봤을 때 그냥 저를 원치 않으셨다고 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너를 원하지 않았어. 더 나이가 많은 아이를 원했는데 OO에서 다른 2명의 아이들이 아닌 너를 보낸 거야. 왜냐면 원래 오려고 했던 8살과 9살짜리 아이들은 이미 입양되었어’라고 하셨습니다.” (사례: D)

D는 기록을 찾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도 기록을 찾아볼 계획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물론 입양기관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관건이기 때문에 기록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입양기록을 찾기 위한 노력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갖고있는 자료는 양어머니가 태우려고 했던 파일에 있던 자료입니다. 호적과 같은 한국어 자료는 한국 입양인들이 운영하는 해외입양인연대(G.O.A.'L)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해외입양인연대는 제가 이중국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호적과 자료 찾기를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조사하거나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OOOOOOO를 방문한지 너무 오래되어서 생각할 때마다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화를 다스려야 하는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한국에 가면 OOOOOOO와 약속을 잡고 입양기록을 찾아볼지 생각 중입니다. 저에게 있을 것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아직도 답이 없고 어디서 기록을 더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OOOOOOO 아니면 어디에 가겠어요.” (사례: D)

더불어 D는 자신의 기록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기록이 잘못되었다면 진실을 찾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지적은 한 개인의 삶을 당시 상황을 핑계로 제도에 의해 조작이 가능한 사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를 묻게 한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중 하나 제 생년월일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제 이름은 매우 독특합니다. 저 말고 OOO이란 이름을 가진 사

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000은 매우 독특한 한국이름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름이 특이하기 때문에 지어준 이름이거나 옷 라벨에 적혀 있던 이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어디에서 얻었을까요? 그들이 만들어낸 사실일까요? 자료에는 제가 여름철에 입양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도착기록에는 3월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 불일치한 날짜가 너무 많습니다. 입양기록이 오래되고 의심스럽다면 진실을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또는 다른 자료가 없다면 어떻게 입양기록에 대한 진실을 찾을 수 있을까요?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어떻게 구분하죠? 연표가 틀렸습니다. 제 연표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례: D)

E는 자신의 기록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 입양기관은 몰랐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렇지만 입양 기록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명백했다. 왜냐하면 기록과 달리 유전자 검사의 결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그는 기록에 접근하면서 여러 경로를 통해 도움을 받았다고 하였다.

“제가 이해하기로 입양기관은 몰랐던 사실입니다. 제가 보고, 받은 내용이 그렇다는 뜻이지요. 2012년에 제가 이 얘기를 꺼내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그 전에 이런 내용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제 입양서류가 바뀌었거나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전자검사를 진행하는 절차와 친어머니와 대화할 수 있도록 통역을 지원하여 저를 진심으로 도와준 ... 국내에서의 도움과 저의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는 그러한 방법을 한국에서 시도하면 어떻게 조언해주고 지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제 기록을 찾는 일에만 해당하지 않고 제 상황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사례: E)

자신의 기록이 없다는 것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비단 본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친생가족에게도 부당한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E의 말은 우리 사회, 그리고 입양기관은 왜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을가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입양인 한 명이 아닌 입양인 공동체와 특히 친가족에게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실제와 다르며 밝혀진 사실을 보면 저희들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원정보가 뒤바뀌었을 수 있는 다른 입양인을 만난 후 더 큰 부당함과 제도적 부정의가 존재함을 깨달았습니다. ... 아동복지제도에 정말 깊숙이 뿌리 박힌 부정의의 문제이자 한국 해외입양제도에 깔려있는 전염병의 징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정의로 인한 고통을 겪었지만 반면에 더 큰 제도적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례: E)

기록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한 입양기관은 사과의 뜻을 전달했지만 기록을 찾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는 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했을 뿐이다.

“2012년과 2017년에 두 차례 방문하여 뒤바뀐 입양서류에 대해 의논하고 서류 원본을 요청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만났던 분들은 진심으로 걱정해주시며 사과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마 1980년대 당시에 입양기관에 계셨거나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분들이 아닐 것입니다. 그저 체제의 일부일 뿐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부정의의 무게와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질문과 요청, 그리고 기록을 찾기 위한 노력에 대해 조금 둔감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이 가로막힌 듯했고, 관심 있거나 걱정해주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실제로는 제 기록을 찾거나 도와주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서 좌절감을 느꼈던 과정이었습니다.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제가 그만두고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아무것도 추진하지 않아서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잠잠하게 더 큰 문제로 부각되지 않는 거죠. 미네소타 주 입양기관을 방문했을 때에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입양기록을 적합한 수준으로 관리하지 못하거나, 위조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 단체와 협력했기 때문에 한국뿐만 아닌 미국측에서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주의로 인해 이러한 과정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입양기관을 방문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있는지 전혀 몰랐으며, 미안하다고 얘기했지만 도움을 주려고 하거나 그 어떤 답변도 없이 한국입양기관이 책임지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례: E)

자신의 기록이 아닌 다른 사람의 기록으로 바뀐 경우인 E는 입양기관이 관련 서류를 보유하고 있지만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아마 갖고 있다면 제공할 것이라고 믿고 싶어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입양기관의 기록관리가 부실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양기관이 공유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고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갖고 있거나 보관 장소를 안다면 저에게 알려 줄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기록관리를 잘못된 부분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체면을 지키려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결국 과실을 인정하는 상황이 될 테고, 그 영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겠죠. 저는 정말로 미숙한 기록 관리였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책임을 묻게 할 수준의 기록관리 기술이나 그러한 표준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몰랐을 것입니다. ... 전체적으로 이 제도가 실패한 것입니다. ... 어디가 문제인지 정확히 집어낼 수 없습니다. ... 한국 입양절차에 점수를 주자면 미국 수준으로 F 학점을 줄 것 같습니다. 한국 입양인과 친가족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정책

변화와 개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을 잘 운영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례: E)

기록이 삶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그런데 E는 그 기록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그는 심대한 고통을 겪게 되면서 입양인 사회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정확한 신원정보가 없으며 그 자료를 볼 수 없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 다양한 심리적 고통과 혼란을 겪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한때 저의 정체성이라고 믿었던 부분이 더 이상 저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해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전문적으로는 특히 정신적 건강에 있어 입양인 사회를 돕고 싶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제가 받았던 도움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겨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입양인 사회를 지지하면서 입양인이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상황에 있는 입양인에게 유사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밝혀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입양인 사회 안에서 자살률이 엄청 높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런 처참한 상황에 처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입양인 사회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입양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나, 입양인과 사람들이 주어진 상황을 받아드릴 수 있게 도와주는 지원과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사례: E)

F는 자신의 기록에 대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고 하였다. 기록이 잘못된 이유는 알 수 없다고 하였는데, 자신이 입양되기 전 지냈던 시설에서 어머니가 일했다고 증언하였다. 어머니는 그 시설에서 학대가 일어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F와 동생을 시설에 보냈는지에 대해 재회 후 어머니는 자신들의 입양에 대해 말하고 싶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시설에 보낸 사실을 부인하였다고 하였다.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그렇지 않아요. 제 할머니가 입양을 제안했다고 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우리를 고아원 앞으로 데려갔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고아원에서 일했었어요. 이혼 후에 거기서 보모를 했었죠. ...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OOO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 어머니인 줄 알게 됐죠. 아직까지 재회한 어머니에게 물어보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입양에 대해 말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어머니는 우리를 고아원에 데려간 사람이 어머니라는 걸 여전히 부인하세요.” (사례: F)

F는 자신의 기록을 23살이 되던 해에 처음 접하였다. 그의 경우를 통해 입양구조에서 알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은 입양부모의 기록도 조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F에 따르면 입양부모는 20년 정도 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이 대졸에 고소득자로 기록되어 있었다고 한다. 기록을 조작하기 위해 입양부모와 입양기관 간의 커넥션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결국 사적 영역에만 맡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공적 기관, 즉 국가의 책임있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가를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무엇 때문에 제 입양부모가 입양부모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했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러자 그 기관에서 파일을 보여줬는데, 부모님 생일, 학력, 직업이 다 거짓으로 적혀 있었어요. 거기서 한 가지 말해준 게 있는데, 거기서 일하던 여성, 그러니까 제 입양부모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 면접을 담당했던 여성직원이 있었는데, 허위기록으로 고소당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봉투를 받고 신청서류를 조작했어요. 결국, 허위기록으로 인해 감옥에 갔어요.

기록상으로 그들은 1950년대에 태어났고, 대졸자이고, 고소득자로 돼 있었거든요. 허위기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파일 사본을 달라고 하자, 보내주겠다고 하더니 보내지 않았어요. 겁먹은 것 같아요. 그 파일을 가지고 법적으로 제가 뭔가 할까봐서요. 그래서 제게 파일을 보내지 않았어요. 제 입양부모의 신청을 도왔던 사람은 감옥에 갔죠. 입양된 한국 아이들 중 한 명이 자살을 한 것도 이유 중 하나였을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례들이 조사됐는데 입양하기에 부적절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허위기록이 밝혀졌고, 관련 소송이 잇따르면서 그 사람은 7년형인가를 받고 감옥에 갔어요. 제 생각엔 OOOOOOOO도 신청서 사본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자료 접근에 동의한다는 입양부모의 서명을 받으면, 그러니까 입양부모의 승낙을 받으면 자료를 주겠다고 했는데, 저는 17살 이후로 그분들과 연락하지 않고 있어요.

OOOOOOOO는 입양부모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절했어요.” (사례: F)

본인의 기록에 대한 왜곡을 알게 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은 헤아릴 수 없지만, 입양부모의 기록마저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감정에 휩싸일까? 그러나 F는 충격적인 상황이지만 입양부모가 자신에게 행했던 행동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했다.

“충격적인 일이었지만, 사실상 놀라운 일은 아니었어요. 정서적으로 입양부모가 되기에 적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가 도착한 다음 날부터 학대가 시작됐으니까요.

우리가 한국어로 말하는 걸 금지했어요. ... 저는 동생에게 떠나야 한다고 했어요. 입양된 지 일주일 후에 짐을 싸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입양부모에게 말한 기억이 나요. 그러자 울기 시작하더군요. 아주 교활한 사람들이예요.” (사례: F)

F는 기록을 통해 입양절차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입양기관에 정보를 요청했지만 입양부모의 동의 없이는 불가하다는 답만 돌아왔다. 이러한 상황은 입양절차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반증할 뿐이었다. 그리고 그의 증언 중 유의깊게 살펴야 할 지점은 본인이 입양인으로 정체성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째서 그들이 입양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는지 알고 싶어요. OOOOOOO는 한국에 있으면서도 모든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독립적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의 기관을 믿고 무조건 도장을 찍어주는 게 아니라, 파일을 다시 보고 사람들을 다시 면접해야 해요. 최근에 예방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청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사전예방조치가 없었어요. 입양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바로 아이들을 보내 입양되게 했어요. 관찮은 가정에 입양된 성공적인 입양사례도 있는 것 같지만, 모든 입양이 성공적이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각 사례에 관심을 가져야 해요.

프랑스 입양기관에 파일 사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보내주지 않았어요. 저는 입양인 지원 단체와는 실질적인 교류를 하지 않아요. 제가 입양인이지만 말이예요. 그건 일종의 제 삶의 방식인데요, 좀더 말하자면 저는 제 자신의 정체성을 입양인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 자신을 제한하는 것이니까요. 제게는 그저 입양인, 입양된 사람으로서 한정지어지는 것보다 더 많은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양부모 동의 없이는 기록을 주지 않겠다더군요.” (사례: F)

F에 따르면 입양부모는 한국 아동이 똑똑하고 순종적이라는 이유로 해외입양을 선택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성장과정에서 한국을 굉장히 그리워했고 외로웠음을 고백했다. 왜 기록이 부정확했는지에 대해서도 적절한 답을 해줄 수 없는 입양기관의 현실을 이해한다고도 하였다. 그렇지만 기록의 부정확성은 분명하게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허위 정보가 있었고 제 입양부모에 관한 파일은 조작된 정보가 있다는 게 확실해요. ...분명한 인권 침해가 있었고 OOOOOOO가 본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사례: F)

H는 입양부모가 기록을 보여주어 처음 접했다고 하였다. 입양부모는 입양을 비밀로 하지 않았으나 시민권 취득에 대해서는 사려깊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제가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나이가 들었을 때, 입양 부모가 제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저의 입양 사실을 숨기지 않았던 거죠.

그분들은 입양 사실을 비밀로 하길 원치 않았어요.

좀 더 책임감 있게 제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줬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사례: H)

G는 자신의 기록을 통해 입양절차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15살 즈음에 문서들을 보게 되었어요. 양부모님이 다른 문서들과 함께 보관하는 파일이 있어서 보게 되었죠. 하지만 후에 부모님이 그 파일을 버렸어요. 제가 한국에 돌아간다고 할까봐 걱정이 됐나 봐요. 부모님에겐 망상 같은 게 있었어요. 한국에서 스위스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우릴 한국으로 데려갈 거란 터무니없는 생각이었죠. 그것은 아이를 잃을 수 있다는 일반적인 양부모들의 공포이면서, 부모님이 입양에 대해 전혀 교육받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전 친가족을 찾고 싶어 입양 기록을 보고 싶었어요. 12살부터 찾기 시작했는데 15살이 되어서야 문서들을 볼 수 있었어요. 처음 부모님이 모아둔 파일을 볼 수 있는 기회였죠. 20세 때 ‘테레 데스 옴무’에서 파일들을 받아볼 수 있었어요.

이름은 맞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친어머니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것 외에, 아버지는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형과 제 생일이 맞지 않았어요. 비록 가짜지만 표준 양식으로 되어 있는 문서였어요. 현재도 입양 절차에 사용하는 문서일 거예요. 그 때문에 입양 절차 중 비판을 많이 받는 지점 중 하나예요. 헤이그 협약에 근거하면 입양되기 위해선 아이가 고아여야 해요. 하지만 우리는 고아가 아니었어요. 입양인들 중 다수가 가족이 있고 단지 시스템으로 인해 입양이 된 거예요. 제 경우 문서에는 새로운 사실이 없었어요. ‘테레 데스 옴무’에서 받은 문서들을 꼼꼼히 훑어봤는데 부모님이 갖고 계신 것과 같았어요. 새로운 게 한 줄도 없었어요.” (사례: G)

G는 입양기록을 공유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은 민간영역에 전적으로 맡겼던 시스템으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을 하였다. 입양기관이 입양절차에서 행사하는 권력이 독점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국가가 제어하지 못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하나는 친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겠죠. 아이들을 포기한다는 건 남보기 창피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숨겼을 거예요. 특히 저희의 경우는 어머니가 재혼했잖아요. 그리고 입양 기관들은 입양인들이 다시 한국에 돌아올 거란 걸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해외에 보냈으니 거기서 행복하게 잘 살거

라 생각했겠죠. 생물학적 뿌리를 찾으려는 본능이 너무 명백한데도 입양 기관들은 전혀 그거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입양인들이 점점 더 많이 찾아오니까 그제서야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한국에서 변화는 매우 느리게 일어나요. 입양 기관들이 민간에서 운영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들은 입양을 사적으로 다루요. 이런 종류의 일은 정부 기관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돈 문제가 있어요. 돈은 입양 기관이 입양을 계속해야 하는 아주 강한 동인이 됩니다. ... 그들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어요. 모두 돈이죠. 비영리 단체라 해도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 몇몇은 급여가 높아요. 그래서 바뀌야 할 게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 문제는 입양 자체가 아니라, 입양 기관들이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진짜 문제예요. 또 한국에서는 자율 규제라는 개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이미 증명되었어요. 입양 기관이 알아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절차를 만들어서 입양을 진행해요. 그것이 표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표준은 정부가 정해야 해요. 기관들은 그 표준을 철저히 따라야 하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한국이 아직도 최대 입양 수출국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한국은 입양기관들이 모든 시스템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이 기관들이 정부와 국회에서 발휘하는 로비의 힘을 보면 놀랄 거예요. 얼마나 로비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지.” (사례: G)

더불어 그는 기록 요청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는 분명히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아이가 자신의 출생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삭제하거나 부정하는 순간 그 아이도 부정되는 거죠.” (사례: G)

호기심에 기록을 보게 된 I의 모든 기록은 거짓이었다. I의 기록에 대해 입양기관은 서류가 누락되었다는 것을 확인해줬을 뿐이었다. 그는 기록이 갖는 의미를 지적했다.

“십대 시절에 호기심 때문에 봤는데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버려졌다는 것과 아버지 미상, 어머니 미상 등의 내용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끝난 이야기였어요. 아무런 정보가 없는데, 왜 그리고 어떻게 내 과거를 찾을 수 있나요? 고아원에서 준 사진이 딱 3장 있었는데, 그 사진들을 항상 봤어요. 사진 속 제 눈이 매우 슬펐죠.

입양 기록은 과거와의 유일한 연결 고리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그 기록에 아무런 정보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도 하죠. 제 과거에 관한 유일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 과거를 추측했고, 더 일찍 관심 갖지 않고 찾지 않은 이유이기도 해요.

왜 국내 입양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어떻게 고아원에 가게 됐는지 알고 싶어요. 버스 정류장에 버

려진 걸 발견했다는 말은 더 이상 믿지 않아요.

제 기록이 불완전하고 중요한 정보가 누락됐다는 것에 매우 화가 나요.

추가 서류가 누락됐다는 사실을 확인해줬어요. 그 서류에는 제 생일이 어떻게 결정됐는지(제가 발견됐을 때 이름과 나이를 말했고, 그래서 발견된 날로부터 2년 전의 날짜를 생일로 한 거죠), 제 이름은 제가 직접 말했다는 것, 그리고 위탁 부모가 있었다는 사실이 기록돼 있었죠. 2018년에 위탁 어머니를 찾아냈는데, 그 분이 저를 입양하려고 했었다고 확인해줬어요. 이 주장을 입증하는 또 다른 서류가 고아원에서 발견됐죠. 위탁 부모의 입양 신청서요. 하지만 여전히 자료는 불완전했어요. 저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고아원으로 되돌려졌는데 전체 파일을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위탁 어머니 말에 의하면, 고아원에서 전화를 해서 저를 다시 보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미국인 가족이 2살짜리 여자 아이를 찾고 있으니 제가 미국에 가면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했대요. ... 국내 입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로 여겨지는 유일한 것은 돈이에요. 당시 국제 입양이 더 수입이 많았고, 저는 입양 가능했으니까요.

온전하고 정확한 파일은 입양인에게 매우 중요해요.

이런 파일과 대답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문제예요. 바로 제공되어야 하는 대답을 듣는 데에 6개월에서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 제 파일은 완전히 거짓이에요. 파일은 입양인이 자신의 과거와 연결되고 원하는 경우 친생 가족을 찾는 데에 필수적이죠. 그나마 가진 적은 정보마저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을 수 있나요? 이는 '기록이 왜 모두 조작인가', '무엇이 숨겨졌나'라는 질문으로 이어지죠. 게다가 제 고아원의 부패도 입증됐어요. 사기, 횡령 등으로 기소 과정에 있어요. 대대로 이어진 가족 운영 고아원이예요. 새로운 일도 아니죠... 제 파일이 완전히 허위이기 때문에 정보도 조작됐어요. 게다가 제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실질적 증거를 찾아내니까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가 아버지에게 연락하는 걸 금지했고, 저는 접근권을 얻기 위해 친자 확인 소송을 해야 했어요." (사례: I)

J는 자신의 기록에 접한 경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는 입양기록이 전부 가짜이기 때문에 의미를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는 입양기관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비판했다.

“처음 입양 기록을 보았을 때가 87년이었어요. ... 그리고 2년 전에 OOOOOOO의 기록을 보았는데 실제 제 이름이 아닌 이름이 있었어요.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 빈칸에 아무 이름이나 적어넣는 식이었지요. 그런 식으로 이름을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OOO이었어요. 제가 출입국 보호소에 구금돼 있을 때 그 이름을 계속 불렀어요. 저는 그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데 말이지요. 나중에 OOO이라고 불러서 그 이름이 저를 부르는 거란 걸 알았어요. 그때까지 그런 이름으로 한번도 불려본 적이 없어요. OOOOOOO에서 설명하길, 내가 버려진 아기였기 때문에 서류 작업상 이름을 적어 넣어야 했대요.

그들은 생일도 적어 넣었어요. I-600 신청을 위한 서류작업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 이름을 만들어 넣어야 했대요. OOOOOOOO가 서류를 만들었고 서류의 빈칸을 채운 거죠.

입양 기록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들은 전부 진짜가 아니에요. 그들 마음대로 써넣은 거예요. ... 정부가 자신들의 선전을 위해 한 일이라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은 그 이후로도 꼭 계속되어 왔어요. 아마도 1950년대부터 꼭 한국에서 입양 또는 유괴가 자행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 내가 가진 기록 그것이 내게 국적을 증명해주지 못해요. 난 국적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 정말 나는 OOOOOOOO는 문을 닫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OOOOOOOO는 돈이 되는 사업을 해왔는데, 그게 한국 정부뿐 아니라 미국 정부에게도 돈이 되었어요. ... 그 일을 하도록 내버려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죠. 2000년에 클린턴이 18세 이하 입양인 시민권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하지만 어른이 된 입양인들은 제외됐어요. 뿐만 아니라 국외로 추방당하고 있어요. ... 우리는 어릴 때 이 나라에 적응하면서 정서적, 정신적 문제를 겪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한국인이라고 느낄 수 없어요. 우리 몸에 한국인의 피가 흐르지 몰라도 이 나라, 미국에 뿌리내리고 있는 한 한국은 결코 내 나라가 될 수 없어요. 정말로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사례: J)

기록의 왜곡은 인권침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J의 언급은 해외입양 자체가 인권침해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어떤 권리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존재를 부정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빈칸을 마음대로 채웠다면 국제 입양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겠죠. 그들은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아이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미국 대사관에서는 1964년, 1965년, 아니면 1970년대에 만들어진 법률에 의거해 ‘아 버려진 고아들입니다’ 하고 말했겠죠. 입양법과 I-600이 있었어요. 우리는 침해당한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성인임에도 투표할 수 없어요. 이 나라에 세금을 냈는데 수당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이렇게 권리를 침해 받지 않았겠지요. 입양 당시 3개월 된 아이였는데, 미국에서 태어난 누구도 그렇게 부당하게 대우받지는 못할 거예요. 네, 우리는 침해를 당했어요.” (사례: J)

## ⑤ 불명확한 입양과정 혹은 제3자에 의한 입양

입양절차는 입양의뢰된 아동을 입양부모에게 인계되는 과정이 합법적이고 명료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사례 B의 경우를 보더라도 입양아동이 입양부모에게 인계되는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그는 2년이라는 시간의 공백기간이 왜 발생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에 따르면 입양부모에게 인계된 시기와 법적으로 입양가족의 구성원으로 결정된 시기가 일치하

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면 입양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었을까라는 것이다.

“이유는 모릅니다. ... 법적으로 입양부모님의 딸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제가 그들과 같이 살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 아직 제 부모도 아니었던 사람들에게 2년 동안 저를 넘기다니요? 합법적 입양은 없었어요.

저는 제 입양이 개인입양 같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양부모님은 퀘벡의 입양기관들을 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양사후서비스는 없었습니다.” (사례: B)

부모의 동의 없이 당시 사회적인 통념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제3자의 거짓으로 입양기관으로 가게 된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C의 경우를 보면 가족찾기 과정에서 어머니가 ‘사산’한 것으로 기억했던 아이가 본인이었다는 것이다.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7년을 살아야만 했던 그들의 과거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으며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하지만 이와 관련된 누구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네덜란드에 당신의 아들일 수도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대요. 어머니는 ‘난 아들이 없다, 내 아들은 여기 있다, 난 다른 아들은 없다’고 하셨대요. ... 순간 사산한 일이 떠올랐대요. 그래서 모든 이야기가 밝혀지게 된 거죠. ...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어요.

저는 어머니가 강요에 의해 억지로 입양 보냈다고 생각했었어요.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저를 포기한 게 아니라는 말을 듣고 한편 안도감이 들었어요.” (사례: C)

E는 신분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그에게 접했던 기록은 그와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과정으로 입양이 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다. 그러나 그의 증언에 따르면 입양인 사회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다. 기록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대체해서 살아간다는 느낌에 대해 언급하는 그의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입양인 사회에는 생년월일에 대한 정보, 출생지에 대한 정보 등 아무런 정보가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는 저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에는 엄청난 양의 정보와 수 많은 서류를 갖고 있고, 가족찾기와 재회가 신속히 진행되면서 매우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시작 지점으로 돌아왔고 어떤 면에서는 갖고 있는 자료는 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더 안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면서 이민서류와 시민권이 정확인지 확인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000씨는 대체 누구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 제 서류를 갖고 저와 같이 거짓 신원정

보로 미국에 왔을까요? ... 확실히 미국은 문서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확인하지 않은 채 사실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의 실제 생년월일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사회보장번호를 등록해야 하거나 결혼 후 성을 바꿨을 때 제 생일을 1982년 8월 22일로 제출해야 해서 항상 심리적으로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의 신분을 사용한다고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의 정보를 사용한다는 것이 좋은 느낌은 아닙니다.” (사례: E)

J는 자신의 입양과정이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파일을 보니 국적 획득에 대한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백인과 한국인의 혼혈이라고 적어 놨더라고요. 부모님이 그 해 동안 돈을 지불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 돈은 뭐냐고 그에게 물었죠. 그에 따르면 아기 돌봄 비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육원 출신인데 무슨 말이나 하니까, ‘나는 그게 무슨 돈인지, 왜 보낸 건지 모르겠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를 만났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제가 영아 유괴를 당한 것 같다. 내 서류에 유괴의 징후가 보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출산 때 제 어머니에게 아이가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OO가 나서서 저를 미국 가정에 팔아넘겼다는 거죠. 기록을 입수하고 나서 출입국 관련 변호사이자 ... 제가 유괴되었다는 걸 알려줬어요. 저를 혼혈 아동이라고 기재했고요. 혼혈 아동이기 때문에 양부모님이 더 돈을 지불했던 것 같아요. ... 그들이 한 짓은 변함없어요. 그들은 알고도 의도적으로 그런 짓을 저질렀어요. OOOOOOO는 사람을 골라 유괴했어요. ... 우리가 미국으로 팔려갔다는 거예요. 정부도 알고 있어요. 당시 사람들은 돈을 받고 있었어요. 일종의 아기 판매 사업인 거죠. 누군가의 아이를 데려가서 값을 붙여 OOOOOOO를 통해 팔아 넘기는 거죠.” (사례: J)

## ⑥ 성장과정: 입양가족과의 관계 및 사후관리의 부재

과거 해외입양절차는 입양아동이 입양부모에게 인계되면 완료된 것으로 간주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입양아동이 입양가정에 잘 적응하며 성장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들의 삶은 전적으로 입양가정의 환경, 특히 입양부모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존재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삶은 어떤 부모를 만났는가에 따라 다른 경로를 겪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한 경우도 많지만 폭력적 환경에서 성장한 경우도 있다. 이 이유로 해외입양을 비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내의 상황에서도 가정폭력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발

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에 노출된 경우는 해외입양이 전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양절차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하여 성장하는지에 대한 관리체계가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지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입양제도가 아동의 최우선의 이익을 고려한다면 단지가정결연이 되는 것으로만 종결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사례 B의 경우 이미 많이 성장한 경우였기 때문에 낯선 국가에서의 적응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입양기관이나 국가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후관리는 절차상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폭력적 환경에 직면했다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국가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만약 관리체계가 작동했다면 폭력에 놓였던 그의 성장과정은 다른 경로가 열리지 않았을까? 이러한 가정은 해외입양 구조에서 모두에게 해당된다.

“같은 시기에 어머니의 알코올 중독도 시작돼서, 저는 상충되는 감정에 시달렸어요. 왜냐면, 저는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사랑했는데 어머니가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매우 폭력적으로 변했기 때문이에요. ... 어머니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많은 짓을 저질렀어요. 가끔 아버지가 어머니로부터 저를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집에 없기 시작한 초기에는 아버지가 저를 학대했고, 어머니는 그 사실을 몰랐죠. 심지어는 아버지 자녀나 다른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도 그 사람들이 가고 나면 저를 다시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그분들은 제 부모였고 청소년기까지는 관계가 유지됐지만, 성인이 된 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우울증에 걸린 이유는 그분들 때문에, 그분들의 학대와 어머니의 폭력 때문이에요.” (사례: B)

위 사례 B의 경우 역시 그렇지만 C 역시 불안정한 성장과정을 겪었음을 고백하고 있는데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한다는 입양의 목적과는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과잉행동장애를 진단받았지만 어떤 치료도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어릴 적 겪었다고 생각되는 문제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 13살 때 행동과학관들로부터 진단을 받았는데, 전반적 진단은 ADHD와 매우 관련이 높다는 거였어요. 부모님은 그에 대해 어떤 대처도 하지 않았고 저는 처방이나 치료를 전혀 받지 못했어요. ... 백인이 표준인 동네에서 괴롭힘을 상당히 많이 당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 늘 ‘제 자리를 찾는 것’이 어려웠어요. ... 집착한 이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게 미안할 필요 없다, 나는 동정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밖으로 보이기 위한 것이었죠. 어릴 적, ‘입양아라니 가엾구나. 한국의 네 부모가 널 돌보지 못해 참 안됐구나. 백인 네덜란드 부모님이 너를 구해준 걸 아주 고맙게 생각해야 해.’ 하고 말했던 사람들과 나를 괴롭혔던 패거리들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 그걸 내려놓고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했죠. 역사는 늘 제게 매우 흥미로운 것이었는데, 아마도 제 개인의 역사를 잘 알지 못했

기 때문에 뭔가 미시적인 차원에 끌린 게 아닌가 생각해요. 자신의 역사를 모르니 미시사에 더 관심이 간 거죠.

제 양부모님, 특히 양어머니는 '정상성'을 지향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약간의 정신적 문제도 있었어요. 그분의 행동은, ...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죠. 문제가 있어도 얘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다른 곳에 두면 문제가 풀린다는 식이에요. 그래서 양부모님은 제 ADHD 문제에 대해 어떤 대처도 하지 않았어요. ... 부모님은 다른 사람들 눈에 본인들이 어떻게 보일지 아주 민감했어요. 하지만 이미 한국에서 온 아시아계 남자 아이를 기르기로 본인들이 선택한 상황이었어요. 그것이 제 양육에 문제가 됐어요. ... 근데 제 부모는 백인이고 나는 한국인 아이예요. 사람들이 쳐다보는 건 당연하잖아요.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이 저와 가족에 대해 나쁘게 보지 않는 것을 매우 중요시했어요. 그것이 제 인생의 큰 문제였어요. 부모님이 제가 진단받은 ADHD에 대해 전혀 대처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례: C)

성장과정에 대해 어려움을 증언하고 있는 C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적응하지 못한 측면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힘들었어요. 제 태생 때문에, 피부색과 눈 때문에 많은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 때문에 상당히 호전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고, 화가 많이 쌓였어요. 지금도 여전히 가끔 화가 나요. 십대 시절에 대해 좋은 기억이 없어요. 무감각해지기 위해 술도 많이 마시고 마리화나도 많이 피웠어요. 학교 생활에 성실하지 못했어요. 모든 것에 반항했는데, 항상 세상과 대립한다고 느껴졌어요. 세상을 향해 화를 냈어요. 모든 사람에게 화가 났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사랑받고 싶고 소중히 여겨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모든 것들을 내 스스로 밀어내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너무 잔인하고 못됐어요. 제 외모 때문에 항상 남보다 더 튀어 보이고 쉽게 눈에 띈다는 느낌을 가졌어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눈에 띈다는 이유로 비난은 늘 저에게 쏟아졌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치료를 받았는데 도움이 됐어요. ... 항상 눈에 띄는 존재였죠. 암스테르담에 갔을 때 사람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익명성'을 얻을 수 있었고 한국에 살 때도 마찬가지였죠. 잠시 한국에 살았던 게 아주 힐링이 되는 경험이었어요. 모두 제 인생 후반기에 일어난 일이에요.” (사례: C)

해외입양인의 성장과정에서 겪게 되는 상황은 사례 B의 경우와 같이 성적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언론보도를 통해 접할 수 있었던 사실을 그는 증언하고 있다. 성인과 아동의 힘의 기울어진 관계에서 더욱이 낮은 공간에서 자신을 받아들여 준 입양부모의 권력은 막강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던 그들의 행위를 거부하지 못한 그를 탓할 수 없다는 것 역시 자명하다. 새로운 가족

을 찾아 이역만리를 건너왔지만 결국 혼자 남겨지는 것의 연속일 뿐이었다.

“아버지가 한 짓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고 아버지가 한 짓이 나쁘다는 걸 제가 안다는 사실을 아버지가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제게 매우 화를 냈고 우리는 서로를 보고 싶어하지 않았어요.” (사례: B)

B의 경우는 어느 정도 성장한 상태에서 입양을 갔기 때문에 그가 한국어를 잃어버린 과정을 보면 타국에서 적응하며 살아야 했던 상황을 추정할 수 있다. 외국인, 아시아에서 온 아동이라는 지위의 차별적인 상황에서 최소한 그들과 섞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국어 구사능력을 포기해야 했던 것이다. 다시 한국어를 구사하기 위한 노력을 해보았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다른 애들이 놀리는 게 싫어서 한국어를 쓰지 않았어요. 하루는 학교에 한국어 동화책을 가져갔어요. 제가 다른 언어로 읽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죠. 그런데, 애들이 모두 저를 비웃었어요. ... 더는 한국어를 말하지 못하고,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어를 다시 배워보려고 시도할 때마다 실패했는데, ... 모국어를 다시 습득하기는 매우 힘겹네요.” (사례: B)

낮선 곳, 더욱이 차별의 대상이 되었던 용모를 지니고 있는 상황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는 과정의 어려움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까?

“아시아인은 본 적 없어요. 캐나다로 이주한 지 2년째 되던 해에 학교에 베트남인이 있었는데 저는 그 애와 제가 매우 부끄러웠어요. ... 잠자리에 들 때마다 손목을 긋는 상상을 했어요. 실행에 옮기진 않았지만 제가 ‘중국인’이어서 더럽다고 느꼈거든요. 제 안에 있는 모든 ‘중국인’을 빼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캐나다로 이주한 지 2년째 되던 해에 어머니가 얼굴 리프팅 수술을 받았는데, 그 때 저는 성형 수술을 받아서 찢어진 눈과 납작한 코를 왜 제거할 수 없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머니는 모두가 찢어진 눈을 좋아한다고 말했지만 저는 싫었어요. 학교에서는 항상 친구가 한 반에 한 명씩밖에 없었는데, 항상 같은 이유로 헤어졌어요. 중학교 4-5학년 때는 친구가 전혀 없었죠. 하지만 친구가 있었다고 해도 저는 항상 외로웠어요. 팀 과제를 할 때에도 저는 같이 할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타인에게 다가가 팀에 낄 수 없냐고 물어보지 못했어요. 학교 밖에서도 친구가 없었어요. 처음 3년간은 동네 아이들과 놀았지만 중학교에 간 후로는 항상 자정까지 공부만 했어요. 길거리의 모르는 남자 몇 명이 저를 위협했기 때문에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제 아시아인 눈 때문에 저를 해치려고 했어

요. 어머니는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일은 항상 무시하기 때문에 어머니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대처 방법은 그저 밖에 나가지 않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집에만 있는 것이 불편했어요.” (사례: B)

위와 같은 차별적 상황은 D의 경우에서도 발견된다. D는 백인동네에서 살았던 것이 불쾌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는데, 이는 이데올로기에 기초하여 동양사회에 대한 비하와 동양인의 사회적 낙인, 이념적 편견에 의해 차별이 일상적이었던 당시 상황을 회상하였다.

“백인 세상에 혼자 동양인으로 살면 당연히 꼬리표가 붙고 놀림거리나 편견의 표적이 되기 마련입니다. 백인 세상에 살면서 정체성의 위기를 겪지 않은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 누구와도 동질감을 느낄 수 없는 세상에 사는 겁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생존모드로 살면서 그냥 그런 생각을 안 하기로 마음 먹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제가 캘리포니아로 가서 다른 동양인들을 만나면서 또다시 정체성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누구인 거죠? 항상 제 자신을 검은 머리에 걸어서 백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캘리포니아주에 오니 모든 사람이 저를 동양인으로 보았습니다. 그 부분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백인으로 보지 않고 동양인으로 본 것이 정체성 위기가 찾아온 계기였습니다. 동양인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중서부 지역에는 많은 백인들이 베트남전쟁에 참전하면서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후 수많은 백인이 아시아인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제가 베트남 사람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아빠가 너 같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셨어’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너 같은 chink(동양인 비하 표현)는 다 똑같아’라든지 동양인을 향한 백인의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자에 대해서는 아시아 여자는 매춘부이거나 성적으로 노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이 모든 편견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디서 찾은 걸까요? … 그저 동양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편견들이 심했습니다. 어렸을 때 ‘눈이 작아서 보이긴 하니?’와 같이 멍청한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 한 아이가 항상 ‘너는 분명히 북한 공산당원이야’라고 했던 게 기억납니다. 그들은 공산당을 두려워했죠.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사는 지역을 영원히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 이런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이 텔레비전과 영화에서 나온 것입니다. K-POP과 드라마가 미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지만 중서부 지역에 있는 작은 도시에 가면 백인 문화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 작은 도시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사례: D)

과거 입양절차에서 사후관리 측면의 과정은 없었다는 사실은 입양인과의 인터뷰에서 충분히 드러난다. B는 전혀 없었다고 말하고 있고, C 역시 성장과정에서 사후관리는 입양국에서도 부재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다만 C는 해당 입양국가의 경우 90년도 이후 의무화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나 입양기관 역시 연락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D의 경우 양어머니의 폭력에 종종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기관의 사후서비스는 없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입양기관이 방문했던 다른 입양인의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입양기관의 사후관리는 부재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입양기관은 물론 두말할 필요 없이 입양절차에서 사후관리에 관해 관심 자체를 두지 않았다.

“전혀 없었어요. 우리가 캐나다로 이주한 후에는 미국이나 한국에서 전혀 연락이 없었습니다.” (사례: B)

“90년도에 사후관리가 의무화되었지만 제가 입양되었을 때는 없었어요. … 사후 관리는 없었어요. 당시에는 의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례: C)

“가족 또는 집을 방문 해야 하는데 한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 다른 입양인들에게 물어봤더니 집에 와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했던 게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한번도 그런 사람과 얘기해보지 못했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무엇인가 부족합니다. 분명히 무엇인가 부족합니다.

만약에 입양사후관리 담당자가 있었고, 부모님 집을 방문했다면 제 몸에 있는 시퍼런 멍 자국을 봤을 겁니다. 학대의 실체를 봤을 겁니다. 저의 불행함을 봤을 겁니다. 하지만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후관리가 없었고, 어떻게 이 상황을 못 봤을까요? 저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사례: D)

반면 입양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E의 경우를 보면 입양가족의 태도에 따라 다르게 경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그 역시 입양기관이 직접 방문하거나 제공한 사후관리는 없었던 것이다. 특히 한국 정부나 한국의 입양기관의 사후관리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미국기관에서는 실제로 입양 이후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는 다른 입양인의 경험을 보고 비교해 봤습니다. 특히 1980년대에는 입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입양 사후서비스는 흔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참여했던 멘토 프로그램 같은 다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한국 입양인이 제 멘토가 되어주었고, 후에는 제가 한국인 입양인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십대와 어린이가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매년 어린이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을 통해 입양된 아이들 중 미네소타 주에 있는 입양인 가족들이 참여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신적이거나 심리적 건강에 대한 지원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가족이 직접 부담해야 했습니다. 입양인과 입양가족을 위한 표면적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접 방문하지는 않았습니다. 입양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는 사회복지사가 집에 방문한 기억이 없습니다. 저희 가족에 제한적으로 관여한 것 같습니다.

최근 십 년 동안에는 한국정부가 입양인 사회에 조금 더 활동적으로 관여하는 것 같습니다. 해외입양인연대와 정부가 같이 일하면서 협력하는 상황이 많아졌습니다. ... 최근 입양인에게 무언가 보내려고 하는 노력이 더 보이는 것 같습니다. ... 그들만의 방법으로 입양인 사회에 손을 내밀었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엔젤레스 영사관은 다양한 입양인 단체와 협력 단체를 불러서 여러 행사를 개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 입양인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작은 노력들을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 제가 이해하기로 한국정부는 저의 입양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저도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사례: E)

E는 입양부모의 적극적인 성격과 입양인이 많은 지역적 환경에서 성장하였다고 말했다. 다른 입양인과 달리 입양기관에 의한 사후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렇기에 그의 성장과정은 입양가족과 상대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입양은 단순히 입양가족에게 인계된 것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닌 생애과정에서 지속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도착했을 때는 태어난지 3개월 후였습니다. ... 어린 시절 양부모님의 사고방식은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가족이 한국 입양인공동체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미네소타에서 자라면 ‘입양인이 넘쳐나는 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미네소타에는 수천명의 입양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네소타 입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입양 사후서비스인 어린이 모임, 입양기관과 상관없는 한국문화캠프에 항상 참가했습니다. ... 자원이 한정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미국에 와서 가족의 일원이 되고 동화되기를 기대하신 것 같습니다. 입양가족의 구성원은 독특한데요, 제 가족은 혼합가족입니다. 부모님께서 재혼 전에 데려오신 친자녀 2명이 있습니다. 저의 언니인 엄마의 친딸, 그리고 저의 오빠인 아빠의 친아들이 있습니다. 기혼이었던 부모님께서 이혼하신 후에 만나서 결혼하셨습니다. 불임 문제로 아이를 가질 수 없으셨습니다. 결혼하신 후에 제가 먼저 입양되었고,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여동생 역시 한국에서 입양되어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례: E)

E는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입양가족과 전반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생활하고 있다고 하였다.

“어린 시절부터 전체적으로 가족과 가깝게 지냈습니다. 백인 공동체와 대다수가 백인인 가족에서 사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부모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었고 동료 입양인을 만날 수 있었으며,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최선을 다하셨다고 생각합니다. ... 제한적인 자원으로 최선을 다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사례: E)

D는 입양가족과의 관계가 쉽지 않다는 점을 언급했다. 양어머니의 극단적 성격은 배제하더라도 백인 아동을 원했던 것과 달리 아시아 아동, 더욱이 이미 많이 자란 아동을 입양하였기 때문에 관계 형성은 쉬운 상황이 아니었다. ‘널 원한 적이 없어’라는 말을 들은 입양인의 심리는 어떠한지 상상할 수 없다. 입양가족에게 그 말을 듣는다면 친생가족과 고국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더욱 확증되는 것은 아닐까? 더욱이 그는 가정의 환경적 조건은 폭력적 성향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양어머니와 친밀감을 단 한번 느껴본 적이 없이 성장하였다고 고백하였다. 입양기관에서는 ‘종교’를 근거로 ‘좋은’ 입양가정이라고 전제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는 전적으로 낯선 이국땅에 홀로 남겨진 입양아동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양어머니와는 너무 힘든 관계라서 ... 더 이상 양어머니와 얘기하지 않는 게 제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마 양아버지가 안정적인 부모님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었던 때도 있었죠. 제 말은 항상 최고의 아버지는 아니셨지만 매우 안정적이고 일관적이셨습니다. 그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 부모님은, 특히 양어머니는 입양기록에 대해 솔직하지 않았습니니다. 저한테 숨기려 하셨습니다. 모든 기록을 숨기려고 하셨는데 양아버지가 어쩌다가 찾으셨습니다. 제가 엄마에게 물어봤을 때는 잃어버렸다고 하셨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기본적으로 제 입양기록을 태우려 하셨습니다. 입양기록뿐만 아니라 입양기관과 주고받은 편지, 어머니의 적성검사와 거절편지, 그리고 Lutheran Social Service(LSS)에 보낸 편지를 감추려 했습니다. ... OOOOOOO에서 보낸 거절편지가 있습니다. 엄마는 본인만의 이상적인 생각이 있었고, 저에게 ‘우리는 너를 원한 게 아니라 금발머리와 파란 눈을 가진 아이를 원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금발과 파란 눈을 가진 아이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 본인을 닮고 싶어하는 금발과 파란 눈을 가진 아이를 상상하셨지만 5살에서 6살로 넘어가는 제가 왔죠. 저는 이미 어느 정도 형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형성되었냐 하면, 고아원에서 사는 방식으로 형성되었죠. 저는 벌써 독립적이었습니다. ... 잘 따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닮고 싶지 않았습니다. ... 얼마나 극단적이셨냐 하면 뭔가 원하는 것을 시간 안에 하지 않으면 말로 하거나 대화를 시도하지 않고 폭력적이게 주먹으로 치거나 때리면서 ... 목소리가 가장 크고 주먹이 제일 센 사람이 이겼습니다. 그게 소통하는 방법이었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입양과정을 보면 OOOOOOO는 이미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거나 인지했습니다. ... 2번은 거절당했고, 마지막으로 3번째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LSS에서 양어머니가 실제로는 정말 착하고 좋은 분이라는 화려한 추천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OOOOOOO는 양어머니가 기독교인이고 신앙이 배경에 있다면 아이를 입양하게 해주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좋은 부모님이 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종교만이 기준이 된 거죠. ... 입양을 허락한 이유가 단지 신앙적 배경을 보고 결정한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해주신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아침식사는 항상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전혀 어머니 역할을 하지 않

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감정 기복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 거슬리기만 하면 때렸습니다. 폭력적으로 대하셨습니다. 이건 평범하지 않아요. ... 아시다시피 어머니와 OOOOOOOO는 교류가 많았었는데,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죠? 제 말은 OOOOOOOO에서 서류를 보고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사례: D)

결과적으로 D가 혼자 살아가고 있는 이유를 관계맺기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지적인 이면을 보면 입양가족의 관계가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한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저는 입양인으로서 많은 문제를 겪어 봤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인간관계가 가장 다루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고 건강한 관계를 갖기가 힘들었습니다. 저의 불안함이 관계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장기간 연애했던 적이 몇 번 있었지만 끝내 잘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난다면 성숙하고 어른스럽게 저의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을 원하지만 그런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혼자이고 아마 혼자 살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아서는 아마 평생 혼자일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불안정하다면 저의 짐과 그 사람의 짐을 같이 지고 싶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문제들을 나누고, 제 문제도 나누고, 또 함께 겪는 문제가 더해지면 건강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례: D)

E의 가족은 본인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과정이나 가족찾기를 지지해주는 입장이었다고 증언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기록을 갖고 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입양서류를 갖고 있으며 제가 읽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언제나 원하면 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알았습니다. 입양부모님께서는 입양에 대해서 항상 개방적이고 투명하셨습니다. 인종이 다른 가정에 살아서 입양되었다는 것이 당연하긴 했지만 입양 정보를 공유해주시고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데에 있어서 항상 최선을 다해 도와주셨습니다. 엄마는 저희의 입양기관에 자원하여 꽤 활동적으로 다양한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다양한 단체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살았을 때 확실히 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1년만 지내려고 했던 게 더 길어지면서 제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까 봐 부모님 나름의 방식으로 걱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인지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국 친어머니와의 만남을 보셨습니다. 제가 재회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어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전자검사 결과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셨을 때는 그 상황을 이해하고 경험하실 수 있는 만큼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입양정보가 잘못되었고,

정확하지 않다는 내용을 다 알게 되셨습니다. 특히 엄마는 입양시스템이 얼마나 부패했고 해외입양에 대한 인권 문제의 역사가 어땠는지를 더 깊이 깨닫고 이해하시려고 한 것 같습니다.” (사례: E)

F와 입양부모의 관계는 폭력적이었다. 그의 양아버지는 성폭력을 일삼았고, 그에 대한 양어머니의 반응은 F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였다.

“폭력적이었어요. 폭력적인 관계였어요. 입양된 후 4년 동안 입양아버지가 저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했어요. 동생이 목격자였죠. 17살 때 집을 나와서 사회복지사에게 도움을 청했고, 집에서 일어난 일을 말했어요. 그 후 저는 정부보호시설, 쉼터로 보내졌어요. 18살 때 입양아버지를 성추행, 성적 학대, 성폭행으로 고소했어요. 입양어머니와 동생은 둘 다 제 주장에 반대되는 증언을 했어요. 저는 입양아버지가 동생도 성추행했다고 생각해요. 입양어머니는 제 뺨을 때리며 제가 당신 남편을 유혹했다고 말했어요.” (사례: F)

F는 입양기관의 사후관리는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딱 한 번 우리를 방문하러 왔어요. 입양된 지 한 달 후예요. 방문 전에, 입양부모님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 시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아원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했어요. 그게 다였어요.” (사례: F)

I 역시 입양 후 1년 안에 두 번의 방문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렇지만 이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입양 후 사후관리로는 입양 후 1년 안에 2번의 방문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결코 충분하지 않았어요. 나이가 더 든 후에 어머니에게 그 얘기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어머니는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지도 못했어요. 더 많은 상담이 있어야 했어요. 사랑은 모든 걸 극복하지 못하고, 제 경우엔 충분하지 않았어요.” (사례: I)

G는 입양부모와의 관계가 처음에는 좋지 않았다고 하였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입양부모가 가졌던 입양에 대한 인식이 그들과 달랐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처음엔 그리 좋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양부모님은 우리를 그냥 스위스 아이들, 자신들이 낳은 아이들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부모님과 이주의 경험들을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물론 부모님은 백인이고 우리가 겪은 학대나 차별 같은 게 뭔지 잘 모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곳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형 때문에 더 힘들었는데, 스위스에 잘 적응하지 못했어요. 초기부터 형은 말 안 듣고 술 마시고 마약도 했어요. 아마도 트라우마 같은 것들을 스스로 해소하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형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지자 부모님은 입양 초부터 그를 보육원 같은 곳에 보냈어요. 물론 저에게도 힘든 일이었어요.

양부모님은 별로 교육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저 우리를 보통의 아이들처럼 대하라는 말만 들었죠. 부모님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게다가 우리를 잃게 되거나 누군가 와서 우리를 한국으로 데리고 갈 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죠. 그것이 관계를 좀 어렵게 만들었어요. 부모님은 한국이나 입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우리가 자라는 동안 그건 일종의 금기였어요. 관계에 전혀 도움이 안 됐죠. 예를 들어, 제가 한국 학교에 갔을 때 양부모님 몰래 갔어요. 분명 허락하지 않을 게 뻔했기 때문이에요. 저에겐 개인적인 이유로 아주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처음 한국에 갔을 때도 양부모님 몰래 간 거예요. 하지만 상황이 전체적으로 변했어요. 요즘은 받아들이는 분위기예요. 아니면 자식을 잃지 않을 거란 확신이 드신 거죠. 말씀드렸듯이, 아이들과 대화할 때는 입양과 태어난 나라에 대한 얘기가 포함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또 친가족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게 정상이어야 해요. 하지만 제 가족은 말씀드렸듯이 그걸 알만큼 충분히 교육받지 못했어요.” (사례: G)

G 역시 입양 사후관리는 없었다고 하였다. 입양이 이루어지면 입양절차는 완료되는 것이라는 인식은 입양 송출국과 수령국의 공통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입양 사후관리 같은 건 없었어요. ... 많은 수의 입양인들엔 어떤 증상이 있어요. 저처럼 PTSD,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거나, 아니면 형처럼 막 나가는 거죠. 그들은 시스템에 대항하려고 해요. 자신도 왜 그러는지 모르면서. 하지만 저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변화된 문화, 언어 등 모든 새로운 것에 적응하려다 보니 너무 벅찬 거죠. 더구나 아이에 대해, 입양에 대해, 그리고 입양되었을 때 아이가 겪는 일, 아이에게 실제 필요한 것 등에 무지한 매우 보수적인 집안이라면 더욱 그럴 것 같아요. 요즘은 인터넷이나 책에 그런 정보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때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게다가 입양 기관에서 하는 소리는 ‘그냥 당신 자식처럼 기르면 된다’였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그렇게 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 양부모 같은 분들은 차라리 입양하지 않았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 어

“똥 분들은 입양에 대해 정보도 얻고 책도 찾아봐요. 아이들 입장에서 삶이 더 수월해지는 방법이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최선의 방법은 애초에 입양을 막는 거예요. 왜냐면 다수의 입양아들이 실제 고아가 아니거든요. 그들은 원래 부모가 있어요. 시작부터 엄청난 거짓말이 있어요. 스위스에서 그런 서비스는 없었어요. ‘입양이 이루어지면 모두 끝난다’고 말했어요. 자기들은 더 이상 책임이 없다는 식이죠.” (사례: G)

성장과정에서 겪은 인종차별은 쉽지 않은 환경이었다. H의 경우는 혼혈인이라는 점에서 한국에서도 차별적 상황에 노출되었다는 점을 얘기했다.

“마을과 시내에서 당시 유일한 아시아인이었기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인종주의와 차별과 관련해서 좋지 않은 일들을 겪었죠. 학교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제 생각엔 당시 스위스는 압도적으로 백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사들도 인종차별에 대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이탈리아나 헝가리에서 온 이민자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유럽인들이었으니까요.” (사례: G)

“학교에서는 인종 차별을 겪었어요. 저를 괴롭히려는 애들과 싸운 적도 있고요. 제가 한국계 혼혈인데 애들은 저를 라틴계나 멕시코인으로 생각하고 인종 차별적 발언을 했어요. 또 어떨 때는 아시아인을 비방하는 말을 하고요, 그런 일들을 겪어야 했어요. 웃긴 건 미국에서는 저를 백인으로 보지 않는데, 한국에서는 제가 혼혈이니까 저를 보고는 백인같다고 해요. 미국에서는 저에게 백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말이죠. 성인이 되어서도 차별을 겪어야 했어요. 미국에서 인종 차별을 당했죠. 성인이 되셔도요. 저더러 ‘멕시코 같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나 중앙아메리카에서 왔으니까 미국에 속하지 않는다, 미국에 있는 건 불법이고 미국은 너를 원하지 않으니 네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어요. ‘미국인이 아니다, 중남미에서 왔지 않느냐, 네가 여기 있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하죠.” (사례: H)

H는 시민권 취득 문제를 보더라도 사후관리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한국에 돌아왔을 때에도 국가는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제가 알기론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했어요. ... 그건 입양 부모와 입양 기관의 책임이에요. 여기 한국의 경우에도, 제가 여기로 온 이후 삶이 힘들었어요. 한국 정부는 제가 이곳에서의 삶에 적응하도록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어요. 직장이나 다른 곳에서의 삶이 힘들어요. ... 한국인들은 때때로 매우 야비하게 저를 대해요.” (사례: H)

만약 사후관리가 있었다면 H에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시민권과 관련해서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사후관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변했을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H의 말은 입양부모와 사후관리의 체계를 모두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 경우 핵심 이슈는 시민권이죠. 시민권 문제를 확인하는 입양 사후서비스가 있었다면, 그들은 직무를 다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직무를 다했다면 저는 시민권을 받았겠지만. ... 그런 서비스가 있었는데는 모르겠지만, 있었다고 해도 차이가 있었을까요? 왜냐면 미 이민국에서 입양부모에게 독촉을 했었던거든요. 두어 번이요. 그런데 입양 부모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로 선택한 거잖아요. 입양 사후서비스가 있어서 사후관리를 하고 시민권 취득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무슨 조치를 취했을지는 모르겠네요.

어떤 결과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입양 부모가 계속 무시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기관의 책임이 어떤 것이고,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할지 전 모르겠어요” (사례: H)

J와 입양부모의 관계는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인종차별의 경험을 겪었고, 이러한 경험은 추방된 입양인이 ‘고국’에 돌아올 수 있도록 활동하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따라서 J의 언급 중 입양인들이 ‘친부모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결코 그들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언술은 엄밀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침을 뱉기도 했어요. ... 돌을 던지기도 했죠. 우리가 집 앞으로 지나가면 개들을 풀어 위협하기도 했어요. 자기네 집 앞 보도로 다니지 말라고요. 우린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어머니는 어린 아이인 우리에게 신이 아담을 창조했다고 말했어요. 땅 위에 흙으로부터 아담을 창조했다고, 그리고 흙은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부모님은 모두가 피부색에 상관없이 평등하다고 했어요. 그것이 부모님이 어린 아이들인 우리에게 진정으로 가르치고 싶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못되게 구는 이웃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아이로서는 힘든 일이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시련을 겪는지도 모른다고요. 매일 저는 추방된 사람들을 다시 데려오고,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한국 정부가 입양인들을 비행기에 태워 고국으로 돌려보내길 기도하고 있어요. 한국은 결코 국제 입양인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비록 친부모를 찾는다 해도 그들의 나라가 아니에요.” (사례: J)

J는 미국의 경우 국내입양과 해외입양의 사후관리가 차이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해외입양인은 어디에서나 외면받는 상황이었다고 고백하였다.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입양한 형제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입양한 5살 난 아이였어요. 그는 어머니와 어머니의 남자친구로부터 학대를 받았어요. 그는 미국인 입양아였어요. 사회 복지사가 늘 그를 관리 했지요. … 해외 입양아들은 어떤 기관에서도 관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본 많은 이들이 학대, 폭력, 성폭력에 시달렸어요. 그들이 어느 연령에 이르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집을 나와 여러 시설들을 전전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들의 인생이 망가져요. 정신적 문제로 고통받지요. 그들은 외상 후 정신 장애에 시달려요. 그들은 사회에 적응하기에 정신적으로 너무 엉망이에요. 입양한 사람조차 그들을 외면해요. 더 이상 귀엽고 이쁘지 않으니 필요없다는 거죠. 하지만 입양 과정 동안 어떤 기관도 해외 입양아들을 보호하지 않아요. 일단 여기 오면 아무도 우리를 챙기지 않아요. 아무도.” (사례: J)

한국정부는 해외입양절차에서 시민권을 획득하였는지 확인도 하지 않았다. 입양인들은 관련 정보를 제공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성장하였던 것이다.

“미국으로 입양된 모든 한국 입양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해요. 모두 입양 과정에서 국적을 부여받았다는 얘길 들었다고요.” (사례: J)

## ⑦ 모국방문 및 가족찾기

많은 입양인은 성장한 이후 한국에 방문한다. 그들의 방문은 한국사회에 해외입양인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각인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해외입양인의 방문은 국가의 진정성 있는 대응이 아닌 일회성 이벤트의 성격이 강하다. 즉 모국방문은 정체성에 대한 궁금증과 가족을 찾기 위한 목적을 함께 지니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국가의 대응은 미미할 뿐이다. 사례 B의 경우를 보더라도 자신이 비용을 지불하여 방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방문하고 싶어도 방문하지 못한다. 이것은 수많은 해외입양인 중 여건이 허락하는 일부만 가족찾기 등을 위한 방문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게 한다. 그렇다면 관리가 부실했던 해외입양절차에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입양인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아버지와 형제자매를 찾는 게 목적이었지만 … 2001년에는 저 혼자 가족을 찾으러 갔고, 가족을 찾았어요. 2년 후에 다시 갔는데, 슬펐기 때문이에요. 웬지는 모르지만 한국에 가면 왜 내가 항상 슬픈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2014년에도 갔는데 계속 한국이 그리웠기 때문이에요. … 그 후에도

다시 가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지금은 제 건강상 이유로 몸에 통증이 심해서 다시 갈 수 있을지” (사례: B)

친생가족을 찾은 이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한국에 가는 것을 결정했다는 C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 그는 힘든 학교생활을 했고 이른바 ‘문제아’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가족을 찾은 이후 삶의 경로를 다시 선택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으로 가는 것이 예상과 달리 너무나 쉬운 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다.

“입양 기관을 통해서였습니다. 그곳에 제가 생물학적 가족과 연락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이메일을 보냈어요. 답변이 없어서 이메일을 다시 보냈는데 일주일 후에 OOO의 사회 복지사란 분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제 어머니로 추정되는 누군가를 찾는 것 같다고요. 우리는 DNA 검사를 했고 그분이 제 어머니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한국에 가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꽤 많은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졌어요. 이후 저는 영업직이나 은행일, 돈 버는 일이 아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전공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블룸폰테인에서 식민 역사를 전공하고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박사 논문을 남겨둔 채 과정만 수료했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돌아갈 때 저는 한국행을 택했습니다. 두바이를 경유할 때, 항공편을 취소하고 한국에 가는 것이 겨우 200달러 정도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갔고 제 가족을 다시 방문했어요. 거기서 2주를 보내고 한국에 머물러야 한다고 느꼈어요. 박사학위를 위해 남아프리카에서 2년 더 있어야 했지만, 저는 한국에서 그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사례: C)

C는 자신의 하던 일을 그만두고 역사를 공부하게 된 경위가 가족찾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주요 계기는 친가족을 찾은 거였어요. 2010년에 역사 공부를 시작했는데 2009년 제 친가족의 존재를 알게 되었어요. 가족들을 만나고 2010년에 과정을 등록했으니까요. 제 인생의 많은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으면서 인생의 전환점이 왔어요. 스스로에게도 솔직해질 수 있었죠. ‘왜 그렇게 영업직에 매달리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는 없어.’, ‘사람들에게 증명할 필요 없어 너 스스로에게 증명해야 해.’ 역사를 공부하며 불의(不義)의 역사에 대해 항상 관심이 있었어요. 분명 제 인생의 가장 큰 불의인 입양이 영향을 준 거겠죠. ‘광주 학살’에 대해 많은 공부를 했고, 해방 이후부터 전쟁이 일어나기까지의 기간(1945~1950)과 ‘제주 4.3 사건’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어요. 저는 남아프리카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예요. 남아프리카의 진실화해위원회(TRC: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와 한국의 진실화해위원회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에 대한 계획서를 아직

도 지니고 있어요. ... 제 여자친구는 '헤이그'에서 일하는데 국제 입양에 대한 상급 정책 입안자로 일해요. ... 사실을 알고 나서 '입양인이었군요. 제가 네덜란드에 있는 입양인들과 함께 일하고 있어요. 국제 입양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는 일을 해요.' 하고 말했어요. 그녀는 의회 위원단에서도 일하고 있는데, 작년에 국가 간 입양에 대한 인권 침해 보고서를 만들기도 했어요. 그 위원단은 네덜란드 의회가 만들었는데 50년대와 80년대 사이에 벌어진 국가 간 입양에 대한 모든 인권 침해와 부정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그녀와 있으면 안도감이 들었어요. 제가 처한 현실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비록 자신은 입양인이 아니지만 제 현실에 대해 잘 알죠.” (사례: C)

한국에 자주 방문했던 이유를 친가족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는 C의 말은 비록 입양부모와 관계가 안좋기 때문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

“아마 10번 넘게 갔을 거예요. 2016년 초에서 2018년 중반까지 2년 반 동안 거기서 살았어요. 처음 갔을 때는 월드컵이 1년 지난 시점인 2003년이었어요. 이후에 상당 기간 가지 않다가 2009년에 처음으로 재방문했어요. 그 시점부터 2009년과 2015년 사이에 1년에 두 번 정도 방문했어요. 2003년에 양부모님과 '뿌리 찾기 여행'의 일환으로 한국에 한 번 더 갔어요. 양부모님과 거기에서 3주 동안 있었어요. 친부모님을 찾았고 그들과 정을 쌓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사례: C)

C의 경우는 친가족을 찾은 이후 정기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인의 한국어 실력이 좀 더 좋았으면 하는 바람을 말하고 있는데, 같은 언어로 소통할 수 있다는 소중함을 엿볼 수 있다.

“한국어 실력이 그다지 좋지 않아 참 안타까워요. 가족들이 영어를 그리 잘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할 수 있고, 저도 한국어를 조금 아니까 그러저럭 통해요. '라인' 메시지를 사용하는데 대화 번역기가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사례: C)

C와 D의 사례를 통해 의사소통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D는 성장한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10년 정도 거주하였다. 이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한국어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말이 갖는 의미를 깊게 생각해 본다면 연장아동으로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한 상태에서 입양을 가게 된 경우에도 모국어를 잊게 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언술에서 갖는 가족에 대한 생각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 살 때는 한국말을 아주 잘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온지 8년이 지난 지금은 한국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한국 입양인이고 한국말을 할 줄 모릅니다. 저는 한국인 친구가 많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과 한국말로 얘기하는 상황은 가게에서 물건을 사거나 주문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말 실력이 1, 2, 아니면 3 단계 정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한국말을 조금씩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실력을 늘리려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례: D)

C는 가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입양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가 다른 사례보다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좋은 분이에요. 처음 뵈었을 때 울기만 하셨어요. 엄청 우셨어요. 2010년 이후 처음 몇 번은 계속 울고 한탄만 하셨어요. ‘왜, 왜, 왜?’와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종일 저를 먹일 궁리를 하셨고, 따뜻한 방바닥에서 같이 자고 싶어했어요. 어머니는 저와의 유대를 다시 만들고 싶어 했어요. 현재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모든 게 밝혀진 건 아니고 아직도 비밀이 많다고 생각해요. 여느 한국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사례: C)

D는 가족찾기를 위해 대사관에 유전자 정보를 등록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찾을 수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 그는 어떤 감정에 휩싸였을까? 국가의 ‘필요’에 의해 해외로 보냈는데 가족을 찾기 위한 입양인의 요구는 관철되지 못하는 현실을 인정할 수 있을까? 국가의 의지가 있다면 현재의 과학기술의 수준으로 충분히 가족과 관련한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로스엔젤레스 한국 대사관을 방문했을 때 유전자를 등록했습니다. 그 후 거기서 아동권리보장원(NCRC)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확인된 결과가 전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망했습니다. 최소한 형제라도 찾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례: D)

또한 D는 가족을 찾기 위해 한국에 방문한 사실 자체가 입양부모, 특히 양어머니가 싫어하셨다는 점을 말했다. 그렇지만 그는 한국에 오랫동안 거주했던 경험도 있고,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2년마다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에 정착하고 싶다는 의사도 밝혔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본인이 살았던 중서부 지역의 작은 도시와 달리 다양성을 인정하는 곳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인종차별로 인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엄청 화가 나셨고, 제가 친가족을 찾아서 양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얘기 할 것을 두려워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본인어머니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이 무서워서 양어머니는 그게 제일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정말 웃기죠.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얘기하겠다고 말했어요. 양어머니는 못된 사람이에요. 엄마는 착한 사람이 아니고 좋은 엄마가 아니에요. 저는 진실이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2년마다 한국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내년 5월에 갈 겁니다. 왜냐면 저는 이중국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권을 재발급받기 위해 내년에 가려고 합니다. 내년에 만료되기 때문에 가야 합니다. 몇 년마다 방문하려 노력하지만 갈 때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몇 주 동안만 방문하면서 확실하게 즐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주로 은행에 가야 합니다. 한국에 가면 주로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휴가보다 출장 같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 2016년, 2018년... 5, 6번 정도 방문했습니다. 주로 한국에 있을 때 일하던 회사에 가서 동료들을 만납니다.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정이 많이 들어서 만나면 반갑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만날 수 있는 한국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어 과외를 해주신 선생님을 뵈러 가족과 살고 계신 제천에 갑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 오كل랜드에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고 한국사람이 아니어도 모든 사람이 한국식 갈비를 알고, 한국 음식을 알며 한국 드라마에 대해 얘기합니다. 한국 페스티벌도 있습니다. 문화적 다양성이 여기에서 살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다시 중서부 지역에 있는 작은 도시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국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은퇴하고 싶습니다. 여기서도 아직 인종차별이 조금씩 남아있고, 그것이 무섭기 때문에 한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한국인을 향한 공격이 많았습니다.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와 같이 매우 부정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문화적으로 매우 다양한 지역이면서 아직도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 정말 무섭습니다.” (사례: D)

D는 가족찾기를 위해 고향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찾아 벽보를 붙이거나 지역 주민들에게 본인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특히 나이가 많았던 분들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호의적이지 않은 반응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매우 이상한 반응을 보이셨고 왜 저에게 화를 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발견되었던 고등학교 바로 건너편에 갔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가족찾기 포스터를 붙였는데, 그 지역은 아주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포스터를 붙이고 환경을 오염시켜서 화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같이 있던 분이 ‘왜 다들 화났는지 모르겠어요’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화가 난 거죠? 질문을 하면 대답도 안 했습니다. 그저 ‘나가, 나가’라고만 했습니다. 통역사가 ‘포스터를 여기 붙여도 될까요?’하면 ‘하지 마세

요. 여기 붙이지 마세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적대감을 그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사례: D)

E는 가족찾기를 목적으로 한국에 방문하였다. 그의 동생은 본인처럼 한국에서 입양되었다. 동생 역시 한국에 있던 자신을 방문하면서 가족찾기를 한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저는 항상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가족을 찾고 싶었습니다. 2006년에 처음으로 한국에 돌아와서 2년을 조금 넘게 살았습니다. 목적은 한국에 살면서 일하고 저에게 매우 중요한 가족 찾기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해외 입양인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해외입양인연대(GOA'L: Global Overseas Adoptees' Link)에 연락하여 입양인 사회와 연결되었습니다. 2008년에 한국을 떠난 후 거의 매년 여름마다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대부분의 여름을 최대한 한국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2011년까지 그렇게 지냈습니다. 2012년에는 해외입양인연대에서 개최하는 '고향으로의 첫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에 참가하였습니다. 저는 이미 한국을 방문했지만 특별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입양인 참가자를 위한 패널과 토론 자리를 함께 준비하고, 가족 찾기를 처음 진행하는 분들을 도왔습니다. 그때 친어머니께 유전자 검사에 대한 결과를 알려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후 2017년이 되기 전까지 한국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듣고 한국과 관련된 아픔이 너무도 많이 남은 후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영어를 가르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한국어도 공부했습니다. ... 지금은 정말 최소한의 한국어만 구사할 수 있고, 읽고 쓰기는 가능합니다.

여동생은 2007년에 저를 보러 한국에 오면서 가족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가족 찾기를 시작하기 위해 저와 같이 입양기관에 갔습니다. 그리고 2019년 한국에 돌아갔을 때 본격적으로 가족 찾기를 다시 이어갔습니다. 입양기관에서는 이미 친어머니를 찾았고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재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친어머니께서 여동생을 만나고 싶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동생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아직도 헤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친가족과 실제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동생은 저보다 17개월 어립니다. 그렇죠. 저희는 나이 터울이 매우 적습니다. 학교에서는 한 학년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친척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에서 입양된 사촌 4명이 있고 인도에서 입양된 친척 1명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가족을 포함하면 저희와 같은 해외입양인이 꽤 많습니다.” (사례: E)

F는 자신의 기억력에 기초하여 어머니와 재회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조부모님은 F가 입양되는걸 원치 않았지만 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입양이 진행되었다고 하였다. 그의 어머니가 입양을 전적으로 원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입양을 원하지 않았던 직계 가족이 존재했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시기상 늦었다는 이유로 해외로 보냈다는 것은 입양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사례인 것이다.

“외조부모님이 살던 곳의 주소와 전화번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재미교포 친구가 있었고, 아버지가 OO대학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서울로 사람을 보내서 찾았는데 아주 쉽게 찾았어요.

조부모님을 찾았고, 그분들과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친어머니와도 얘기하게 됐죠. 처음에는 어머니가 아니라 조부모님을 찾았어요. 그분들이 절 돌봐줬거든요. 제가 어릴 때 그분들과의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프랑스로 떠나기 전에 그분들이 고아원으로 우리를 찾아왔었고, 주말에 우리를 만나러 오기도 했었고, 입양되기 전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말에 우리를 그분들 집으로 데려가기도 했어요. 그분들은 우리가 입양되는 걸 원치 않았고, 우리를 데리고 있고 싶어 했지만, 입양을 취소하거나 무언가를 하기에는 너무 늦었었죠. 비행기가 예약돼 있었어요. 모든 서류작업도 끝났고요. 조부모님이 무언가를 하기엔 너무 늦었던 거죠. 그분들은 2년간 우리를 찾았어요. 어머니를 찾아서 우리가 어디 있는지 물어봤는데, 어머니는 대답해 주지 않았어요.” (사례: F)

G는 가족찾기에 대한 동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첫번째 동기는 우리가 양육된 방식이나 태도 때문이었어요. 입양 초기, 학교에 다닐 때 저는 스위스인처럼 행동하거나 스위스인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애초부터 스위스 정체성이 저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12살 때부터 지역 한인 협회가 운영하는 한국 학교에 다녔고 한국어도 배웠어요. 우리 노래 같은 것도 배웠어요. 한국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잘 아시겠죠. 저에겐 아주 중요한 경험이었어요. 왜냐면 12살부터 저는 스위스에서 자라는 스위스 사람이 아니라 스위스에서 자라는 한국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으니까요. 매일 거울을 보면 한국 사람이 보이니까요. 백인 얼굴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자신을 스위스 백인, 스위스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겠어요? 그걸 알게 된 거죠. 두번째 동기는 친부모를 찾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일찌감치 지역 한인 협회 사람들에게 수소문하고 다녔어요. 친부모를 찾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쳤고 드디어 1994년 친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어요.” (사례: G)

G는 한국에서 해외입양인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의 활동은 상처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었다.

“실제로 1998년에 처음 G.O.A.’L을 창설한 건 에이미 내프저(Amy Nafzger)입니다. 한국으로 돌아 온 한국 입양인들을 위한 일종의 본거지 같은 곳이었죠. 2003년에 그 아이디어를 제가 이어받아 조금 더 발전시킨 겁니다. 저는 우리가 양 방향 이민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입양하는 국가로 이민 가고, 그 다음은 다시 한국으로 이민 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다른 이민자들처럼 지원이 필요해요. 필리핀이나 태국 사람들을 지원하는 센터들이 있어요. 그들을 돕는 사람들도 있고요. 비록 정부가 나선다고 해도 이주민들에게 민간 NGO가 필요한 것처럼 한국 입양인들에게도 비슷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입양인 지원이 어려운 이유는 14개국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문화, 언어 등 모든 것이 달라서 실제로 지원하는 게 훨씬 더 어렵죠. 맞아요, G.O.A.’L에 대한 제 비전은 이주민 지원 시스템처럼 한국 입양인들을 위한 본거지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곳에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9년 일했습니다.

상처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대처의 한 방법이겠죠. 제 경우, 남들을 돕고 지지하는 데서 강한 의지가 생겼어요. 그것이 그 오랜 기간 G.O.A.’L을 운영했던 이유였어요. 사람들을 지원하고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매우 강한 동기였죠. 저는 그렇게 종교적이지 않은, 저는 종교는 있지만 개인적인 영역일 뿐 그걸 내세우고 싶지는 않아요. 무엇을 믿느냐는 저에게 중요치 않아요. 다른 사람을 돕고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례: G)

H는 친모를 만날 수 없었다. 어머니를 찾기 전 돌아가셨다는 말을 삼촌으로부터 전해들었다. 어머니의 이복동생인 삼촌은 입양기관을 통해 찾을 수 있었지만, 만남은 거부했다고 하였다.

“제가 어머니를 찾아내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의 이복형제를 만났어요. 삼촌은 결혼해서 자녀가 둘 있어요. 삼촌의 자녀들은 만난 적 없어요. 사실, 제가 여기서 찾은 삼촌과 한국 가족은 저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와 관련된 건 아무 것도 원치 않는다고요. 제가 가족의 일원이 되는 걸 원치 않았어요. 저를 완전히 거부했어요. 왜 저를 거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삼촌에게 숙모와 아이들을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삼촌의 자녀들이면 제게는 사촌이니깐요, 그런데 삼촌은 ‘아니, 그 애들이 너에 대해 아는 걸 원치 않는다’고 말하더군요. 그들의 눈에는 제가 그저 수치스러운 존재인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저지른.

입양 기관 000 직원이 삼촌을 찾아냈어요. 그 직원이 어떻게 찾았는지는 몰라요.” (사례: H)

삼촌과 그 가족이 H를 수치스러운 존재로 생각하는 것 같다는 말은 그가 미군 사이에 태어났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H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부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친부는 H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고 하였다. 친부는 미국으로 돌아오길 원하지만 H의 시민권 문제는 그들의 만남에 장벽이 되고 있다.

“저도 유전자 검사를 받게 됐죠. 2년 정도가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2017년쯤 뭔가가 나타났는데, 제 친생 아버지로 유전자 일치되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 걸로 나왔어요. 그렇게 아버지를 찾았죠. ... 아버지는 그때까지 아들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직접 만난 적은 없어요. ‘스카이프(Skype)’를 통해서만 연락했어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저에 대해 알았다면 저를 미국으로 데려와서 키웠을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어머니와 단 한 번 잠자리를 했을 뿐이고, 그 후에는 서로 다시 만난 적도 없어요. 아버지는 어머니의 임신 사실도 몰랐어요. 아버지는 미군이었어요. 어쨌든, 저의 존재를 알았다면 저를 미국으로 데려와서 자신이 키웠을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분은 전혀 몰랐죠.

아버지는 자녀가 있어요. 제겐 아버지쪽 이복형제들인 셈이죠. 아버지는 한국 여자와 결혼했어요. 제가 태어난 지 2년쯤 후에 한국 여자와 결혼해서 미국으로 데려왔죠. 그리고 자식을 둘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자녀들도 저처럼 한국계 혼혈이에요. 그들은 저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에요. 아버지는 현재 한국인 아내와 이혼하고 필리핀 여자와 재혼했어요. 하지만, 그들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제가 미국으로 돌아오길 원해요. 하지만, 제가 그곳으로 돌아가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지요.” (사례: H)

H는 평생 가족찾기의 여정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였다. 친어머니는 찾기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의 가족은 자신을 거부했고, 미국에 있는 친아버지를 찾게 되었지만 시민권의 장벽으로 만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제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저 가족을 찾고자 하는 것뿐이에요. 미국에 있을 때, 한국 어머니와 어머니 가족을 찾고 싶었어요. 여기에 와서는 제가 찾기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알았죠. 제 한국 가족은 저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요. 저를 거부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있으니까 제 친생 아버지를 찾게 됐죠. 그들은 저를 받아들였지만, 저는, 저로서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게 힘들어요. 저는 평생 동안 끊임없이 가족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모든 상황과, 모든 법과, 그런 것들이 가족과 가까워지거나 가까이 사는 걸 막고 있어요.” (사례: H)

I는 한국 첫 방문시 가족을 찾지 않았다고 했다. 친가족을 찾는 과정은 어려움의 연속이었다고 증언했다.

“한국에는 7번 방문했고 남편과 아이들은 4번 방문했어요. 처음 방문은 2006년에 남편과 함께였는데, 당시에는 남자친구였죠. 한국 외숙모(입양 어머니 가족과 결혼했고, 혈연관계는 아님)를 만나 그 가족과 함께 지냈어요. 최초의 한국 방문을 관광객으로서 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 가서 외숙모를 만난 건 특별한 경험이었죠. 그 후 남자친구와 함께 10일간 여행했어요. 당시에는 친생 가족을 찾지 않았고 찾으려는 마음도 없었어요. 2017년에 딸이 두 살이 된 후에야 친생 어머니를 찾기 시작했고, 매년 한국에 갔어요. 친생 어머니를 찾는 과정은 실망과 막다른 길의 연속이어서 매우 힘들었어요. 문화를 배우고, 음식을 먹고, 쇼핑과 관광을 하는 것은 즐거웠으나, 한국에서의 시간은 내가 그 곳에 속하지 않고 진정한 한국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 상기시켜서 마음이 복잡할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받아들여졌다면,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살았다면...’ 등의 생각을 자주 했어요.” (사례: I)

I는 친부를 찾은 이후 자신이 왜 입양되었는지를 추측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 권리는 근본적인 것이지만 여전히 해외입양이 지속되고 있는 한국 상황을 지적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버지를 찾고 나서, 제가 혼외자였다고 추측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이미 딸이 셋 있었고 저는 네 번째 딸이었는데, 아버지는 책임을 지지 않았고, 아버지, 아버지의 부인, 제 어머니는 저를 기를 수 없거나 기를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저를 버린 거죠. 제 파일을 분석한 소아과 의사에 의하면 저는 파일에 기록된 것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아마 4살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아마도 학교에 등록해야 했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사회에서 낙인을 찍지 않는다면 해외 입양을 피할 수 있어요. 어린 아이가 통제 밖 상황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거나 부적절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면요. 정부가 미혼 부모를 지원해서 아이를 기를 수 있게 해준다면요. 한국은 부유하고 현대적이라고 자랑하면서, 여전히 해외 입양을 허용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돼요.

소위 ‘비영리’ 사설 기관이 아니라, 독립적 정부 기관이 규제하고 처리해야 해요.

법적 나이가 되면요. 또 UN아동권리에 명시된 대로 근본을 알 권리(right to origin)가 있어야 해요.”

(사례: I)

## 2) 해외입양절차에서 국가의 역할

해외입양은 국가의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개인간의 계약에 의해 성립되는 과정으로 보이지만 명백하게 국가가 주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해외입양절차에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일까?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아동 최우선의 이익을 위한다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 해외입양절차에서 국가는 어떤 태도를 견지했는가를 살펴보면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외입양이 용이하게 진행되기 위한 절차로 호적을 창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했으나 이후 아동이 입양국가의 국적을 취득했는지의 문제나 아동의 기록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 따라서 현재 입양기록이 부실한 1차적인 책임은 입양기관에 물을 수 있겠지만 국가 역시 이 책임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궁극적인 책임은 국가에게 있기 때문이다.

해외입양과 관련한 기록을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국가가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의 관리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존재한다. 여전히 국가는 해외입양의 구조에서 경제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이익만을 추구할 뿐이다. 해외입양인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국가는 결코 내놓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아래 인용에서도 언급되는 것처럼 국가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해외입양의 진실을 규명할 의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엿볼 수 있다. 이는 가족찾기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입양인이 그 과정에서 경비 등 지출을 통해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방문객’일 뿐이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 정부는 아동을 해외로 송출하면서 취했던 경제적 이익을 성인이 된 이후 진실을 찾기 위해 돌아오는 이들에게도 역시 경제적 관점으로만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즉 국가는 해외입양인에게 또 한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보이지 않는) 폭력을 사용할 뿐 어떠한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입양인들의 기록을 관리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지만 저는 그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 입양인들을 돕기 위해 더 많은 뿌리 찾기 직원을 배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며 사실상 안된다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너무도 명백히 우리를 실패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 정부를 한국 입양기관만큼이나 믿지 못하겠습니다. ... 저는 한국 정부가 우리가 죽기를, 그래서 문제가 사라지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무의미한 뿌리 찾기를 할 때마다 한국에서 1만~1만 5천 달러를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점만 놓고 보더라도 정보 조각을 찾기 위해 우리를 계속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유익하겠죠.” (사례: A)

과거 해외입양을 갔을 당시와 달리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할 정도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입양인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한 지적은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성찰하게 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업무를 담당했던 중앙입양원을 통합하여 아동정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의 한 부문으로 입양인지원센터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는 실상 해외입양인의 사안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아래 언급에서도 드러나듯 인력 부족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결국 사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결을 모색하거나 지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통해 접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우리는 현재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 입양인을 위해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는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 아동권리보장원에 연락했지만 직원이 두 명뿐인 이유로 거의 1년 동안 ... 직접 누군가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신 아동권리보장원에 연락하고 1년 동안 기다린 후에 그들에겐 아무런 정보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이는 말이 안됩니다. 우리의 뿌리 찾기를 실패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례: A)

D는 국가의 역할에 대해 얘기하면서 입양 ‘자체’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시 말하면 입양이 갖는 ‘의미’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실천의 방법일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본인의 경험을 통해 돌이켜보면 관리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며 그 주체는 국가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국가의 역할이 부재했기 때문에 입양결정의 신중한 과정의 공백으로 연결되고 결국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제가 입양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사례도 보았고, 매우 부정적인 사례도 보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입양과정을 바꾸거나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입양은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고 돈 벌기 또는 부모님을 위한 것입니다. 입양은 부모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부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가 아닌 아이들을 위한 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정부의 최대이익이 아니라 아동 최상의 이익(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을 추구하도록 생각의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입양 부모를 검증하는 규칙과 규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착하지 않게 키우기 전까지는 착합니다. 부모로서 적합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지 더 잘 검열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OO는 양어머니가 입양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보내줬습니다. 제가 그 결과입니다. 양어머니에게 학대 받았던 상황으로 인한 문제들을 지금 견뎌내야 합니다. OO는 알면서도 허락했습니다. 그건 누구의 책임일까요? 예를 들어 미국으로

입양된 후 양아버지의 학대로 죽은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 제도가 실패하였으나 책임은 누가 지나요? 그 한 사람, ‘네, 입양을 허락합니다’라고 결정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누군가요? 한 공동체로서 모두를 탓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왜냐면 ‘어쨌든 입양 보내자’라고 얘기한 것은 한 명입니다. 그렇죠? … 제도에 휘둘러 아이를 입양 보내는 것만 생각한다면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무엇인가 잘못되었을 때 작동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 입양과정에 안전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과정을 통과해도 두 번째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이를 입양할 수 없어야 합니다. … 입양된 아이가 확실히 안전하고 결실이 있고 행복한 가정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가정에서 잘 자라고 건강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사람을 너무 쉽게 신뢰한다면 전체적인 과정에서 항상 실수가 발생하거나 어디선가 일이 잘못되거나 사람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제 누구의 책임인가요? … 안 좋은 가정으로 간 한국아이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매우 높은 비율입니다. 왜일까요? 이런걸 검열하는 절차는 어디에 있나요?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목소리를 내는 과정은 어디에 있나요? 한국 정부는 더 잘해야 합니다. 모두가 더 잘해야 합니다. 어떤 부모가 입양할 자격이 있는지 구분할 수 있는 엄격한 잣대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사례: D)

H는 국가의 진정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분명히 해외입양인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과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머물렀던 것에 비하면 국제사회의 선도적 지위에 이미 올라있는 국가의 수준에서도 변화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이 아직도 40년 전에 제가 입양됐을 때,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매우 가난했을 때와 같은 위치에 있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 중 하나잖아요. … 기본 복지나 입양인에 대한 적절한 보상 같은 건 하지 못해요. 때때로 정말 노력할 때도 있어요. 입양인마다 다른 것 같아요. 하지만, 제 경우엔 이 나라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해요. 저를 외부인이나 외국인처럼 보고, 그러면서도 한국식 마인드를 갖길 원하죠. 그러고는 한국인처럼 생각하지 않는다거나 한국 방식을 모른다고 비난하며 외국인처럼 대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조차 저는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그들과 같다고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입양인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경우에는 절반만 한국인인 이유도 있어요. 제가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한다고 비난하길 좋아해요. 왜 한국말을 못하냐는 거예요. 제 상황이나 이유 등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저를 비난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한국말을 하지 못하고, 한국식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을 두고 저를 깎아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저는 두 세계 사이에 갇힌 느낌이에요. 제 가슴 속에는 미국과 한국이 둘 다 있어

요. 그런데, 미국 정부는 진정으로 저를 미국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저는 그저 사회의 짐인 것 같아요. 무언가 과거의 산물, 잊을 수 있는 무언가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입양인들이 돌아오려고 하는 경우, 그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들이 뭘 해야 하는지는 알아요. 정부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해요. 지금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아무 것도요. 정당마다 정책이 다르다는 건 알지만, 입양인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어느 당도 한 일이 없어요. 정말 없어요.” (사례: H)

### ① 해외입양절차에서 국가의 공백

과거 해외입양을 갔던 시대적 상황과 다르게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할 수준의 경제성장을 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찾기 위한 개인의 노력에 대한 시스템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입양을 갔던 시대에는 경제적인 조건 등 여러 이유를 근거로 해외로 보내는데 급급했기에 국가의 책임을 방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현재 그들이 직접 다시 돌아와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을 외면하는 것은 과거의 이유로 면피할 수 없음을 명백하다.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의지가 있다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음에도 당시 상황에서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는 인식부족을 이유로 정보를 찾을 수 없다는 회신만 있을 뿐이다. 입양기관의 입장에서는 기록의 부재와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국가의 경우 개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정보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본연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과거 해외입양절차뿐만 아니라 현재 해외입양과 관련된 구조에서 국가는 공백으로 남겨져 있을 뿐이다. 특히 A의 언급은 국가의 의지만 있다면 기록이 조작되거나 신분이 뒤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저와 친부 가능성이 있다고 했던) 박씨는 81-82세입니다. 자신의 쌍둥이 자녀를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 위해 … 그는 분명히 쌍둥이 자녀를 찾고 있고, 많은 입양인들 또한 자신의 부모를 찾고 있으나 현 시스템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씨는 23andMe社의 DNA 검사를 받은 후 21일 만에 그의 쌍둥이 자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쌍둥이들이 이미 검사를 받았었기 때문입니다. 박씨는 수십 년을 찾아 헤맸지만, 우리는 단 21일 만에 쌍둥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 A)

E는 해외입양절차에서 규제관리의 주체인 국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던 상황을 지적하였다. 그는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전환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시점에 도달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회복적 사법과 변화적 사법(transformative justice)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한국정부가 입양인 사회의 기대를 등졌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가 이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회가 와서 다행이지만, 과거에는 수십 년 동안 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는지 의문이 듭니다. 정책을 변경하거나 무엇인가 변화시키려면 여러 단체와 개개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공식적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아동복지제도나 입양기관을 구조적으로 바꾸기 위한 책임을 지길 바랍니다. 아직도 그런 일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실망감과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사례: E)

G는 국가가 외화벌이의 수단으로 해외입양을 장려하였다고 지적하였다.

“한국 정부에 이득이 되는 일이었어요. 한편으론 넘쳐나는 아이들을 멀리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고아원을 지어 아이들을 돌볼 필요가 없었지요. 다른 한편으론 외화가 크게 유입되었어요. 입양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명세서나 계약서 등을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왔는지 알 수 있어요. 게다가 기부금도 들어왔어요. 그게 당시 얼마나 큰 돈인지 계산해 본다면, 상당한 액수의 돈이었어요.” (사례: G)

그런 의미에서 입양절차 전반에 국가의 개입은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국정부는 입양 과정에 관여할 필요가 있어요. 단지 개입만이 아니라, 다시 말해 정부 기관이 입양 절차를 담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입양 기관에 인센티브로 가는 돈을 없앨 수 있어요. 민간 단체 주도로 이루어지는 입양은 그 자체로 일종의 비즈니스예요. 비슷한 경우로 이민을 들게요. 민간 단체가 자의로 이민을 검토하고 스탬프 찍어서 국적을 부여하진 않잖아요. 이민에 대해선 정부 기관이 그 일을 담당해요. 입양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례: G)

## ② 시민권 취득의 문제

해외입양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간 이동이라는 점에서 시민권 취득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현실사회에서 국적의 취득은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간 이동인 해외입양은 입양인이 입양국에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 조건으로서 국적을 취득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과거 해외입양절차는 입양국으로 송출하는 것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지금은 미국 시민권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입양 절차를 통해 국적을 얻었다는 얘기만 듣고 자랐어요.” (사례: J)

시민권 취득과 관련해서 사례 B의 경우를 통해 입양부모 시민권 문제와도 연결하고 입양기관이 시민권 취득의 관심보다 입양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입양신청서에 양부모는 그들의 시민권에 대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 양부모는 미국에서 사업을 했고, 미국 영주권이 있었지만 미국 시민권자는 아니었습니다. ... 내가 도착한 첫 날 미국 이민국은 나를 바로 한국으로 돌려 보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양부모가 미국시민권자가 아니어서 제 비자는 불법비자였습니다. 하지만 양부모님은 동의서가 있어(양모는 ‘협상했다’고 함) 미국은 제가 미국에 1년 간 머물 수 있는 비자를 허가해주었습니다. OO는 그들의 시민권에 대한 선언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 제 생각에 저의 미국에 체류에 대한 협상은 OOOOOOOO이 제안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누군가 그들에게 미국 이민국과 협상해보라고 제안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사례 B)

H는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을 성장할 때까지 알지 못하였다. 그는 현재 시민권 문제로 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는 시민권 취득과 관련해 입양부모나 미국정부 뿐 아니라 한국정부 역시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동의 이익을 고려한 방법이었다면 기본적 권리로서의 시민권은 접근되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양 국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자가 되었을 뿐이다.

“제 입양 부모는 저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23~24세가 될 때까지 몰랐습니다.  
재회한 친아버지가 변호사와 얘기해 봤는데, 제가 18세가 넘어서 안된다고 했대요.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 이민법이 그렇다는 거죠. 제가 아들이라는 걸 아버지가 입증할 수 있다고 해도, 유전자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그들은 ‘그런 건 상관없다. 아들은 18세가 넘었고 외국인과 결혼하지 않았느냐’고 하는 거죠. 이민법상 18세가 넘은 제게는 미국 시민권을 주는 것이 금지되어 있대요.

아버지 말에 의하면, 아버지가 미국에 있는 이민 변호사에게 2년 전까지도 저에 대해 몰랐다는 걸 얘기했지만, 미국법은 그런 건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 이민법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아버지는 제게 미국 시민권을 주고 싶지만, 미국 이민법이 그걸 금지하고 있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죠. 저는 한국 가족을 찾고 싶어서 한국에 왔지만, 제 한국 가족은 저를 거부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한국에 있으니까 마침내 제 아버지의 미국 가족을 찾았고, 그들은 저를 받아들였지만 미국 이민법이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걸 금지하고 있어요.

저같이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이 일반 이민자처럼 이민의 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동 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이 개정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진 않아요. 지난 10년 내내, 매년 같은 말을 들었어요. ‘올해에는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될 거다’라는 말이요. 한 해 한 해 지나갔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아니야, 그렇게 될 거야. 분명히’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미국 정치와 의회에 달린 일이지만, 그들에게는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다른 우선순위가 있죠.

그래서 저는 합법적으로 미국으로 들어가서 머물 수 있는 다른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내려고 노력하고 있죠. ... 제가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제 누이의 어머니이고, 제 누이는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제가 미국에서 살길 진정으로 원해요. 왜냐면 제가 여기 한국에서 사는 건 매우 힘든 경우가 있다는 걸 그들은 아니까요. 저는 미국에서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전과가 전혀 없어요. 저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요. 추방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미국에 가는 데에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비자 없이는 90일간만 머무를 수 있어요. 말도 안되죠! 미국은 제 입양국이에요. 저는 거기서 자랐고 거기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무슨 외국인 이민자처럼 취급해요. 어처구니없어요.

그들의 잘못이자 미국 정부의 잘못이에요. 그리고 저는 한국 정부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해요. 멀리 입양 보낸 자국의 아이가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입양국에서 시민권을 주지 않고 있는데도 조치를 취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말이에요.” (사례: H)

H는 입양 후 삶이 불행했다고 하였는데, 시민권의 문제가 더욱 힘든 상황을 초래한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정부의 잘못이기도 하죠.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유럽 입양인의 경우, 입양된 유럽 국가의 시민권이 자동으로 부여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잊어버린다고 해도 정부에서 법으로 처리해주기 때문에 시민권에 대해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죠. 미국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아요. 세 당사자 모두의 책임이에요. 슬픈 일이죠. 그런데 지금도 한국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많은 한국인들이 일종의 오명처럼 여기는 것 같아요. 사실 그들은 많은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 보내졌다는 걸 알지만, 그런 얘기를 들으면, 특히 저 같은 사례를 들으면 한국인들은 슬퍼지니까, 그래서 그런 일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무시하는 게 더 쉬울 거예요.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일이 있어서 정부 기관,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에 가야 하는 경우에 조차, 제가 한국어를 못하고, 한국 이름이 없는 것들에 대해 못마땅해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제가 입양인이든 아니든, 그런 건 상관없어요. 저는 그런 일들을 겪어야 하죠. 심지어 정부조차도 저를 냉대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과 언쟁이라도 하게 되면 저는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 선택권이 있었다면 나는 여기에서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너의 나라, 너의 정부, 네가 나를 보냈다’라고요. 때때로 그들과 싸워야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냐면 저의 입양 이야기 자체가 저를 매우 감정적으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어떤 사람이나 정부 기관 등을 대할 때, 그 이야기를 다시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스트레스예요.” (사례: H)

H는 시민권의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가 바라는 건 미국과 한국 양측이 시민권 문제에 대해 책임을 졌으면 하는 거예요. 제겐 정말 정말 복잡한 문제거든요. 애초에 이래서는 안되는 거예요. 미국은 제게 미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줘야 해요. 하지만 미국 정부는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말하면 동정하긴 하지만, 과연 정말로 신경쓸까요? 정치인들이 실제로 무언가를 시도할 만큼 신경을 쓸까요? 아닐걸요.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제가 한국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한국 정부는 10년 전에 아무 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저는 여기서 고군분투해 왔어요. 모든 걸 혼자 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어요. 여기 한국 가족과 어떤 관계가 형성되길 바랐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모두가, 사촌들과 삼촌들이 저를 거부했어요. 저와 관련되는 걸 원치 않아요. 저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요. 가장 좋은 건 미국에 있는 제 가족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 더 가까이 살 수 있는 것, 같은 나라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제 삶이 훨씬 쉬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 정부가 저같이 시민권이 없고 한국에 있는, 입양국으로 돌아갈 선택지가 없는 입양인을 돕기 위해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적절한 비교인지 모르겠지만, 북한 탈북민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정부가 많은 보상을 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집도 제공하고 시작할 수 있는 상당액의 자금도

주는 걸로 알아요. 더 많은 일이 시행돼야 해요. 입양인을 돕는 한국 정부 기관이 있죠. KAS(현 아동 권리보장원, 전 중앙입양원)라고 불렀었는데, 그들은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두어 달 정도 뭔가 지원하는데, 한국 정부가 해야 하는 것에 비하면 너무 적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나마 적은 지원마저 중단하죠. 도움이 될 만한 일은 별로 하지 않아요. 정말 변변찮아요. 마치 장난감죠.” (사례: H)

H에 따르면 국가의 공적기관은 입양인들에 대한 지원은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이다. 한정된 예산으로 해외입양인 전반을 책임져야 하는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입양인을 위한 정책을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한 두 달간만 도움을 줘요. 그리고 나서, ‘아, 이미 돈을 너무 많이 썼다’고 하죠. 실제로는 아주 적은 돈인데 말이예요. 고작 미화 이백달러 정도인데,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금액이죠. 그러고는 ‘아, 잠시만요. 이 돈은 다른 입양인에게 가기 위해 써야 해요. 더 이상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어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썼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고, 어떤 식으로도 도울 수 없어요’라고 말해요.” (사례: H)

2000년 시민권법이 제정되면서 이후에 입양된 아동에게는 시민권이 자동적으로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이전에 입양된 이들에게까지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H는 한국정부의 보다 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바뀔 수 있도록 한국 정부도 좀 더 독촉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미 이민법, 시민권법에서 우리도 포함하도록 말이예요. 한국 정부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해요. 뉴스에서 작은 행정법(입양특례법 등)을 추진하는 걸 볼 때마다 좌절감이 들어요. 이 나라에서 아무에게도 영향을 주지 않는 법이요. 정치인들끼리만 뭔가 성취했다고 자화자찬할 뿐이죠. 그렇게 때때로 통과시키는 법들은 통과됐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강제하지도 않아요.” (사례: H)

G에 따르면 유럽의 경우 자동으로 국적이 부여되기 때문에 시민권과 관련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국적에 관련해서, 스위스와 다른 유럽 국가들은 자동 국적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입양이 되면 양부모의 자녀로 바로 인정되는 거죠. 다시 말해 양부모의 국적을 물려받는 개념인데, 미국과 캐나다와는 달라요. 우리는 완전히 다른 제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문서 누락이나 다른 어떤 문서 문제

때문에 곤란을 겪는 일은 없었어요.” (사례: G)

J는 입양절차에서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알고 성장했다.

“생후 3개월에 입양되었죠. 제 부모님은 OOOOOOO를 통해 저와 다른 아기를 입양했습니다. 1964년 우리 양부모님이 한국에 왔을 때 미국 대사관을 통해 우리에게 국적이 부여될 거라 말했어요.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국 정부뿐 아니라 우리 정부도 우리에게 국적을 부여하지 않은 데에 책임이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 양쪽 모두 고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 시민권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입양절차를 통해 국적을 얻었다는 얘기만 듣고 자랐어요.” (사례: J)

J는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추방 위기 등 어려움을 겪었다.

“여전히 출입국의 감시를 받고 있어요. 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그럴겠죠. 우리를 돕는 변호사들이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한국 변호사 OOO씨도 있고요. 이분은 우리 단체(NAKASEC)와 ‘입양인의 시민권을 위한 연대’에서 일해요. 우리는 함께 협력하고 있어요.” (사례: J)

J는 해외입양인의 권리를 위해 활동하면서 시민권 문제로 인해 추방된 경우에 대해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지 말라는 요구는 다른 관점에서 새겨볼 내용이다. 추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입양인의 삶에 더욱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관리 체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모든 국제 입양인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한국 정부가 추방된 입양인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미국화된 사람들입니다.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입양인들이 비록 한국에서 친부모를 찾아도 그곳에서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들은 그 나라, 법 등에 대해 무지할 뿐만 아니라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들은 어른이 되어 추방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나라 미국에서요. 그래서 이곳에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우리가 싸워야 한다고 믿어요. ... 여전히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국제 입양의 문제는 그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입양인들이 평생 상처로 남을 신체적, 성적, 정서적인 학대를 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다른 방식의 입양을 도입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아동에 대한 배경 조사를 하지 않아요. 그래

서 지금부터라도 한국 정부는 미국인의 한국아동 입양을 거부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 그럴 수만 있다면 당장 추방된 입양인들을 비행기에 태워 미국으로 보내면서 ‘그거 알아? 이게 당신들의 문제야.’ 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를 포함해 많은 아이들이 미국에 있는 기관들을 통해 입양되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국적을 허용해야 해요.” (사례: J)

J의 입양부모는 본인뿐 아니라 6명의 아동을 입양하였기 때문에 시민권 취득 신청에 대한 문제는 당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입양부모에게 들은바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다.

“부모님이 입양과정을 밟으며 들은 얘기는, 제가 미국에 I-600로 입국했기 때문에 꼭 저의 국적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때가 1964년이었고 제 비자는 M3였어요. 훨씬 나중에야 알았어요… 미국인과 결혼했는데, 그때까지도 저는 당연히 미국 국적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제게 40살 먹은 아들이 있어요.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제게 시민권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양아버지가 변호사를 고용했고 법정에서 다했어요. 변호사가 한국에 제 가족이 있는지 조사했는데,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오직 1964년의 I-600만이 법정에 보여줄 수 있는 전부였어요. … 변호사는 여기 이것이 나의 시민권이고 국적을 증명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결국 승인을 거부했어요. 당시까지 당연히 국적을 획득한 줄 알고 자랐어요. 저와 같은 학교에 다녔던 친구들도 전혀 이해를 못 하겠대요. 왜냐면 4~5살 때부터 저를 알았으니까요. ‘아, 그건 정말 잘못된 일이야. 평생 여기서 살았는데’하고 말해요.” (사례: J)

J는 자신의 계획에 대해 명확하게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추방된 입양인을 ‘고국’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에게 고국은 입양국인 미국이기 때문이다.

“국적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처음 왔을 때부터 당연히 부여되어야 했던 것이죠. 그게 제 계획이에요. 과거를 바꿀 순 없지만 눈 앞의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일은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서명하고, 추방된 사람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다른 곳으로 보내져 결국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 나라에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당장 입양인들을 돌려 보내줘요. 이미 어른이 되어서 문화도 언어도 모르는데… 입양 절차가 시작될 때부터 당연히 국적이 부여됐어야 해요. … 우리는 국적을 받은걸로 알고 있었어요.” (사례: J)

그렇기에 J는 한국정부에 해외입양인을 돌려보낼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입양인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에서 이익이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해외입양에 대한

관점이 변하지 않는 한국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는 것일 수 있다. ‘추방된’ 입양인이든 그렇지 않은 입양인이든 한국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정책을 입안했다면 J가 지적하듯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비판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한국은 절대 추방된 사람들을 받아들여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해외로 아이들을 계속 입양 보낼 거라면 그들이 제대로 국적을 받는지, 사회 복지사가 제대로 관리하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1년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아이들이 미국 부모와 잘 맞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그다음 문제는 알지도 못하는 나라로 추방되는 일이에요. ... 친어머니가 나를 포기했든, 내가 유괴됐든, 어쨌든 간에 나는 결코 한국 국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 나라 출신이 아니에요.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미국 정부와 협력하는 거예요.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게 추방된 모든 입양인들을 다시 미국으로 돌려보내겠다고 선언하세요. 왜냐하면, 미국의 양부모가 당신의 나라(한국)에서 아이를 입양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허락했기 때문에, 미국정부는 입양인들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이걸 단지 한국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두 정부에게 각자 역할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이미 입양되면서 외상을 입었어요. 우리는 늘 우리에게 어울리는 곳이 어딘지 방향해요. 여기에 살면서 범죄라도 저지르면 우리를 전혀 모르는 나라로 보내져요. ... 한국이 그들을 돌볼 충분한 자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직업을 구할 수도 없어요. 그들은 언어도 할 줄 몰라요. 한국은 그들을 비행기에 태우고, ‘그를 다시 미국으로 보낼게. 그리고 다시는 입양인을 우리에게 보내지 마’ 하고 말해야 해요. 누군가 나서야 해요.” (사례: J)

### ③ 국적회복의 사안

해외입양인의 국적회복과 관련한 사안은 국적법 개정으로 2011년 가능해졌다. 2011년 13명의 해외입양인이 국적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현실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한계는 입양인의 국적회복을 어렵게 한다. 그럼에도 해외입양인은 한국과의 관계를 지속하고자 한다.

“이번 주에 원래 한국에 갈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격리 때문에 못 가게 됐어요. ... 하지만 너무 어려워요. 2주 간 격리에 들어가야 하는데, 가족 관계를 증명하면 격리에서 면제될 수 있대요. 그래서 어머니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거기에 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사관에 ‘한

국에 갈 건데 격리를 면제해줄 수 있느냐'고 요청했더니 안된다고 해요. 전 좀 화가 났어요. 그들이 '당신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고 했고, 제가 '그건 당신 정부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했죠. 정말 화가 났어요. ... 한국에 가족이 있고, 전 입양되었을 뿐인데요. 제 친가족을 알고 있고 유전자 검사도 했고, 그걸 000가 검증해주었는데 격리 면제 없이 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단지 공식 문서에 제가 제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적혀 있지 않다는 이유로요. 정말 화나는 일이었어요. 이 일로 한국 국적을 신청하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절차가 쉽진 않아요. 일단 한국에 가서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을 해야 하고, 이후에 국적을 신청해야 해요. 하지만 일단 한국에 가는 게 먼저죠. 한국 정부가 국적 취득 절차를 덜 까다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해도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현실을 인정한다 해도 다음 번에는 더 간소해질 수 있게 정부가 움직여야 해요. ... 새로운 코로나 변종이 나타나면 또 1~2년 내에 여행이 제한될 수 있어요. 그럼 다시 한국에 가는 게 힘들어지겠죠. 벌써 2년이나 한국에 가질 못했어요. 정말 한국에 가고 싶는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사례: C)

F는 2011년 이후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그전에도 한국에 2년 정도 거주한 경험이 있다. 그렇지만 국적 회복은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였다.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하지 않았다는 언급은 국적 회복과 관련한 문제를 추정할 수 있게 한다.

"94년에 두 번 왔고, 97년과 98년, 2000년에 왔어요. 2008년에 왔을 때는 2년간 살았고, 2011년 이후로 지금까지 한국에 살고 있어요. 한국에는 F-4 비자로 있어요. 한국 국적 취득 신청은 아직 하지 않았어요. 신청할 수 있다는 건 알아요." (사례: F)

G는 국적을 회복한 첫 사례이다. 그는 국적 회복의 입법 과정에 참여한 경험을 들려주었다.

"이중 국적에 대한 생각은 2003년 한국에 올 때부터 갖고 있었어요. 2005년 한 국회의원에게 그 생각을 전했죠.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2007년에 이중 국적을 위한 운동을 시작했고, 법무부 장관을 면담했지요. 법적인 것이나 정보 등에 관해 도와줄 일이 없냐고 물었어요. 우리는 입양인과 양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지요. 압도적으로 모두가 이중 국적을 원한다고 대답했어요. 한국 국적이 자동적으로 한국 입양인들에게 부여되는 것에 대해 법무부와 논의하는 자리도 있었어요.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이미 입양인들의 선택권은 본인들 의지와 상관없이 입양을 갈 때 박탈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국 국적을 가질지 말지는 그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 거기에 동의하고 이 문제에 대해 법무부와 두 차례 공청회를 가졌어요. ... 2010년에 드디어 법이 통과했고 2011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휘되었어요. 약 5년 정도 걸렸지요.” (사례: G)

### 3) 해외입양에 관한 단상

전쟁과 같은 참혹한 상황에서 부모가 필요한 아동에게 입양을 보내는 것은 아동을 위한 대안적 방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장기지속되는 사안이 아니라 일시적인 방안이라 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 단기간 경이로운 경제성장을 이뤄낸 국가이다. 과거 원조를 받아야했던 시기를 벗어나 현재는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이다. 그럼에도 해외입양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여론은 해외입양에 대한 비판적 시각보다는 동정적인 감정에 기초하여 해외입양이 이뤄질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강한 현실이다.

이 상황은 해외입양에 대한 성찰이 부재한 국가의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말해준다. 해외입양인의 삶의 경험을 엄밀하게 살피지 않고 단지 부모의 부재, 혹은 ‘자격없는’ 부모에게 아동을 분리시켜 해외로 송출하는 상황이 아동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생각에 머물러 있다. 이른바 ‘성공한’ 해외입양인을 언론에 노출함으로써 해외입양이 ‘표준적’ 규범에서 벗어난 아동을 위한 최선이라는 인식을 조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입양 비율이 증가하지 않는 현실을 봐야한다. 해외입양이 전체 입양의 프레임 안에서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입양이 필요한 아동에게 해외입양을 보내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입양과 해외입양은 명확하게 구분하여 정책을 입안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보다 먼저 과거와 달리 경제적으로 풍요한 상황에서 왜 부모와 분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가를 면밀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는 여전히 가족을 사적영역으로 간주한 채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입양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해외입양을 둘러싼 갈등의 담론을 보면 공통적으로 ‘아동 최우선의 이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는 쉽게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아동이 건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동일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불가피했던 상황을 지적한 A의 언급 역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국가의 이익을 위한 선택이었다면 이후 정책적 고민도 담겨야 한다는 지적은 해외입양의 구조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당시 열악한 시설에서의 삶보다 해

외로 입양보내는 것이 아동의 입장에서 더 합리적인 행위였다면, 현재 시설아동은 어떤 상황에서 성장하고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그리고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아동의 유형은 과거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도 분석해야 할 것이다.

“한국전쟁 직후의 한국 상황에 대해서는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의 한국은 고아들을 부양할 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박씨가 병원에서 엄청난 비용을 청구했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아이들을 포기했다는 것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입양을 통해 전체 인구의 1%를 해외로 보냈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없는 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전체 밑그림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인구를 줄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피임에 대한 접근도 어려웠습니다. ... 저는 70년대에 가난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없었던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일제강점기와 미군의 개입을 보면 한국이 오랫동안 외세의 희생양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많은 입양인들이 백인에게 ‘구원’ 받았다는 개념을 몹시 싫어하기 때문에 ‘백인 구세주’란 말에 대해 불만을 제기합니다. ... 저를 고아원에 보내게 한 끔찍한 역사적 상황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단 고아원에 들어가면 지옥과 같은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저는 신원정보를 뒤바꾼 것에 대해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인 현실 세계의 상황에서 그들이 또 다른 비자를 받기 위해 저를 기다리게 했다면 저는 만으로 한 살이 되었을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생아를 원하기 때문에 저는 입양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입양을 기다리는 동안 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모든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돈 때문에 다른 나라로 보내져야 한다는 사실이 싫지만 어떤 인생도 완벽하지 않으며, 그 어떤 시스템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부모가 필요한 상황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는 우리가 개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저희 부모님이 하셨던 것처럼 기꺼이 그런 책임을 지고자 하시는 분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런 분들 없이는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반적인 입양인들 보다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이 각자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저는 학대를 당하지 않았고, 시민권을 받지 못한 끔찍한 가정에 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 삶이나 가족이 완벽하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평균보다는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너무 다양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의 전체 경험이 어떠한지 결코 알지 못하지만 입양이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입양 되었다는 점과 다른 사람들에게도 입양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입양을 하면 ‘가난한’ 출신국에서 ‘부유한’ 수령국으로 아동이 보내지며, 항상 부패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힘의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서구 선진국에서 북반구 또는 남반구의 빈국으로 돈이 이동할 때마다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해결하기엔 너무 큰 문제입니다.

… 많은 입양인들은 백인에 의해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백인들이 스스로에 대해 (입양아를) 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입양을 대체할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슬픈 진실인 것입니다. 입양을 보내는 대부분의 친생부모는 매우 가난했던 것이 현실이며, 한국의 친생부모들이 모두 완벽했을 것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끔찍한 아버지를 둔 매우 성공한 한국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며 균형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자란다고 인생이 완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개혁적 입양을 지지합니다.” (사례: A)

해외입양의 경우 입양부모는 입양아동의 국가에서 함께 살아본다든지 입양아동의 언어를 배운다든지 하는 변화를 모색하고 입양인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고아원에서의 생활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어요. (제 첫 고아원에 있던) 저를 비롯한 수백 명의 아이들은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대우를 받았어요. 한국 정부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처우에 대해 ‘고아’들에게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한국계 입양인을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배우기, 한국 방문하기 프로그램을 봤는데 나이 제한이 있었어요. 특정 연령이하의 젊은 입양인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죠. 저는 한국 정부가 나이를 이유로 자격을 박탈하지 않는 프로그램이나 나이가 있는 입양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누구나 자기 기록을 볼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기록을 입양기관이 아니라 정부가 보유하도록 하고 정부의 책임하에 뒤서, 입양인이 준비가 되고 원할 때 자신의 기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구까지는 아니지만, 아동을 입양하면 입양아는 입양국으로 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입양을 원하는 사람은 입양아의 나라에서 적어도 2년 정도 머무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변화를 겪는 것이 입양아 혼자만의 몫이어서는 안됩니다. 입양부모도 자기 몫을 해야 합니다. 입양인이 한국에 왔을 때 정부에서 통역사를 제공해주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입양아 관리 감독과 같은 적절한 입양 후 사후관리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사례: B)

C는 입양에 대해서 한국정부가 책임을 인정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당시 제가 입양되었을 때, 그리고 제가 태어났을 때 한국의 상황이 지금과 달랐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한국은 민주 사회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는 군부 독재 시절이었지요. 하지만 민주화가 된 이후 한국 정부가 입양인 권리를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은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 입장입니

다. 한국 정부는 과거에 일어난 잘못에 대해 책임질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 여전히 매년 수백 명의 아이들이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되고 있는데 그것부터 당장 멈춰야 합니다. 한국은 10위의 경제 대국이에요. 좀 더 거시적 차원에서 이것은 한국사회에도 문제가 됩니다. ‘한강의 기적’이란 말처럼 경제는 엄청나게 커졌고 기술 발전도 매우 빨라요. 하지만 사회 발전은 아직 너무 미약해요. 남녀차별, LGBT(동성애자)에 대한 차별도 큰 문제입니다. 한국사회에서 오히려 퇴보하는 점들도 많아요. 그 중 하나가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에요. 한국에서 미혼모에 대한 인식은 퇴보적이에요. 아주 완전히 퇴보하고 있죠. 한국 사회가 미혼모를 여전히 그런 식으로 인식하는 것은 정말 큰 수치입니다. 미혼모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한 입양아와 국가간 입양 제도는 계속 유지될 거예요. 미혼모가 국가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국가가 취하는 건 두 가지 방향뿐이에요. 보육 사업에 초점을 맞추거나 국내 또는 해외입양을 권장하거나, 돈은 그 방향에 따라 흐르게 되지요. 어머니들에게 지원되는게 아니라, 한국 사회도 변화를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사회가 미혼모에 대해 정의를 요구한다면 정부도 달라지겠죠. 양방향 시스템이죠. 이것이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원리예요. … 근데 크게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 신뢰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례: C)

D는 어릴 적 입양기록을 접했다면 영향을 받았을 수 있었을 테지만 그럼에도 입양기록이 갖는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입양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얘기하였다.

“제가 어렸다면 삶에 더 큰 영향을 줬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익숙해지기 마련이죠. 사람들은 입양이라는 단어를 뭔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꼭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입양인으로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드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입양되어서 운이 좋았다거나 좋은 삶을 살았다거나 이런 것도 가질 수 있었다고 얘기하면 화가 납니다. 사회에서는 입양이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입양이 항상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것은 사람들이 매우 불편한 질문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입양되지 않았다면 안 좋게 되지 않았겠냐’라고 묻습니다. 모르는 상황에 대해 추측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면, 아니면 저렇게 했다면 삶이 얼마나 더 좋을 수 있었을지 추측해 봅니다. … 당연히 입양기록에 있는 모든 것이 오늘날 저에게 영향을 줍니다.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20만 명의 입양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적어도 같은 상황을 겪은 사람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안 좋은 가족 상황에 처한 입양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가엽고 그들이 처한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정말 좋은 가족을 만난 입양인들도 만나보았고 그분들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례: D)

해외입양 전반에 대한 F의 생각을 정리해보면 해외입양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저는 가능한 한 모든 걸 합리화하려고 해요. 제 입양에 대해 생각하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살아남았어요. 저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지는 못하죠. 담당자들이 직무유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일을 더 잘하고 심사를 더 잘 할 수 있었어요. 대조 확인(Cross-Checking) 체계가 없다는 데에 놀랐어요. 대조 확인 아니죠? 한 감독관이 옳다고 하면 다른 감독관이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요. 그런 대조 확인 체계가 없다는 게 매우 놀라워요. 신청이 올바른지 확인하는 독립 감사가 없었다는 것에도 놀랐어요. 기록된 모든 정보가 올바른지 보는 과정이요. 프랑스의 모(母)기관과 중간 기관에 맡기고는 그게 다예요. 독립 감사를 통해 입양아 기록을 검토했어야 해요. 프랑스에서도 기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록을 대조 확인하거나, 만나보고 정신적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지 않았어요. 확실히 전문성이 떨어졌어요. 한국이 이제는 해외입양을 끝내고 자국 내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잘못, 본질적으로 아이들을 판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과를 받기까지는 많은 절차가 있으리라는 걸 알아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과정이죠.” (사례: F)

입양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을 피력하고 있는 G에 따르면 입양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스스로를 교육시키는 것은 중요해요. ...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특히 유럽에서 전반적인 입양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 중요한 건 더 이상 나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겁니다. 싱글맘에 대한 지원책이 있다면, 입양이 아닌 가족들 속에서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는 제도가 충분하다면, 지금의 입양 시스템은 저절로 없어질거예요. 스위스에서는 거의 입양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싱글맘이든 싱글대디든. 아이를 없애자, 다른 가족에게 보내버리자 하는 식은 아니에요. 물론 입양이 전혀 안 일어난다고 할 순 없어요. 분명 어떤 아이들은 입양이 필요해요. 아무도 그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 가족이 하나도 없다면. 진짜 고아라면 입양이 필요해요. 그 경우에도 해외 입양보다 국내 입양이 더 바람직해요.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건너뛰는 건 너무 부담이에요. 아이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남길 뿐이에요.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것...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벌써 많은 입양인 친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 한국 정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요. ... 많은 이들이 입양간 나라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고, 많은 이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들을 모두

파악하는 데 시간은 걸리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사례: G)

해외입양은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다. 해외입양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여정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인 것이다. 그러나 부실한 기록은 자신과의 대면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버려진 것과 근본을 모르는 것은 제 삶의 모든 면에 영향을 줬어요. 저는 쉽게 굴복하지 않는 성격이라서 살아남았고 꽤 다재다능한 사람이 됐어요. 사회에서 볼 때 성공한 거죠. 하지만, 정신적, 감정적 영향을 측정할 수는 없어요. 많은 입양인이 살아남지 못해요. 국제 입양, 그러니까 누군가를 출생국에서 떠나 보내고 정체성을 지우는 것은 극복하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기들은 해외로 보내져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수많은 임상 실험을 통해 이 생각은 틀렸음이 입증됐어요. 제 입양으로 인해 저는 정체성, 제 한국인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저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요. 한국이 우리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과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고 제 한국 가족을 찾을 수 없어요. 저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는 뿌리 없는 나무 같아요. 우리의 근본,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가 우리를 단단히 땅에 고정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를 인간으로서 형성하는 데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과소평가되고 있어요. 환경에 섞이기 위해 과거를 무시하거나 지우는 것은 건강하지 않고 결국에는 감정적 혼란으로 폭발해요. 과거를 맞닥뜨리고, 평화를 찾고, 용서하는 것이 종결과 자유를 가져오죠. 입양인들이 필요로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과거를 대면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사례: I)

I는 해외입양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절차에 훨씬 더 많은 규제가 있어야 하지만, 한국이 부유한 나라이고 그렇게 보여지길 원하면서 과연 국제 입양을 허락해야 하는가에 관한 질문도 있어야 해요. 제가 입양됐을 때는 입양 후 사후관리는 시행되지 않았어요. 그랬다면, 1986년에 제가 미국 국적을 취득했을 때 제 한국 국적이 말소됐을 거예요. 저를 아버지 호적에 올리려고 하면서 제 한국 국적이 말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OO는 작년에야 제가 아버지 호적에 외국인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제 한국 국적을 말소했어요. 추방된 한국계 입양인들이 있다는 사실이 이 허점의 증거예요. 사후관리가 이루어졌다면, 시민권이 없는 한국계 입양인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제 기록이 완전히 허위라는 사실은 제 과거에 관한 모든 것을 의심하게 해요. 제가 아직도 얻지 못한 대답을요. 입양 기관의 이야기를 토대로 한 제 과거 전부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고, 저는 이제 한국

인과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재조립하면서 감정적 문제를 겪어야 해요. 제가 버려지고 제 출생국으로부터 떠나보내진 것 때문에, 저는 자존감의 문제를 극복해야 했고, 백인에게 둘러싸여서 한국인으로서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자기혐오의 문제도 극복해야 했어요. 매일 매일,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제 한국 어머니를 찾을 수 없고, 제가 왜 버려졌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과 싸우고 있어요. 이 감정적 싸움은 저를 지치게 하고 좌절감을 줍니다.” (사례: I)

## 2.2. 해외입양절차: 입양관계자의 경우

이 절에서는 입양절차에 관여했던 관계자를 통해 해외입양을 인식하는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절차상의 문제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한국사회에서 입양은 전통적으로 가족계승이라는 차원에서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관습적 상황이 관통하고 있다. 이것은 입양 자체를 아동의 입장에서 고려할 수 없는 조건이 되었고, 입양의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입양부모, 친생부모, 입양아동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위한 행위로 인식하게 하였다. 따라서 입양기관에서 종사했던 사회복지사 역시 해외입양은 아동을 위한 ‘좋은’ 선택이었던 것으로 생각하였다.

해외입양은 의뢰된 아동을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결연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였고, 입양아동이 인계된 것으로 상황은 종료된 것으로 인식하여 이후 입양아동에 대한 모니터링은 부재하였다. 입양을 성사시키기 위한 부문에만 역량을 집중하였을 뿐 입양가정에서의 적응과 성장과정에 대해서, 더 나아가 모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인식조차 갖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해외입양절차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개인정보 접근권이나 사후관리에 대한 매뉴얼은 갖춰지지 어려웠던 구조였다.

입양관계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입양관계자 인터뷰는 3명의 입양기관 종사자, 가족찾기를 지원하는 2명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름	소속	기간	범주
Z	A입양기관	5년	입양기관근무
Y	C입양기관	1년 4개월	입양기관근무
X	Goal	2019년 이후	가족찾기지원
W	배넷	2018년 이후	가족찾기지원
V	C입양기관	30년 이상	입양기관근무

관계자 인터뷰 역시 해외입양절차와 관련하여 반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경험하면서 느꼈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입양절차는 최대한 효율적이고 빠른 시일안에 가족을 찾아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고, 이는 대리입양에 대한 인식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입양부모가 직접 아동을 대면하지 않고도 입양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와 관련한 문제제기가 없었던 상황은 짧은 기한 내에 시급하게 보내는 것이 아동을 위한 것이고, 효율적이라고 인식했던 것과 연결된다. 입양기관 종사자와 가족찾기를 지원하고 있는 경우를 통해 과거 해외입양절차가 어떤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는지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책임하에 입양인의 가족찾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입양절차의 한계는 명백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관계자의 인터뷰는 한국 사회가 입양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 특히 입양기관에 근무했던 이들의 언급을 통해 입양은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의 방법으로 간주했던 사회의 분위기를 추론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해외입양 구조에 보다 엄밀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입양기관에 종사했던 분들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1) 해외입양절차

### ① 해외입양절차에서 드러난 입양기관의 인식

입양기관은 기본적으로 해외입양을 사회복지실천으로 인식하고 있다. 입양기관의 활동은 온전히 아동의

이익을 위해 시대적 맥락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간주했다.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더 나은 방법을 강구해야 했지만 당시 상황에서 해외입양을 대체할 대안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해외입양을 신속하게 보내는 것이 아동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외입양을 보낸 이후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는 필연적으로 내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입양기관이 입양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에 대한 촘촘한 인식이 부재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기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입양과 관련한 교육도 시행하지 않았다. 결국 입양기관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문제의식을 갖기 힘든 현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 하면 시설에 가거나 어렵게 지내는 것보다는 입양 가는 게 좋더라는 게 그때 분위기였어요. 그게 선후가 뭐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입양 기관에 일하는 사람도 그렇고 저도 초기에는 그래도 이거는 차선책이다. 입양은 차선책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는데” (사례: Z)

“전혀 문제의식도 없었고 또 아무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 이렇게 자기의 일을 하면서도 약간 애를 왜 이렇게 보내지?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없었죠. 입양을 가면, ...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찍은 사진들이 오죠, 이거 너무 좋은 거더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부모들이 가끔 오면은 참 좋은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입양은 당연히 참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지 그런 문제의식이 전혀 없었죠.” (사례: Y)

입양기관 뿐 아니라 국가 역시 해외입양이 아동을 위해 좋은 방안이라는 획일적인 인식은 강하게 자리잡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해외입양이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거다 라는 그런 획일적인 사고 방식은 분명해요.” (사례: Z)

해외입양절차에서 대리입양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대리입양은 입양절차에서 입양아동과의 면접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을 넘어 입양아동이 입양부모에게 인계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입양부모의 편의를 고려한 조치이다. 다시 말해 입양부모는 입양대상 아동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비용을 지불할 능력만 갖추면 입양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입양부모가 현실적으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입양부모의 ‘필요’에 초점을 맞춘 방식으로 간이하게 입양절차는 진행할 수 있었다. 결국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했다기보다 입양부모의 이익에 부합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입양기관 역시 이익을 도모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비판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던 상황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비싼 미국에서 오기 쉽지 않잖아요. 입양수수료도 엄청 많이 내는데… 그리고 여기서 대개는 이제 에스콧해가는 유학 가는 선생님들이 옛날에 그래서 많이 가셨잖아요. 그렇게 그런 방법이고. … 와서 데려가시는 부모님도 계셨어요. 근데 전체 수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와서 데려가기 한 며칠 전에 와서 아이랑 친해져서 … 근데 숫자가 그렇게 많기는 어렵겠죠. 현실적으로.” (사례: Z)

“우편 배달 입양 형태라고 얘기를 하죠. … 한 번 보지도 않고 애가 어떤 상황에서 사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종이로 입양하는 그 자체가 너무 사회복지의 그런 실천과 맞지 않는다. 그래서 반대했는데 그게 거의 60년을 그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아니었으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겠죠. 그럼 북적북적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많이 보냈으니 근데 escort 비용을 부모한테 받거든요 추가로. … 그당시 escort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 거의 반액을 또 기부금 형태로 내요. 그러니까 막 이중으로 돈을 받는 거죠.” (사례: Y)

해외입양을 보내는 입양기관의 사업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한 조치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충분한 고려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해외입양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상당했다는 점을 비추어 생각하면 입양이 아동의 이익보다 경제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입양이라는 것이 진짜 이 아이에게 가장 바람직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한 실천인가? 이 아이가 진짜 입양 가는 것이 맞는가. 또 이 아이가 과연 입양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 … 그런 거에 대한 고려는 거의 없었던 거죠. 그냥 그때는 한 명이라도 더 보내는 게 기관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었고 … 한 아이를 보내면 한 사람의 연봉 이상이 나오는 거죠. 근데 몇 천 명을 보냈으니 엄청난 돈이었죠. 근데 진짜 이 아이가 가야만 하는 아이들인가.” (사례: Y)

입양기관의 가장 큰 잘못은 입양절차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했다는 의도와 목적은 아동을 위한 것으로 일견 보이지만 결국 입양절차에서 아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구체적인 사례하고 상관없이 어느 기관 할 것 없이 절대 아동 중심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굉장히 큰 인권 침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례: V)

## ② 입양아동의 의뢰 경로

입양기관으로 의뢰되는 아동은 부모가 직접 기관을 방문하거나 미혼모의 경우 상담을 통해 의뢰되기도 하였다. 당시 상황에는 조산소를 통해 의뢰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입양기관은 조산소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하였다. 즉 입양기관은 입양을 보내는 것이 일종의 성과로 평가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입양 기관에 직접 찾아오는 부모들이 있거나, 미혼모 때부터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하셨던 미혼모 기관들이 있어요. 기관들이 어떤 기관은 OO이다 이런 게 일하다 보니까 자연히 정해져요. 어떤 기관은 거기에서 우리가 미혼모가 상담 왔을 때 거기다 의뢰도 하고, 지낼 곳을 그쪽에 ... 그런 경로가 있고요. 또는 갓난 애기 경우 그런 게 있고, 그때는 조산소가 많았어요. ... 조산소를 확보하기 위한 진짜 작전을 써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몰라도 그 조산소에 아이를 데려올 때마다 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아마 공공연한 비밀로 서로 기관들이 그래서 어느 시점에 이제 집중하자. 이게 해외입양의 불이 붙은 시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사례: Z)

아동을 위한 대안적인 방법이라는 인식에서 입양은 진행되었지만 입양인의 증언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의료기관과의 유착관계가 존재했다. 이것은 전적으로 아동을 위한 선택이 아닌 입양기관과 그와 관계된 기관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었음을 말해준다.

“항상 좋게 시작이 돼도 하다 보면 이상하게 변질되는 게 있죠. 뭐가 있냐 하면, 아이들이 산부인과 병원에서도 오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아이를 보내줘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언젠가부터는 그냥 아이를 데려오면 의사들도 노골적으로 돈을 안 줬다고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촌지와 비슷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게 돼 간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그런 분위기도 있었어요” (사례: Z)

“산부인과가 새로 생기면 거기를 갑니다. ... 아이를 모으기 위한 병원, 조산소 뭐 이런 데를 다 다니는 거죠. 그리고 고아원들도 다 다닙니다. 혹시 입양을 갈 만한 입양 대상 아이가 있으면 OOOOOOO로 연락해 달라 ... 아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에서 ‘외피를 쓰고 사실은 거래다’ 이런 거 옛날에 기사 많이 나왔잖아요.” (사례: V)

입양기관에 입양의뢰되는 경로는 크게 인테이크 담당하는 직원의 일종의 ‘영업’과 시설을 통해서 이루어

졌다. Z에 따르면 문제는 충분히 고지가 되지 않고 입양절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연장아동의 경우 입양을 가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해외로 보내진 경우도 있었다. 결국 사회적 맥락을 이유로 제시하더라도 해외입양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인테이크 하는 ... 연락을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작업을 하는 게 그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경로가 있고 또 시설을 통해서, 일시보호소를 통해서 오죠. 이제 일시보호소에서는 금방을 수가 없는데, 분명하게 갓난 아기가 아니고 큰 아이를 그 일시보호소를 통해서 요청했다고 하면 그럼 우리를 소개해 주는 거죠. 그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 그때는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때 상황이 어려우니까 해외입양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이 좋게만 말하고, 입양 일을 하는 사람이 충분히 고지를 하지 않는 거야. ... 좀 큰 아이들은 자기가 입양 가는지도 모르고 가게 되는 아이들도 있는 거예요. ‘미국 가면 좋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인테이크 해오고 뭘 호송하고 그러면 거기에 인텐시브가 주어지는 거라는 거 있기 때문에 ... 할 정도로 일을 하시는 그런 모습이” (사례: Z)

당시 사회·경제적 조건을 고려하더라도 입양은 일종의 산업이었으며 국가가 이를 방조했다는 것은 Z의 증언에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국가는 입양구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듯한 입장을 취하면서 입양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그러면서 입양기관에 입양 보낼 수 있는 아동을 할당하였다. 이것은 국가가 해외입양을 암묵적으로 주도한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개입한 행위자로 해석할 수 있다.

“입양이 황금기 같은 시기가 있었어요. 매년 되면 보건복지부로부터 1년에 쿼터를 몇 명 받느냐가 입양기관들이 막 머리 싸매서 하여튼 로비를 하는지 뭘 하는지, 그런 게 굉장히 신경전을 벌이는 걸로. ... 각 입양 기관들이 피 튀기는 인테이크 경쟁을 한다는 거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 그런 인테이크가 불붙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하여튼 정해진 걸로 알고 있어요. ... 그런 쿼터가 분명히 있었고, ... 연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새로 하면 하여튼 열을 많이 올렸다는 것은 분명해요.” (사례: Z)

입양의뢰된 아동의 경우 미혼모의 자녀와 혼외관계에서 태어난 아동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남아선호사상이 강하게 작동했던 시대적 이유로 딸을 입양 보내는 경우, 장애를 가진 경우 의뢰되기도 하였다.

“지금보다 훨씬 더 미혼모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미혼모가 대다수로 많았고 또 그 당시에는 이렇게 바람 피워서 낳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있어요. 제일 많은 건 미

혼모예요. 그렇고 어떤 경우도 있냐 하면 그때 시대만 해도 아들을 선호했어요. … 딸을 계속 낳아 그래서 오는 경우 우리가 막 분개하지만 그래서 오는 경우, 쌍둥이를 낳는데 딸만 보내는 경우 흔치 않지만 있었어요. … 가난하고 의료보험도 안 되고 하니까 언청이만 돼도 애를 데려와요. … 언청이 수술이나 치료를 하지 못하고 아이가 지내는 게 허다하니까 … 그래서 입양을 가야만 하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런 숫자도 좀 있죠.” (사례: Z)

### ③ 해외입양절차의 완료

입양기관에서 근무했던 이들의 인터뷰에서 드러난 것은 입양절차의 완료는 입양부모에게 인계된 순간에 종료된다는 것이다. 이후 아동이 입양가정에 잘 적응하는지 혹은 돌발상황이 발생하는지와 관련한 모니터링이나 사후관리는 부재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입양인의 기록이 부실했던 것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입양이 종료된 순간 모국인 한국과의 관계 역시 끝난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이들이 성장하여 다시 찾아오거나 혹은 자신의 기록에 대해 요청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Z의 언급에서도 드러나듯 해외입양인이 돌아와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했다. 즉 입양이 완료되면 모든 상황이 종료되기 때문에 기록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입양은 아동이 처한 열악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했을 뿐 영향을 미치게 될 다른 요인들은 고려하지 못하였다. Z는 자신의 업무가 전적으로 아동을 위한 대안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입양절차의 문제로 인해 결과적으로 해외입양인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점을 증언하였다.

“부모하고 컨택이 될 수 없었다는 거. 서류가 없다는 거. 이걸 치명적으로 보완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때는 제도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한 부분도 있고, 저 자신도 너무 무지했어요. … 돌아왔을 때 필요하다는 걸 막연히 생각했지, 그때 당장에 뭐 하는 거에 급급했는데 지금은 해외입양인만 생각해도 너무 미안하고 그런 게 정말 미안해요. 그 일을 한 사람으로서, 근데 거기에는 상대국하고 여러 법적인 거 비자 취득하는 거와 관련된 문제도 있고, 무지함이 제일 많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일이 생길 거라는 것에 대해 너무 무지했고” (사례: Z)

입양기관은 입양가족과 아동의 결연을 성사시키는 것이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입양이 가능한 아동을 중심으로 의뢰를 받았다. 입양이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은 3-4개월 이내에 완결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입양절차는 비용과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입양기관의 입장에서 최대한 빨리 진행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갓난아이들은 거의 문제없이 받는데 연장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매칭되기 어려웠어요. 이미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 그런 경우는 … 이제 저희가 되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 보통 3개월이면 거의 입양을 가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기관이 3개월 넘는 아이들한테는 난리를 쳐요. 왜냐하면 빨리 그 안에 가야지. 데리고 있는 비용이 줄어 들고 그러기 때문에 …” (사례: Z)

“행정적으로 빨리 처리 하면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잖아요. 네 행정의 기간을 단축하면 0000000로서는 비용이 적게 들잖아요. … 입양 수수료가 애를 며칠 키우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줄이려는 노력이 있었죠.” (사례: V)

해외입양인의 인터뷰에서 모호하게 제기되었던 아동의 고아호적 창설과 관련해서 입양기관의 증언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입양국의 법제도에 의해 ‘고아’만 입양이 가능했기 때문에 의뢰된 아동의 대부분은 현실적으로 입양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런 이유로 호적을 새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는 것과 기록보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해외입양인이 성장하여 가족을 찾는 과정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한 결과를 낳았다.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원본 기록에는 사실을 적시했어야 한다는 Z의 언급은 한국 정부와 입양기관은 해외입양을 성사시키는 것에만 급급했던 상황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미국의 이민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저희가 서류상에 아무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가는 경우죠. … 부모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받아들여 지지가 않았죠. 이거는 조금 오해된 부분도 있어요. 미국의 법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원본에서 인테이크 할 때 좀 더 그래서 받았든지 무슨 장치가 있었더라면 훨씬 더 후에 부모를 찾기가 용이했을 텐데(기록을 좀 더 받았더라면) 애가 어떻게 오냐를 궁금한데 차트상에는 기아로 오거나 버려졌다고 오거나 이렇게 … 어린 갓난 아기들은 직접 부모들이 맡기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큰 아이들은 기아일 수도 있고, 직접 기아이면서 이제 부모가 맡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부모가 맡겼어도 그렇고, 기아인 경우는 더욱 더 그 법이 있어요. 입양을 못 가게 되어 있는 그 얼마 동안 부모가 찾을 수 있잖아요. 가끔 가다 … 그럴 때 보면 인테이크가 제대로 안 되어진 거죠. … 충분히 검토해야 되거든요. … 일했던 기억으로는 빨리빨리 진행해서 빨리빨리 나가게 하는 거에 그냥 막 휘말렸던 기억이 너무 크거든요. … 비자에는 쓸 망정 원본에는 이 부모님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나중에도 접촉할 수 있는지, … 피치 못할 그런 사정에서 보내 준다면 자세한 스토리는 몰라도 부모가 누군지를 밝혀주고 … 그런 조건에 부합하도록 해야죠. 이제 세상이 달라졌으니까. … 부모님도 한평생 행복하지 않아요. 그 버린 아이 때문에 죄책감에 늘 힘들게 죄인처럼 불행하게 살거

든요. 그러니까 성장했을 때는 그 길을 열어서 만날 수 있다. ... 말로는 입양이 차선책이라고 했지만 어떤 때는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여러 가지 제도도 입양을 부모가 못 키우면 법적으로 결혼을 했든 아니든 키울 수 있는 제도가 돼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되면 그렇게 애들이 이렇게 나갈까요? 그런 것들이 같이 돼야 되지 않을까.” (사례: Z)

“미혼모 아이도 나중에는 사실 미국에서 법적으로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다 기아 처리해버렸잖아요. 기아로 만들었는데.” (사례: Y)

또한 해외입양 과정을 보면 입양대상 아동의 서류를 입양국가의 입양기관으로 보내게 되고, 입양국가는 결연될 입양부모를 찾는다. 한국의 입양기관은 입양국가에 서류를 보내고 입양이 결정되는 것을 확인하지만 입양부모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입양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양부모의 선별권은 그쪽에 있고, 그쪽에서 서류가 되면 우리가 child study를 보내면 거기서 매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상대 기관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이 기관은 일을 잘하더라. ... 그런 거를 잘할 수 있는 기관을 우리가 선호하죠. 거기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 해요. ... 우리가 해주는 거는 서류만 보내고 입양이 됐느냐, 이런 가정에 입양이 됐구나. 근데 우리가 서류를 보다 보면 ... 일을 하다 보면 상대 기관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일을 잘하는 기관인지 ... 어느 순간부터 자꾸 우리가 일못한다는 기관에 자꾸 애들 쿼터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 그런 것에 대해서는 증거는 없어요. 근데 저희는 그 기관이 싫다고 그 기관에는 아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 문제 있을 때 핸들링하는 것이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 제도적으로 한다 그래도 어디나 구멍이 있어요.” (사례: Z)

이러한 문제는 입양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자를 받아 보내게 된 문제에 의해 파생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입양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양국가에서 다시 입양절차가 진행이 되고 그 결과에 대해 한국 정부와 입양기관은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공백지점이 발생했던 것이다.

“최근에 그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visa가 IR-3로 가니까 처음부터 이제 입양이 완료된 상태로 이렇게 가는데 그때는 입양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또 가니까 거기 가서 이제 그 프로세스를 하고 ... 입양이 완료됐다는 ... 그것도 보내라는 요구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가서 어떻게 됐는지 개가 그 과정에서 완료가 됐는지, 이렇게 떠도는지 ... 시민권 신청을 해야 되는 그걸 해준 사람이 없었던 그런

경우 … 그것도 관심이 없었죠. … 중요한 서류들, 서류들을 요구도 안 했고 보내줘도 그것을 제대로 보관하고 이런 시스템도 없었던 거죠.” (사례: Y)

#### ④ 사후관리 및 가족찾기

해외입양인의 가족찾기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면서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지적은 해외입양절차에서 국가의 인식은 어떠한가를 엿볼 수 있게 한다. 해외입양인들도 지적한 것처럼 해외로 입양을 보내면 한국과는 완전하게 단절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책임은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해외입양인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국가의 역할과는 무관한 것이다.

사후관리와 가족찾기의 측면에서 기록은 일차적으로 중요한 자료이다. 그러나 입양기관은 기록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했다. 어떻게 보면 입양은 기관에서 일하는 담당자들은 일종의 처리해야 할 ‘업무’였을 뿐이다. 그렇기에 입양이 ‘완료’된 아동의 기록을 보관하는 것은 이미 종료된 사안으로 부차적인 것으로 밀려나는 것이다.

“입양하는 아이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겨를 없이 … 입양기관들도 그리고 너무 앞을 못 봤어요. … 사무실도 비좁고 공간도 적고 하니까 … 박스에다가 서류철을 다 집어넣어서 보관하죠. 이렇게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 부서도 없으니까 없애라 그러더라고요. 그 서류를 그럴 정도로 우리가 무지했다고요. … 그 아이들이 찾아왔을 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자신의 기록을 알고 싶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동을 위해서 일하는 길이지만, 우리가 입양업무 요것만 볼 게 아니라 아동이 자라서 성장한 전 인간이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도 입양 기관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당시에는요. 어떤 매뉴얼도 없었어요. 저는 들어본 적도 없고, 교육도 받은 적이 없어요.” (사례: Z)

“그런 거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 염두에도 두지 않았던 거죠. … 그냥 보내면 끝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 그 다음은 생각 안 한 거죠. 그냥 보내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기록을 보여줄 때도 다 안 보여주고 막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경험들을 해서 해외 입양인들이 되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숨기는게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몇 번 가면 갈 때마다 조금씩 정보가 더 나오고 이런 상황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 어떻게 지내는지 사후 관리도 전혀 없었고요. …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없었고” (사례: Y)

해외입양인이 본인의 기록을 요청할 때 입양기관이 왜 비협조적인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요보호아동의 복지정책 차원에서 한국은 입양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요보호아동의 정책을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지 생각하게끔 한다.

“성년이 돼서 온 사람들한테는 나는 그거를 모르겠어요. 입양기록을 안 보여주는 이유는 뭘까. 우리가 한 게 그게 전부인데. 그걸 왜 안 보여주는지는 모르겠어요.  
요보호아동이 생겼을 때 대하는 게 다르잖아요. 우리는 입양이라는 전제를 놓고 시작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 옛날에 그런 말도 했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그런 말도 하면서 참 씁쓸했는데 … 요보호아동에 대해서는 진짜 바뀌어야 되는 거죠. … 다른 나라는 요보호아동이 없나요? … 근데 입양을 간다라고 하니까 악순환이 생기잖아요. … 자극하고 촉진을 시키잖아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은데 이슈를 많이 제기하고, 이렇게 공론화되고 그런 과정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례: Z)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기록은 입양구조와 관계된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를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아무리 행복하더라도 자기 뿌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 자기가 왜 입양됐는지? 자기는 누구를 닮았는지? 자기의 유전적인 정보는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인간이면 누구나 궁금해하고 또 적어도 한번은 만나고 싶어 할 가능성이 다 있죠. …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하고 친생 부모 자신도 이렇게 아이를 입양 보내고 나서 그냥 훌가분하게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을 거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고, 그만큼 그 고통을 겪어가면서 할 만한 일인지 … 아이를 상실하면서 경험할 여러 가지 아픔들 또 그걸 어떻게 애도를 해야 할지. 또 아이가 진짜 엄마가 자신을 정말 사랑했는데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 …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준비 작업도 해야되는 거죠. 그게 딱 분리된 게 아니죠. 다 연결이 돼 있던 말이에요.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되는 거죠. 지금 입양 기관에서 그 기록들을 가지고 마치 그게 사유재산처럼 그 당사자에 대한 기록인데 안 보여주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이거는 진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통합 관리 해갖고 이분들이 알 수 있는 모든 것,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례: Y)

가족찾기 과정에서 기록의 중요성은 실종아동의 경우 더욱 극적으로 다가온다. 가족을 찾기보다 신분을

바뀌 입양절차를 용이하게 하여 보냄으로써 가족과 강제적 분리가 된 경우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을까? 평생 상처로 안고 살아야만 하는 모든 가족은 이후 상봉을 하였음에도 그 동안의 거리를 좁힐 수 없을 정도로 변했을 뿐이다.

“본인의 이름을 얘기할 수도 있었을텐데. (그러지 못하고) 이름이 바뀌었죠. 거기서부터, 그래서 부모가 거기 가서도 당연히 못 찾았죠. ... 입양한 게 미군이었어요. ... 애가 실종된 지 한 달 만에 애를 데리고 부산에 가버렸어요. ... 많은 시간을 소비한 다음에 고아원에 갔을 때는 당연히 이름으로 찾아보니 없었니까 ...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이 나라가 뺏어갔죠. ... 애는 실종된 게 분명한데 ... 생이 별을 할 이유가 없었는데. 진짜 기적처럼 어떤 경찰의 도움으로 찾긴 했지만 ... 아이를 찾으면 그때 손을 놓쳤던 아이의 모습으로 자기 옆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세월이 너무 야속할 정도로 둘 사이에는 이미 건널 수 없는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사례: W)

가족찾기를 지원하는 해외입양인 단체인 G.O.A.'L(해외입양인연대)에서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X의 언급을 통해 입양인들의 가족찾기 과정을 엿볼 수 있다.

“입양인들을 돕는 프로세스를 보다 빠르고 쉽게 하려면, 필요한 건 1페이지 혹은 2페이지 뿐인데, ... 프로세스가 상당히 간단해졌습니다. 누군가 우리 시스템에 등록하면 입양 기관이 되었든, 공식적인 정부기관이든, 우리 같은 NGO든 관련기관에 대해 간단히 소개자료를 보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안내 받습니다. 그런 서류가 없다면 어떻게 서류를 취득할 것인지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만을 G.O.A.'L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 후에 스케줄을 세워서 상담을 받고요. ... 신청 입양인들을 대면하고, 우리가 무엇을 찾았고, 뭘 알게 되었는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 말해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필요한 점을 계속 도울 수 있는 것이지요.

일차적인 가족찾기는 입양기관에서 하게 되고, 만일 일차 찾기가 실패한 뒤에 시간이 좀 지난 경우에만 입양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케이스를 인수받아 공식적으로 처리하죠.

관련 법률이 바뀌고 이제는 상황이 달라져서, ... 민감한 사적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지면서 ... 지금은 컨설팅 서비스에 보다 주력하고 있어요. ... 한편 G.O.A.'L이 보다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다른 역할은 실제로 친생가족을 도와 입양인을 찾도록 하는 거예요.” (사례: X)

해외입양인과의 친분관계를 계기로 해외입양인의 가족찾기 지원을 시작하게 된 W에 따르면 기록의 접근은 어려운 과정을 수반한다. 그렇지만 자신의 기록의 사소한 부분이라도 찾게되었을 때 입양인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지난한 과정을 견디는 것 같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국가기관인 아동권리보

장원이 입양기관으로부터 기록이 넘겨받지 않은 점은 국가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가족 찾기라는 게 흩어져 있는 퍼즐을 찾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조각되어 있는 것은 가장 늦게 작성된 입양 기관에서 작성된 것이라서 거슬러 찾아가죠.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서 진짜 기록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 거의 협조가 안 돼서. ... 입양인들은 그거 작은 거 하나 찾는 것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엄마가 지어준 진짜 이름이었어’ 이러면서 끝내 친생 가족을 찾지 못하더라도 그런 사소한 거 하나 찾으려고 나름 노력을 하죠. NCRC(아동권리보장원)가 입양 기관에서 받은 입양 기록이 하나도 없다면요? 저는 최소한 사본 같은 거 기본적인 건 다 받은 줄 알았었어요. ... 다 받아와서 그 사이에 또 법이 또 좋게 개정이 되면 또 그걸 가지고 NCRC가 좀 더 빠른 속도로 찾아주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그런 사소한 것도 안 돼 있을까요?” (사례: W)

X에 따르면 국가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은 정보접근이 가능한 반면 입양기관은 정보접근의 제약이 존재한다. 이 언급을 통해서도 국가의 책임하에 입양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가족찾기의 과정에 개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NCRC가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무제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우리나라 입양기관은 현재 주소나 연락처에 대해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NCRC는 다른 정부기관들 예를 들어 주민센터나 구청, 경찰서와 공조하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서 정보접근이 없는 다른 기관들이 입양인 가족 찾는 걸 도와주는 식이죠.” (사례: X)

가족찾기의 어려움은 정보의 불명확성에 기인한다. 이것은 기록관리의 부실도 원인으로 작동하지만, 입양을 의뢰할 당시 부모님에 의해 정보의 누락도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대부분 그 80%의 사람들은 정보가 불확실한 경우예요. ... 정보들 중 어느 하나라도 불명확한 경우, 행정공동망에서는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라도 다른 조합으로 찾아낼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 정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거죠. 부정확이라는게 판단하기는 참 힘들지만, 입양기관이 조작하거나 했을까요? 제 생각엔 그렇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친생부모가 양육을 포기했을 당시에 뭔가 부정확했던 거예요. 그래서 찾기가 힘든 거고요.” (사례: X)

가족찾기 과정에서 기록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공공기관의 협조는 직접적으로 대면한 경우 보다 용이하

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시스템의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어떤 상황이나 적용할 수 있는데요. ... 맥락을 말하고 싶은데, 차이가 없거든요. 이걸 같이 일하는 사람에 달린 거라서 그 사람들이 잘 도와주거나 그렇지 않거나 하는 거고, 상황이나 문제 자체에 대한 건 아니에요. ... 도움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건, 인간관계에 따른 거라 가족찾기에 있어서 이점이 중요하죠. 입양인과 함께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대부분의 경우 잘 도와주시는데, 당사자를 직접 만나는 경우라 그러합니다.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전화나 이메일 상으로만 도움을 요청하는 게 훨씬 어렵죠. 현재 법률이나 매뉴얼, 관행이 개선되어야 그걸 모두가 다르게 되죠. 모두가 뭘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누구라도 개인적인 인간관계에 의지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요. ... 중요한 일에 아예 개인적인 영역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시스템적으로 버튼을 누르면 필요한 걸 얻을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례: X)

## 2.3. 해외입양절차와 인권

이 절은 앞에서 살펴본 해외입양인과 입양관계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해보고자 한다. 입양기관에서 종사했던 관계자의 공통적인 증언은 당시 상황에서 해외입양은 아동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사실은 입양에 대한 인식 - 특히 해외로 송출하는 경우에 아동이 성장하면서 겪게 될 여러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채 안정적인 것으로 상상된 가족(외국이라고 하더라도)의 품으로 일단 보내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 이 깔려있음을 말해준다.

본 조사를 통해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시대적 상황을 언급한다는 점이다. 가난이라는 경제적 상황, ‘비정상’으로 취급되면 축출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상황은 불가피하게 아동을 해외로 보냈다는 정당화의 근거로 삼는다. 여기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사항은 친부모가 아동을 입양기관에 알선하여 보낸 사례가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C의 사례에서도 사회적 규범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강제적으로 아동을 친모에게 빼앗은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또한 B의 경우 상대적으로 나이가 있어 가족의 이름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찾기 위한 노력을 취하기보다 해외입양의 성사를 위해 기록을 ‘미상’으로 왜곡하였다. 시대적 상황을 이유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입양기관 역시 아동의 미래를 위한 선택임을 강조하지만 입양대상 아동에 대한 엄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의뢰된 경우 빠른 시일안에 입

양결연될 수 있도록 조치했을 따름이다. 이것은 해외입양절차가 갖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작동한다. 즉 친생부모와 아동의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배제된 채 입양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현실은 해외입양으로 인한 이익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또한 형식적으로 사적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이면에는 국가의 방임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결국 해외입양절차를 살펴보면 국가에 의한 인권이 침해된 폭력적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된다. 아동이 좀 더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외국에 있는 가정의 품으로 보냈다는 것은 포장에 불과한 하나의 수사(修辭)일 뿐이다.

## 1) 해외입양의 국가폭력적 성격

해외입양은 '레드카펫 홀로코스트'라는 A의 비유는 해외입양인의 현실을 극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국가에 의해 수많은 해외입양인이 인권침해를 받게 될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단지 국내에서 이슈가 되지 못한 채 소수의 목소리만 나온다는 현실에 근거하여 해외입양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해외입양이 국가에 의해 이루어진 폭력적인 행위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입양절차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은 정부가 입양에 관심을 가지고 입양인을 걱정한다는 것을 긍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국에 돈이 된다는 점에서만 우리에게 신경을 쓴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우리의 상봉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아동권리보장원에 더 많은 직원을 배정했을 것입니다. 한국 정부를 믿었다라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겠지만 솔직히 선감학원이나 형제복지원 상황을 보면 별로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저는 입양을 '레드카펫 홀로코스트'라고 설명합니다. '홀로코스트' 이후 우리는 비행기로 안내되고 국외로 보내졌으며, 그렇게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선감학원이나 형제복지원의 사람들은 레드카펫 부분은 빠진 '홀로코스트'만을 겪었지만, 한국 정부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보십시오. 인권 유린은 너무나 명백하고 지독하며, 정부는 이를 빗자루로 쓸어 카펫 밑에 숨겼습니다. 조금도 개의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 형제복지원 설립자는 '자금횡령'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을 뿐입니다. 저는 이런 곳의 문제는 부패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정부가 원래 해야 되는 방식으로 우리를 도울 것이라고 결코 예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결과는 우리 입양인들과 우

리를 도우려는 다른 사람들의 노력에 달려 있지만, 우리 대부분이 과거를 모른 채로 죽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니 정말 슬픔입니다. 저는 아마도 제 실제 생년월일이나 태어난 도시를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 저는 결코 진실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0000000는 많은 경우 사생활을 보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정보를 숨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불행히도 당신은 그들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결코 구분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절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사례: A)

가시적인 폭력행사가 자행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의’로 포장된 해외입양의 이면을 해외입양인의 목소리를 통해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에 언급된 국가폭력의 사례로 조사에 착수하고 있는 형제복지원은 해외입양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해외입양 자체를 국가폭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입증하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70년 동안 반강제적으로 20만여명이 송출되었고,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은 그 자체가 물리적인 폭력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는 등 개인의 전 생애를 관통하면서 폭력적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 여전히 그들이 처한 상황을 파악조차 하지 않는 국가의 태도 자체가 폭력적인 것이다. 더 나아가 해외입양과 관련된 친생부모의 슬픔까지도 포함하게 된다면 해외입양으로 인한 책임있는 역할은 국가에게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한국인들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원해서 떠났던 나라도 아니고... 여기 존재하지 않고, 그들은 투표권도 없다는 이유로 어떤 요구를 해도 묵살당하기 쉽죠. ... 쉽게 무시당하고 소외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한두 명이면 모르지만 22만 명이고, 그들과 연관돼 있는 친생부모님 44만 명. 해외 입양으로 연결되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친생 부모가 낳은 자식까지 합하면 한 6, 70만 명은 될 거라는 생각이 돼요. 해외 입양으로 인해서 이산이 된 그런 사람들. 저는 이 입양인들에 대해서 안 보인다 하더라도, 이들이 표현을 안 했지만 한국에 있는 가족들도 풀고 싶은 과제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 하지만 다만 그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숨어 있거나 안 보이니까. 하지만 그 숫자가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서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해외입양인들의 친생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기를 기다리는 정부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 엄청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죠. 정부가 안 하니까.” (사례: W)

해외입양인의 시민권 취득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가의 폭력성을 지적할 수 있다. 입양절차에서 시민권 취득 여부를 강제하지 않고 입양을 가능하게 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이 경우 한 개인의 삶을 피해하게 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국가에게 있다.

“미국 국적 취득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니까 … 반드시 어떤 비자를 가지고 출국해야 해 이걸 그 옛날에 강제했다더라면 그들은 발생하지 않았을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는 국가도 신경도 안 쓴 거죠. … 민간기관은 누가 통제할 거예요. 그냥 빨리 받을 수 있는 비자를 받죠. … 제도적 미비점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사례: V)

## 2) 인권 책무자로서의 국가의 역할

해외입양인의 목소리는 공통적으로 국가의 수사(修辭)에 불과한 것이 아닌 실질적인 역할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눈부신 발전을 이뤄내고 선진국의 반열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이유로 수많은 아동을 반강제적으로 해외로 내보냈던 현실에 대해 외면하고 있다. 아동을 수용했던 국가와 입양부모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국정운영자들의 언술은 일부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당사자인 해외입양인의 현실을 파악하고 그들의 잃어버린 삶을 회복시켜야 할 의무를 먼저 실행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합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가족들이 서로를 찾고 싶어 하니 우리가 친 가족을 찾는 것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DNA 검사를 더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최소한 아동권리보장원의 직원 수라도 늘려주세요. … 합리적인 수준으로 늘려 우리의 뿌리 찾기에 실제로 도움이 되게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한국에 돌아가 입양기관을 상대할 때, 저는 ‘제1세계 한국’이 아니라 ‘제3세계 한국’을 상대합니다. … 입양인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입양인과 관련한 모든 일에 있어서 입양 기관들은 제3세계 국가처럼 행동하는 것이 당황스럽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에만 관심이 있고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그들을 고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누구의 잘못인지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입양 기관들에게 어떻게 해가 되나요? … 저는 그들이 끔찍한 국가처럼 행동하는 것을 멈추기 바랍니다.” (사례: A)

해외입양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입양기관을 공적영역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해외입양의 당사자인 입양인의 언급은 깊게 되새길 필요가 있다. 국가가 담당한다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아니지

만 사적영역에서 담당하는 것보다 국가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외 입양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한국 정부가 한국의 입양 기관에 대한 모든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양과, 해외 모집, 모든 국제 입양 기관들에 대한 정보를 다루는 특별한 정부 기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 그 단체의 위원회가 입양인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조언을 하자면, 한국 국적을 재취득하는 것에 대한 절차가 간소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친모와 입양인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미혼모에 대한 보다 많은 정책과 사회 정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국가 간 입양 체계 전반이 한국 사회로부터 ‘원치 않는 아이들’을 없애는 데 일조했어요. 일종의 사회로부터 ‘압력’을 빼내는 체계였어요. 한국 사회와 경제에서 ‘고아’라는 압력을 빼낸 데 일조한 거죠. 그 중 일부는 진짜 고아가 아닌 조작된 고아였어요.” (사례: C)

입양의 가이드라인은 인권의 관점에서든 기본적인 기준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입양이 아동 최상의 이익을 위한 방법이라고 규정한다면 입양과정의 투명성이 최소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과거 해외입양은 이익을 취하고자 행해진 산업의 성격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요구사항은 어떤 입양이든지 가이드라인과 허용 기준(parameter)이 더 개선되어야 합니다. 국내 입양이든 해외 입양이든 상관 없습니다. 정부는 특히 부모가 아닌 아동을 우선시 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과 허용 기준을 바꿔야만 합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가족을 찾고 싶어하는 입양인이 입양기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변해야 합니다. 입양기록을 직접 보고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입양인이 입양기록을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법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입양을 시작한지 거의 60년 이상이 되었지만 아직 제도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 입양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입양절차가 아이를 위해 운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입양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입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이 3만에서 4만불입니다. … 아이를 팔면 인신매매 아닌가요? … 국내 입양이든 해외 입양이든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투명해야 합니다. 한국이 정말 의심스럽게 보여질 뿐입니다. 정부가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 아이가 팔려가는 것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더 좋은 가이드라인과 투명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어떻게 입양되는지, 또 그 비용이 과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는 개선된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례: D)

“아동 인권을 침해한 건 맞죠. … 정부가 책임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하는 것으로 바뀌면 자연스럽게 바뀔 거예요. … 헤이그 협약에서도 아이를 입양을 보내고 말고 하는 거에 돈의 문제가 개입되는 건 안 된다는 것이 헤이그 협약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원칙 중에 기준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

걸 끊게 되면 자연히 모든 게 달라지겠죠” (사례: V)

입양인이 겪었던 문제는 인권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단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 책무자로서의 국가가 제대로 된 역할을 정립해야 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저는 한국정부에서 보내는 마스크나 생필품이나 거창한 약속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그들의 관계에서, 또는 그들의 공동체가 겪은 피해가 회복되고 이를 포함한 회복적 사법을 원합니다. 그리고 입양제도가 입양인과 친가족을 지원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이 과정은 이해당사자들이 포함된 협력과 대화가 필요하지만,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저와 같이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입양인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원정보가 뒤바뀌거나 다른 제도적 부정의를 겪은 저를 포함한 여러 입양인들의 사례가 밝혀지고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고 귀 기울이고, 정말로 변화를 위해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사례: E)

시민권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써 최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는 것으로 국민국가로 운영되는 사회에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회구조적인 원인으로 시민권의 공백이 발생한다면 그 해결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당연히 국가가 직접 해결에 나서야 하는 당사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과 미국의 전향적인 정책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시민권을 받지 못한 입양인을 돕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해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줘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의 삶에 적응하도록 더 많은 도움과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한국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살아남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이민법을 개정해서 한국계 입양인 모두에게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해서 우리가 입양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압력을 넣어야 합니다. ... 한국 정부는 똑같은 일을 자국의 아이들에게 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해외로 가게 하고, 입양국에서 2등, 3등 시민으로 대우받는 고통을 겪게 했어요. 그리고는 이 나라로 돌아왔을 때도 한국 국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2등, 3등 시민같이 느낍니다. 적응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최소한이 아닌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줘야 합니다. 그런 도움은 저 자신이나 이런 상황에 있는 다른 입양인들에게 감정적, 정신적, 재정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항상 강해지려고 노력해 왔지만 정말로 상처를 받습니다. 살면서 여러 번 혼자라고 느끼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강해지려고 안간힘을 쓸 때가 많습니

다. 하지만 내면에는 모든 고통, 분노, 슬픔, 제가 감내했던 모든 것들이 자리잡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제 안에 품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밖으로 나올 때면, 격한 감정을 표출하게 되죠. 그래서 정부 기관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경우는 화를 누르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 저는 한국 정부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말로 도움을 원해요. ... 저는 모두를 위해 이 상황에 도움을 주길 원해요. 뭔가 진지한 행동이 모든 당사자에 의해, 한국과 미국 정부에 의해 취해지는 걸 봐야 해요. 지난 10년 동안 진지한 조치는 보지 못했어요.” (사례: H)

I의 요구는 입양기관의 공적책임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입양기관은 아동의 이익이 아닌 기관의 이익을 우선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 이를 기초로 하여 입양절차가 아동 최상의 이익에 부합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더 이상 한국에는 사설 입양 기관이 없어야 합니다. 한국의 입양을 조사해 보면, 너무 많은 부패, 사기, 금전적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이 입증될 겁니다. 따라서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최우선으로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국제 입양이 중지부를 찍고, 국내 입양만 장려되기를 바랍니다. ... 한국의 입양 절차를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조사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가 인식하기를 탄원합니다. 진정으로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서요. 과거에 저질러진 많은 과실과 불법 행위가 지금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 미래를 정말로 바꾸기 위해서는 과거와 대면해야 합니다. 그 과거는 70년간의 입양 관행인데, 수천 건의 사례에 부패가 개입됐음이 입증될 것이고 앞으로 이를 근절하는 방안이 고안돼야 합니다. ... 입양인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의 예외를 적용하고 근본에 대한 인권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UN은 이를 인간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입양 관행의 선구자가 되어 앞서서 이 권리를 인정할 순 없나요?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입양 관행을 조사하고 나서 같은 결론, 즉 금전적 인센티브로 가득한 현재의 입양은 지속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동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 아이들의 권리, 우리 20만 입양인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우리가 가족에게 접근하고, 근본을 알고, 어디서 왔는지 알 권리를 우리에게 주세요.” (사례: I)

해외입양은 결국 국가의 책무가 방기한 결과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입양기관이 주도한 사업으로 외형상 보이지만 그 과정의 관리감독의 궁극적 책임은 국가에 있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즉 해외입양은 국가가 아동보호에 대한 공백을 해결하는 쉬운 방법으로 채택한 것으로 인권 침해의 주요 행위자였다.

“국가가 제도적으로 어쨌든 부모가 못 키우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국가가 고민하지 않았잖아요.” (사례: V)

“어떤 아이가 되든지 한국에서 키워야 되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사례: Z)

한국사회의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체계와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기에 인권 책무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한 것이다.

“정부는 사회적인 의지를 반영한다고 봐요. ... 가난하던 시절 군부 독재 때 ... 입양 보내는게 받아 들여지던 때거든요. 지금처럼 사회에서 독자적인 소리를 낼 수 없던 시절이기도 하고요. 현재의 민주국가 한국에서는 사회적인 의지가 ... 버려지는 아이들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된다고 확실히 해둔다면, 다른 나라 경우처럼 비슷한 법률을 적용하면 돼요. 해외입양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바람직한 방향으로 몇 가지 제도적 개선이 시작되는 상황이라고 봐요. ... 관행적으로 잘 정착시키려면, 지방 정부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거죠. 적어도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아이가 입양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니까요. 이걸 아주 좋은 출발이에요. 하지만 저는 인적 자원에 대해 의구심이 좀 들어요. ...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확보하는데 지금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이걸 아주 중요한 단계예요. ... 스스로의 힘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고, 미국이나 유럽국가보다 한국에서는 정말로 힘든 문제예요. 경제적 안정성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자원이 더 필요하거든요. 이런 모든 이슈들이 적절한 프로그램과 시스템의 수립을 통해 제기되어야 하고 또한, 교육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필요한거죠. ... 아주 어릴 때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상관없이 본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례: X)

과거 해외입양절차 인권침해사례 보고서:  
심층 인터뷰

# PART 3

## 해외입양절차에 관한 국내법제 및 국제인권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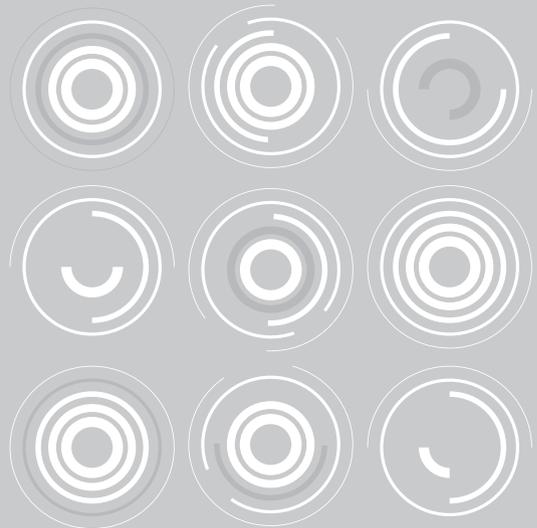
강정은 •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김진 •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마한열 •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이정주 •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한선필 •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 3. 해외입양절차에 관한 국내법제 및 국제인권규범

#### 개요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아동 또한 기본권의 주체임은 분명하다. 즉, 국경을 넘어 해외로 입양된 아동 역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국가는 이러한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책무를 진다(헌법 제10조).

한편, 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어 수령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는 대한민국 국적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입양아동 또한 재외국민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이 해외로 입양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는 한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2021년 10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70년 이후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아동은 10만 6,332명인데, 이 가운데 국적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 인원은 6만 2,502명에 불과해,<sup>3)</sup> 4만여 명이 넘는 입양인의 국적 취득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령국의 국적이 취득되지 않은 해외입양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어떠한 책무를 이행했는지 질문해야 한다.

또한 헌법 제11조에 따라 해외입양 아동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아동’이라는 이유, ‘입양’되었다는 이유, 그리고 ‘국외’로 입양되었다는 이유로 나의 출생이 공적

3) 한국일보, “있지만 없는 사람들, 무국적자 “한국이 내 삶을 부렸다” 미국적 없는 한인 입양인 최소 4만여 명”, 2021. 10. 28자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02515130005937> (최종확인: 2021. 11. 22.)

으로 등록될 권리, 이름을 갖고 국적을 취득하며 부모를 알 권리, 가정환경에서 자라날 권리를 차별받아서 아니된다.

전 세계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이자 대한민국 역시 1991년 비준해 당사국으로서 준수할 의무를 지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당사국이 아동 또는 그의 부모의 신분과 관계없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없이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당사국 내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이 아동과 관련된 활동을 할 때에는 아동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아동권리협약을 대한민국의 상황에 적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은 「아동복지법」 등 아동과 관련된 다양한 법령을 두었다. 이 가운데 특히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법은 제2조의 기본 이념을 통하여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제6조 제1항)라고 규정한 만큼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조약의 정신, 그리고 「아동복지법」의 기본 이념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모든 아동은 본인 또는 부모의 국적, 사회적 신분, 출생지역 등과 관계없이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난 많은 아동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차별에 노출되기도 하였고, 아동이라면 반드시 누려야 할 권리에서 배제되기도 하였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해외로 보내진 입양아동들은 이름, 국적, 가족관계를 넘어서 정체성이 박탈되어 왔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과거 해외입양절차에 관한 국내법제와 국제인권규범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3.1. 과거 해외입양절차에 관한 국내법제 검토

제정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입양특례법이 해외입양절차에 관해 어떻게 규율해 왔는지 시간의 순서에 따라 검토해 보았다.

## 가. 입양특례법의 개정과 문제점

### 1) 입양특례법의 개정 연혁과 입법취지

1961년 「고아입양특례법」(이하 “고아입양특례법”)이 제정되어 국내 아동의 해외입양을 위한 「민법」(이하 “민법”)의 특례를 정하였다. 위 법은 1977년 폐지되었으나, 이를 기초로 하여 1977년 「입양특례법」(이하 “입양특례법”)이 새로이 시행되었다. 이후 1996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2년 다시 입양특례법이 시행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법의 제정목적은 살펴보면, 간이하게 해외입양이 이루어지고 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절차를 정하려던 것에서 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1961년 고아입양특례법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고아를 양자로 함에 있어서 간이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제1조 제1항). 1977년 입양특례법과 1996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가 되려는 자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제1조). 2012년 입양특례법은 보호대상아동의 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 2) 1961년 고아입양특례법

고아입양특례법은 1961. 9. 30.부터 1977. 1. 30.까지 시행된 해외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3-1] 1961년 고아입양특례법의 주요내용

양자될 자격 (제2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동의를 얻은 18세 미만의 자
양친될 자격 (제3조)	① 본국법상 양친요건 충족 ② 충분한 재산 ③ 품행 단정 ④ 양자를 인권유린 우려가 있는 직업을 위해 매매 또는 사용하지 않을 것 ⑤ 양자의 종교자유, 교육, 보호에 대한 서약 및 이에 대한 본국 공공기관 등 제3자의 보증
법원의 인가 (제4조)	외국인이 양친이 되는 경우 법원에 입양신청 후 법원이 이를 인가 법원은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5일의 간격을 두고 2회에 걸쳐 법원게시장에 부양의무자의 신고를 최고하는 공고를 함
입양알선기관 (제5조) (1966. 2. 23. 개정)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만이 입양알선 가능
사후관리 (제5조)	입양알선기관은 양자의 신상을 상시 파악해야 하며, 외국국적 취득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법무부장관은 양자의 국적을 제적할 것을 가정법원에 통지
외국인의 대리 (제6조)	외국인은 각령의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입양절차의 일부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벌칙 (제10조)	허가 없이 입양 알선시 2년이하 징역 또는 4만원 이하의 벌금 양자의 비밀 누설시 1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1961년 시행된 고아입양특례법이 양친의 자격으로 양자에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교육과 보호에 있어서 그 지역사회의 한 성원으로서 인정되는 상당한 대우를 하겠다는 서약을 하도록 했으며, 이에 대한 본국 공공기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자의 보증을 받도록 한 점은 현재 양친의 자격보다도 강화된 요건으로 볼 수 있다. 처음 이 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양친될 자가 외국인인 경우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1976. 1. 1. 시행된 개정법률 전까지는 지방법원, 시행 후에는 가정법원)에 입양신청을 하여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서 현행 입양특례법과 유사한 절차를 두고 있었다. 단 외국인의 경우 입양알선기관으로 하여금 입양절차의 일부를 대리할 수 있었다. 이는 다른 국가 간 해외입양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리입양’으로, 양부모가 아동을 보지 않고도 대리인(입양알선기관)을 통해 아동의 출신국에서 입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 입양절차의 대리 규정은 1966. 2. 23. 개정된 고아입양특례법

에서는 삭제되었고 이 법이 폐기된 1977. 1. 31.까지 따로 대리에 관한 규정을 두지는 않았다.<sup>4)</sup>

1966. 2. 23. 고아입양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입양알선기관을 허가제로 운영하게 되었고 해외입양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4~5개 정도로 제한하였다. 입양알선기관에게는 양자의 신상을 상시 파악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었고, 국적취득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있었다. 전체적으로 현재의 입양특례법과 유사한 수준의 절차를 마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선언하거나 원칙으로 정한 규정은 확인할 수 없다. 대신 법원이 입양을 허가하게 하고, 실효성 여부를 떠나 양친이 대한민국의 보고 요구에 응하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였으며(1966. 2. 23. 삭제), 양친이 자격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대한민국이 적절한 다른 가정으로 입양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었다(1975. 12. 31. 삭제). 한편 양자가 고아임을 확인하기 위해 부양의무자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15일로 당시의 통신과 교통상황을 고려하면 충분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고 회수도 2회로 친생부모를 찾는 데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자될 자의 동의를 받거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입양알선기관에 입양서류를 보관할 의무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입양알선기관 허가 취소 외에 입양알선기관이 법적의무를 해태한 경우의 벌칙 규정 또한 없었다.

### 3) 1977년 입양특례법

1977년 고아입양특례법이 폐지된 이후 입양절차에 관한 모든 규정은 새로 제정된 입양특례법에 두게 되었다. 이 법은 1977. 1. 31.부터 1996. 1. 5.까지 시행되었다. 당시 법의 제정 이유로는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불우아동의 입양절차를 간소화하고 양자로 된 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는 등 민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동시에 현행 고아입양특례법에 의한 국외입양의 추진에 있어서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

4) 입양알선에 대리가 포함될 수 있는지 논쟁이 될 수 있다. 입양절차의 대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질적이다. ① 알선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일이 잘되도록 주선하는 일'을 말하므로 남을 위해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와 사전적인 의미가 다르다. 입양 알선은 입양아동과 양부모의 업무로서 입양을 동시에 주선한다는 점에서 일방의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는 알선업무의 일부로 포섭하기에는 이질적이다. ② 기본적으로 입양처럼 신분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는 대리와 친하지 않다. 예를 들어 구, 호적법(2008. 1. 1. 폐지되기 전의 것)은 신고의 대리 규정을 두면서 입양과 인지, 혼인, 이혼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을 두었다(제36조 제3항).

를 이 법에 흡수·규정함으로써 당해 불우아동의 국내의 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표3-2] 1977년 입양특례법

목적 (제1조)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자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양자될 자격 (제2조)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자 /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한 자 /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자
양친될 자격 (제3조)	① 본국법상 양친요건 충족 ② 충분한 재산 ③ 양자를 인권유린 우려가 있는 직업에 사용하지 않을 것 ④ 양자의 종교자유 인정, 양육,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입양의 동의 (제4조)	부모(부모가 사망 등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의 동의 필요 / 15세 이상인 자를 양자로 하는 경우 양자될 자의 동의 필요
외국인이 국내에서 입양(제8조)	외국인이 국내에서 양친이 되는 경우 가정법원에 입양신청 후 법원이 이를 인가
외국인이 국외에서 입양(제9조)	입양알선기관에 의뢰하여야 함 입양알선기관의 장은 양자될 자의 해외 이주허가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청 입양알선기관은 양자가 외국국적 취득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법무부장관은 양자의 국적을 제척할 것을 가정법원에 통지
입양알선기관 (제10조, 제11조, 제12조)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만이 입양알선 가능 양친될 자의 자격에 관하여 입양알선기관의 장이 확인 의무(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으로서의 직무 수행 입양알선기관은 입양관계서류를 비치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1조 제3호)
제13조 (무적아동의 취적)	입양알선을 의뢰받은 입양알선기관의 장은 그 양자로 될 자가 무적자인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한 취적 또는 일가창립의 절차를 밟을 수 있음
벌칙 (제18조)	허가 없이 입양 알선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양자의 비밀 누설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양친 될 자격에서 종교 자유, 교육, 보호에 대한 서약 및 이에 대한 본국 공공기관 등 제3자의 보증 요건이 삭제되었다. 대신 입양알선기관이 양친 될 자격에 대해서 상세히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15세 이상 입양될 자에게 입양에 대한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규정이 새롭게 마련되었다. 입양알선기관이 무적 아동의 취적 또는 일가창립의 절차를 밟을 수 있었고, 입양알선기관의 장이 보호시설의 장으로부터 입양 될 자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인수한 날로부터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외국인이 국외에서 입양알선기관에 입양 알선을 의뢰하면 이 경우 국내 가정법원의 인가를 받는 절차를 밟지 않아도 입양이 가능했다(제9조 제1항). 양친될 자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하여 입양알선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연할 수 있었으며, 양친이 될 외국인은 국내에서 양자 될 자를 직접 만나보지 않고도 입양 확정 전에 입양을 전제로 국적국에 입국시킬 수 있게 되었다. 입양알선기관은 이와 같은 외국인의 국외입양에 대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입양 후 입양알선기관의 양자에 관한 신상 상시 파악 의무에 관한 규정도 삭제되었다. 입양서류의 비치의무는 규정되었으나, 보관기관 등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았다.

#### 4) 1996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1996. 1. 6.부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름이 바뀌어 시행되었고 처음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했다. 2005. 3. 31. 개정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입양정책, 사후관리, 조사, 지원 등의 책임을 명시하였다.

[표3-3] 1996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3조)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전하게 양육되어야 하며,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경우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지원 입양정책 수립 / 실태조사 / 사후관리 등의 의무를 규정
양자될 자격 (제4조)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자 /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한 자 / 친권상실의 신고를 받은 자의 자
양친될 자격 (제5조)	① 본국법상 양친요건 충족 ② 충분한 재산 ③ 가정 화목, 양자 부양에 현저한 장애 없을 것 ④ 양자를 인권유린 우려가 있는 직업에 사용하지 않을 것 ⑤ 양자의 종교자유 인정, 양육, 교육 가능
입양의 동의 (제6조)	부모(부모가 사망 등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의 동의 필요 / 15세 이상인 자를 양자로 하는 경우 양자될 자의 동의 필요
입양의 효력발생 (제7조, 시행령 제2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 발생 양자될 자의 자격에 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 의무 양친될 자의 자격에 관하여 입양기관의 장이 확인 의무

<p>입양기관 (제10조, 제12조, 제15조)</p>	<p>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만이 입양알선 가능  <u>입양의뢰된 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모에게 충분한 입양상담을 제공하고,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 직계존속을 찾는 노력을 하여야 함</u>          양친이 될 자에게 입양 전에 아동양육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으로서의 직무 수행  <u>입양기관은 입양성립 후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상호적응상태 관찰, 양육 정보 제공, 수시 상담 창구 개설 등)</u>          입양기관은 입양관계서류를 영구적으로 보존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입양기관은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선고를 받은 자로서 그 보호자가 입양기관에 보호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p>
<p>외국인이 국내에서 입양(제16조)</p>	<p>외국인이 국내에서 양친이 되는 경우 가정법원에 입양신청 후 법원이 이를 인가</p>
<p>외국인이 국외에서 입양(제17조)</p>	<p>입양알선기관의 장은 양자될 자의 해외이주허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아와 친권자가 확인되지 않은 요보호아동으로서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입소된 날부터 6월 이내인 기아에 대하여 해외이주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입양알선기관은 양자가 외국국적 취득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법무부장관은 양자의 국적을 제적할 것을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지</p>
<p>벌칙 (제27조, 제28조)</p>	<p>허가 없이 입양 알선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입양기관의 중요사항 변경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양자의 비밀 누설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양벌규정 신설</p>

1996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처음 개정되었을 당시의 시행령은 양자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보호시설장이나 입양기관장이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확인받도록 되어있었다. 2005. 9. 30. 개정된 동법 시행령에서는 양자가 될 자의 자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도록 규정하였다. 1996. 1. 6.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름을 바꾸어 개정하면서 입양기관의 사후관리의무를 부여하였고 그 기간은 입양 후 6개월, 국외입양 시는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로 정하였고 입양관계서류를 영구적으로 보존하도록 규정하였다. 국적취득 후에는 입양기관에서 모국방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 법이 2005. 3. 31. 다시 개정되면서 입양기관에 입양될 자의 직계존속을 찾는 노력을 하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외국인인 양부모가 아동을 직접 만나보지 않고 국외에서 입양할 수 있는 ‘대리입양’ 제도가 유지되었고, 이 경우 국내 가정법원의 인가를 받는 절차를 밟지 않아도 아동을 외국으로 출국시킬 수 있었다. 대한민국 국가기관에 의한 양친에 대한 심사 규정은 없었고, 양친의 국적국의 조사보고서로 심사를 갈음할 뿐이었다. 입양 정보의 보관의무를 입양기관이 전적으로 담당하여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는

부재했으며, 입양인이 입양된 후 입양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

## 5) 2012년 입양특례법

2011. 8.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입양특례법으로 법의 명칭을 변경하고 그 내용도 전면 개정되어 2012. 8. 부터 시행되었다. 당시 개정이유로는 ‘아동입양의 절차가 아동의 복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최선의 아동 보호는 출신가정과 출신국가 내에서 양육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 패러다임으로 국가 입양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표3-4] 2012년 입양특례법

입양의 원칙 (제4조)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여야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와 지원 입양정책 수립 / 실태조사 / 사후관리 등의 의무를 규정 국가는 입양아동 등에 대한 사후서비스 제공과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입양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해외입양을 감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양자 될 자격 (제9조)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자 /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한 자 /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자
양친 될 자격 (제10조)	① 본국법 상 양친요건 충족 ② 충분한 재산 ③ 범죄나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④ 양자를 인권유린 우려가 있는 직업에 사용하지 않을 것 ⑤ 양자의 종교자유 인정, 양육, 교육 가능
가정법원의 허가 (제11조)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 양자, 양친될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갖추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양자될 자의 자격에 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 의무 양친될 자의 자격에 관하여 입양기관의 장이 확인 의무
입양의 동의 (제12조, 제13조)	부모(부모가 사망 등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 필요 2차적 입양 동의자에서 직계존속 제외 13세 이상인 자를 양자로 하는 경우 양자될 자의 동의 필요 입양 동의는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전까지 철회가 가능 입양 동의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함 입양기관은 입양 동의 전에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함

<p><b>입양의 효력발생</b> (제7조, 시행령 제2조)</p>	<p>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효력 발생</p>
<p><b>파양</b> (제17조)</p>	<p>양친, 양자, <u>검사는 양친이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음</u></p>
<p><b>외국인이 국내에서 입양</b>(제18조)</p>	<p>외국인이 국내에서 양친이 되는 경우 가정법원에 입양신청 후 법원이 이를 인가</p>
<p><b>외국인이 국외에서 입양</b> (제19조)</p>	<p>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절차를 진행 입양알선기관의 장은 양자될 자의 해외이주허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아와 친권자가 확인되지 않은 요보호아동으로서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입소된 날부터 6월 이내인 기아에 대하여 해외이주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u>입양기관의 장은 발급된 해외이주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신청하여야 함</u> 입양알선기관은 양자가 외국국적 취득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법무부장관은 양자의 국적을 제적할 것을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지</p>
<p><b>입양기관</b>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p>	<p>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만이 입양알선 가능 입양의뢰된 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모 등 직계존속을 찾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함 양친될 자의 자격에 관하여 입양알선기관의 장이 확인 의무 양친이 될 자에게 입양 전에 아동양육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아동과 가족에 관한 정보를 아동권리보장원에 제공하여야 함 <u>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업무에 관한 사항을 전자문서 등으로 기록하여야 함</u> 입양기관은 입양관계서류를 영구적으로 보존하여야 함(폐업시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으로서의 직무 수행 입양기관은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선고를 받은 자로서 그 보호자가 입양기관에 보호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u>입양기관은 입양성립 후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상호적응상태 관찰, 양육 정보 제공, 수시 상담 창구 개설 등)</u></p>
<p><b>아동의 인도</b> (제31조)</p>	<p>외국인이 긴급한 보건의학적 이유로 입국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의 인도는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져야 함</p>
<p><b>입양정보의 공개</b> (제36조)</p>	<p>양자가 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에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다만, 친생부모는 입양정보의 세부 항목별로 공개여부에 대한 동의권이 있음(시행령 제15조) 친생부모가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p>
<p><b>벌칙</b> (제44조, 45조)</p>	<p>법원의 허가 없이 입양을 행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 없이 해외입양을 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입양기관의 중요사항 변경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양벌규정 존재</p>

2012년 입양특례법을 개정하면서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 규정을 두었다. 또한 국내입양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국외입양은 보충적으로 실시하며 장차 국외입양을 감축해야 함을 밝혔다.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소위 ‘입양숙려제’가 도입되었고, 입양기관으로 하여금 입양동의 전에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입양의 법률적 효력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명시했다(제13조).

국가의 책무에는 입양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었다. 또한 중앙입양원(현재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하도록 규정하여 입양에 대한 일원화된 관리를 시도하였다. 국내·국외입양을 불문하고 양자, 양친될 자의 자격에 대해 가정법원의 심사를 받고 입양을 허가받도록 하였다. 입양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해, 과거 호적부 혹은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인 기록에 입양부모를 아동의 친생부모로 허위로 기록하는 불법적인 관행이 철폐될 수 있도록 했다.<sup>5)</sup> 또한 입양허가 전까지 친생부모가 입양 동의에 대한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정하였는데, 국외입양의 경우 2015. 12. 22.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사후관리 의무와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 [표3-5]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및 제3호의2

3. 국외입양 사후관리 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입양아동의 신체 발달, 정서 발달 및 양친과의 유대관계 등 입양 후 입양아동에 관한 현황
  - 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의2. 국외입양 사후관리 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사후관리의 횟수 및 방법
  - 나. 한국 입양아동에 특화된 사후관리 방안
  - 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친 될 자에 대한 아동의 인도는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입양 기관에게 입양아동의 가족에 대한 정보를 중앙입양원(현재 아동권리보장원)에 제공하도록 하였고, 입양인이 입양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2012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입양절차 전반에 입양기관의 역할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을 알선하기 위

5) 소라미, “아동이익최우선의 원칙에서 바라본 아동 입양제도”,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재단법인 동천, (2020), 127.

해 양자될 아동을 인도받았을 때에는 그 인도받은 날부터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그 아동의 후견인이 된다. 입양기관이 입양 과정에서 입양에 대한 상담, 교육 및 결연과 입양인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주도하고 있으며, 후견직무나 가족관계등록 창설에 대한 권한 또한 유지되고 있다.

## 나. 해외입양 관련 입양특례법 외 국내법과 그 내용

시설보호 아동의 구 호적 창설에 관하여는 「호적법」(이하 “호적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및 이에 대한 법원 규칙과 선례를 근거로 들 수 있다. 입양의 동의에 관련된 후견인 규정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이하 “시설미성년후견법”)과 「아동복지법」(이하 “아동복지법”)이 있다. 기록의 조작에 관하여 「해외이주법」(이하 “해외이주법”)에서도 관련 규정을 찾아볼 수 있다. 불명확한 양도 또는 제3자에 의한 불법양도에 관하여 민법과 시설미성년후견법, 아동복지법,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에 근거가 있다. 사후관리와 재외국민 보호 등에 대해서는 민법과 헌법에서 관련 책무를 확인할 수 있다.

### 1) 고아호적 창설 및 신분의 교체

#### 가) 시설미성년후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1961. 8. 31. 시행 법률 제703호	1998. 1. 1. 시행 법률 제5454호	2000. 7. 13. 시행 법률 제6148호	2012. 10. 22. 시행 법률 제11517호
제2조 (후견인) ①공설의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의 직무를 행한다.	제2조 (후견인) ①공설의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의 직무를 행한다.	제3조(후견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된다.	제3조(후견인)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된다.

1961. 8. 31. 시행 법률 제703호	1998. 1. 1. 시행 법률 제5454호	2000. 7. 13. 시행 법률 제6148호	2012. 10. 22. 시행 법률 제11517호
<p>②사설의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의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후견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지정한다.</p>	<p>②사설의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후견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지정한다.</p> <p>제3조 (고아 아닌 자의 후견인) 보호시설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본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p>	<p>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후견인을 지정한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로서 고아 아닌 자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후견인을 지정한다.</p> <p>③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에 대하여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시행령 제3조 (후견인지정신청) ①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의 후견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시행령 제3조 (후견인지정신청) ①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의 후견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시행령 제3조 (후견인의 지정 등) ①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당해 미성년자의 호적등본을 첨부(호적의 기재가 없는 자를 제외한다)하여 당해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시행령 제3조(후견인의 지정 등) ①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미성년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1961. 8. 31. 시행 법률 제703호	1998. 1. 1. 시행 법률 제5454호	2000. 7. 13. 시행 법률 제6148호	2012. 10. 22. 시행 법률 제11517호
<p>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로서 고아가 아닌 자의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의하여 미리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후 그 지정서를 첨부하고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설의 보호시설의 장이 당해 시설에 수용중인 미성년자로서 고아가 아닌 자의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③전항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p> <p>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그 고아 또는 고아 아닌 자의 호적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로서 고아가 아닌 자의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의하여 미리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후 그 지정서를 첨부하고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설의 보호시설의 장이 당해 시설에 수용중인 미성년자로서 고아가 아닌 자의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③제2항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p> <p>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그 고아 또는 고아 아닌 자의 호적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②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로서 고아가 아닌 자의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미성년자로서 고아가 아닌 자의 호적등본(호적의 기재가 없는 자를 제외한다)</p> <p>2. 후견인의 지정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자에 한한다)</p>	<p>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항의 신청에 따라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후견인 지정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를 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과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p> <p>③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받은 후견인 지정 통보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및 해당 미성년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p>

시설미성년후견법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이다.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의 권한으로 입양에 동의하기도 하고, 기아호적을 창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견인 지정을 위한 첨부서류를 확인해 보았다. 고아 또는 고아 아닌 자 모두 호적등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961년에 시행된 이후 2000년에 개정되기 전까지는 호적등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가 ‘부득이한 경우’라고 넓게 정해져 있었다. 즉, 미아(실종아동)도 호적등본 첨부가 부득이하게 어려운 경우라면 보호시설의 장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2000년에 시설미성년후견법을 개정하면서 ‘부득이한 경우’를 ‘호적의 기재가 없는 자’로 변경하여 예외의 범위를 한정했다.

나) 시설미성년후견법 시행령 제3조의2 (현재 제4조)

1977. 3. 18.시행 대통령령 제8510호 (본조 신설)	2000. 7. 13. 시행 대통령령 제16886호	2014. 11. 19. 시행 대통령령 제25739호
<p>제3조의2 (부양의무자확인을 위한 공고등) ①보호시설의 장은 법 제2조 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견인이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고문 4부를 당해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서울특별시 및 부산시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결정된 날로부터 20일내에 제출하여 부양의무자 확인의 공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보호시설에 수용 중에 이미 공고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제1항의 공고의뢰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공고문을 시·군·구의 게시장에 15일간 공고하고, 지체없이 공고문 2부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그 중 1부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보건사회부장관과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공고문을 일반인의 열람에 공하여야 한다.</p> <p>제4조(후견인의 직무집행) 법 제2조 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견인으로 된 자의 직무집행은 민법의 후견인직무집행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다만, 피후견인의 입양에 관한 직무집행은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이를 행하여야 한다.</p>	<p>제4조 (부양의무자 확인의 공고 등) ①보호시설의 장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견인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고문 2부를 당해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부양의무자 확인의 공고를 의뢰한다.</p> <p>②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5일을 말한다.</p>	<p>제4조(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① 보호시설의 장은 법 제3조에 따라 후견인으로 지정되거나 후견인 지정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받은 날 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고문 2부를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의뢰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을 말한다.</p>

보호시설장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의 의무를 형식적으로 부여하고 있었다. 15일 이상 공고한 후 곧바로 입양에 관한 직무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15일이란 기간도 짧아 입양업무만 신속하게 진행될 뿐 행정절차에서 아동 최상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고려할 시간적 여유를 보장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보건사회부장관과 도지사가 공고문을 열람하는 방법 또한 “일반인의 열람에 공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당시 시민들이 위 조항에 따라 공고문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낮아,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었을 우려가 있다.

다) 호적선례

<p>보호시설에 있는 기아, 고아 등을 입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그들에 대한 취적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 제정 1989. 10. 13. [호적선례 제2-147호, 시행]</p>	<p>양친자관계와 친생자관계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하고, 양자는 출생으로 인하여 생가(부가, 모가 또는 일가창립된 가)에 소속되어 있다가 입양으로 인하여 비로서 양가에 소속되는 것이므로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고아 등에 대하여도 생가에 해당되는 호적을 가지게 한 다음 입양신고로써 양가에 입적시켜야 한다. 보호시설에 있는 기아, 고아 등을 입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그들에 대한 취적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 제정 1989. 10. 13. [호적선례 제2-147호, 시행]</p>
<p>무적자(본적이 없는 자)의 취적절차 제정 1988. 8. 25. [호적선례 제2-349호, 시행]</p>	<p>무적자(본적이 없는 자)는 취적하려는 자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취적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 후 1월 이내에 그 허가서등본을 첨부하여 사건본인(취적허가 받은 자)의 주소지, 현재지 또는 취적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여 호적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취적은 무적자만 할 수 있고 국내 어딘가에 호적이 있는 자는 할 수 없으므로 무적자 아닌 본적불명자는 취적할 수 없다.</p>
<p>본적불명자도 취적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8. 4. 6. [호적선례 제2-352호, 시행]</p>	<p>취적은 무적자 즉 한국내에 본적이 없는 자가 본적을 가지려는 행위이므로 무적자에 대하여만이 이를 할 수 있고, 본적불명자는 호적의 유무가 판명될 때까지 취적을 할 수 없을 것이다.</p>
<p>호적이 편제되어 있는 자(자)가 신분사항을 위장하여 취적허가를 받아 별도의 새로운 호적을 편제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제정 1993. 7. 29. [호적선례 제3-634호, 시행]</p>	<p>호적이 편제되어 있는 자(자)가 자신의 신분사항을 위장하여 법원으로부터 취적허가를 받아 취적신고를 하여 새로운 호적을 편제하였다면, 그러한 호적은 동일인에 대한 중복호적의 기재일 뿐만 아니라 위조된 신청에 의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실제의 신분관계와 상이한 내용의 호적기재가 된 것으로서, 이는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사건본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인은 호적비송절차에 의하여 그 호적을 말소정정할 수 있을 것이다. (후략)</p>
<p>일반무적자가 부모를 알고 있다고 하여 부모의 이름을 기재한 취적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제정 1987. 12. 29. [호적선례 제2-358호, 시행]</p>	<p>일반무적자가 전호주 및 부의 성명 호주상속사유 등의 사유를 아는 것은 사실상에 불과할 뿐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1923.7.1. 이후의 호적이 없음) 귀원 질의서증 “갑설”이 타당하다. 87.12.29.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장 대 부산지방법원장 질의회답 질의요지 : 신청인 및 사건본인 박진옥(1954.3.20. 생)은 일반무적자(고아)로서, 사건본인이 4세때 무적자인 부 박상만이 사망하고 5세때 역시 무적자인 모 김경순이 사망한 사실, 1958.5.15. 전호주 사망으로 호주상속된 사실 등 실제 신분관계와 부합되는 사실을 사건본인이 알고 그 사실 등에 기하여 취적허가신청을 한 경우</p>

<p>일반무적자가 부모를 알고 있다고 하여 부모의 이름을 기재한 취적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제정 1987. 12. 29. [호적선례 제2-358호, 시행]</p>	<p>갑설-사건본인이 1923.6.30. 이전 (사실혼을 인정한 민적법 시행당시)에 출생한 무적자의 취적일 때에는 위 신청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취적 신고에 의하여 호적에 기재할 수 있으나, 사건본인이 호적령 시행 이후(1923.7.1.) 출생한 무적자의 취적일 때에는 법률상 부부가 아닌 부모의 성명, 호주상속사유 등을 기재한 신분표를 첨부한 신청서에 의해서는 허가할 수 없다(78년판 예규 974-2항 가, 나, 라, 동 384항). 설사, 일반 무적자가 실제의 신분관계와 부합되는 무적자인 사망한 부모와 사망한 모의 성명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호적을 편제할 때에는 <u>부모의 성명란은 공란으로 하고 부모와의 관계란에는 남 또는 여도 기재해야 하므로(78년판 예규 398항) 부모의 성명을 기재한 일반무적자의 취적허가신청은 허가 할 수 없다.</u></p>
<p>부·모를 알고 있는 혼인중의 자인 무적자의 취적과 성과 본 창설의 선행 여부 제정 1993. 1. 25. [호적선례 제3-479호, 시행]</p>	<p>미수복지구에 본적을 두고 있던 부(부)와 서울에 본적을 두었던 모(모)사이에 태어난 혼인중의 자가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있던 중(부모 혼인 : 1944. 3. 31, 출생년월일 : 1946. 9. 24. 생, 6·25사변으로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현재 그에 대한 출생신고의무자가 아무도 없어 취적절차에 의하여 호적을 가지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는 <u>부의 성(성)과 본(본)을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성·본 창설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취적허가만을 얻어 취적신고를 함으로써 그를 후주로 하는 신호적(부는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부의 호적을 편제할 길이 없기 때문임)을 편제할 수 있을 것이다.</u></p>

이상과 같이 다양한 호적선례를 보면, ① 입양 전에 반드시 생가의 호적을 창설해야 하고, ② 취적은 무적자만 할 수 있고, 혹시라도 호적이 어딘가 있는 본적 불명자는 취적을 할 수 없다. ③ 그런데 신분을 위장하여 만든 호적은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과거부터 입양 전에 생가로 취적한 후에 입양되면서 입적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었다. 또한 호적(현재는 가족관계등록)이 있거나 있을 것이 예상된다면 이는 본적 불명자에 해당하므로 취적할 수 없다. 그리고 신분을 위장하여 만든 호적은 법률상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분을 속이는 기아호적이나 새로운 명의의 호적을 얻는 것은 법률상 무효이다. ④ 다만 부모의 이름만 아는 경우나 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 부모가 무적자인 경우에는 부모의 이름을 공란으로 남겨두도록 하였다.

## 2) 기록의 조작 및 위조

### 가) 해외이주법 제3조 제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호

1973. 2. 16. 시행 법률 제2531호	1982. 10. 3. 시행 법률 제3552호	1999. 5. 6. 시행 법률 제5754호
<p>제3조 제9호 (이주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본법에 의한 해외이주의 자격이 없다. 다만,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라도 이주상대국가에서 그 자의 이주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려가 있는 자 9. 기타 해외이주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자</p> <p>시행규칙 제4조 제6호(해외이주 부적합자의 범위) 법 제3조 제9호에서 "기타 해외이주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허위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를 하려고 하는 자</p>	<p>제3조 제9호(이주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해외이주의 자격이 없다. 다만,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라도 이주상대국가에서 그 자의 이주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9. 기타 해외이주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자</p> <p>시행규칙 제4조 제2호 (해외이주 부적합자의 범위) 법 제3조제9호에서 "기타 해외이주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허위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를 하려고 하는 자</p>	<p>제3조 (해외이주의 제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자</li> <li>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li> <li>3. 삭제</li> <li>4. 삭제</li> <li>5. 삭제</li> <li>6. 삭제</li> <li>7. 삭제</li> <li>8. 삭제</li> <li>9. 삭제</li> </ol>

출생신고나 부모 등에 관한 기록이 조작되거나 위조되어 해외로 입양되는 경우, 해외이주법의 이주자격이 없는 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런 경우 아동이 해외입양 당시 이주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실효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입양특례법이나 시설미성년후견법 등에 의해 '외관상' 기아호적, 입양동의 등의 필요한 서류를 갖춘 경우, 서류에 대한 형식적인 심사만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이 규정은 1999. 5. 6.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 나) 아동복지법 제10조의2

2019. 7. 16. 시행 법률 제16248호(본조신설)	2021. 6. 30. 시행 법률 제17784호(현행)
<p>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p> <p>② 보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9. 입양특례법에 따른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 사후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p> <p>가. 입양아동·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p> <p>나. 입양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계</p> <p>다.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p> <p>라.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p>	<p>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p> <p>② 보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9. 입양특례법에 따른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 사후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p> <p>가. 입양아동·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p> <p>나. 입양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계</p> <p>다.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p> <p>라.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p>

기존 중앙입양원의 업무를 2019년에 설립 및 운영이 시작된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하였고, 입양아동의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도 아동권리보장원이 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 3) 불명확한 양도, 제3자에 의한 불법양도

#### 가) 민법 제945조

1960. 1. 1. 시행 법률 제471호	2013. 7. 1. 시행 법률 제10429호	2021. 1. 26. 시행 법률 제17905호
<p>제945조(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의무)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제913조 내지 제915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그러나 친권자가 정한 교양방법 또는 거소를 변경하거나 피후견인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하거나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것은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p>	<p>제945조(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의무) 미성년후견인은 제913조부터 제915조까지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친권자가 정한 교육방법, 양육방법 또는 거소를 변경하는 경우</li> <li>2. 미성년자를 감화기관이나 교정기관에 위탁하는 경우</li> <li>3.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경우</li> </ol>	<p>제945조(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의무) 미성년후견인은 제913조 및 제914조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친권자가 정한 교육방법, 양육방법 또는 거소를 변경하는 경우</li> <li>2. &lt;삭제&gt;</li> <li>3.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경우</li> </ol>

해외입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1970년대 내지 1980년대 당시 시설미성년후견법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 후견인이 아동의 거소 등을 변경할 권한이 있어 일단 시설에 아동들이 입소하고 나면, 시설에서 입양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또한, 아동에게 친권자가 있는 경우 해외입양은 친권자가 정한 거소의 변경에 해당하여 친족회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져야 하지만, 기아호적이 창설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해당 조항이 무의미한 상태에서 해외입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 나) 민법 제870조

1960. 1. 1. 시행 법률 제471호	1991. 1. 1. 시행 법률 제4199호	2013. 7. 1. 시행 법률 제11300호
<p>제870조 (입양의 동의) ①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p> <p>②제867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직계존속의 동의에 준용한다.</p>	<p>제870조 (입양의 동의) ①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p> <p>②제1항의 경우에 직계존속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존속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p>	<p>제870조(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모가 제869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경우</li> <li>2. 부모가 친권상실의 신고를 받은 경우</li> <li>3.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li> </ol> <p>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li> <li>2.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li> </ol> <p>③ 제1항에 따른 동의는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p>

민법상 입양의 경우 구 민법에서는 '양자될 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최소한 의견을 묻는 절차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았다. 위 규정과 유사한 입양특례법 제2조 또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동의를 얻은 18세 미만의 자'를 양자의 자격으로 정하여 양자될 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이 조항은 2013년이 되어서야 13세 이상인 경우 아동의 동의를 요한다는 규정으로 개정되었다. 민법상 입양의 동의는 부모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혹시 부모가 사망 등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직계존속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입양특례법도 부모의 동의를 우선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다.

#### 4) 실종 및 연장아동

##### 가) 실종아동법

2021. 6. 9. 시행  
법률 제17575호[법률 제7560호, 2005. 5. 31. 첫 제정]

제6조(신고의무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찰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신고체계(이하 "경찰신고체계"라 한다)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2.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3.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6.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등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조치할 때에는 아동등의 신상을 기록한 신고접수서를 작성하여 경찰신고체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을 보호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아동등의 신상을 기록한 카드(이하 "신상카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생 후 6개월이 경과된 아동의 출생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아동의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하며,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찰청장이 해당 아동을 실종아동등으로 확인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실종아동등의 신상카드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와 제3항에 따른 신상카드 제출의무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상카드의 작성·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제17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및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종아동법이 2005년에야 제정되어, 법 제정 이전의 실종아동 등의 경우 신고의무나 부모를 찾아주기 위한 조치 등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당시 가족들이 아동들을 찾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입양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 나) 형법 제287조

1953. 10. 3. 시행 법률 제293호	2013. 6. 19. 시행 법률 제11731호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하면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 해당한다. 미성년자의 약취·유인에 관해서는 형법이 처음 제정된 1953년부터 현재까지 조문의 개정이 없었다. 여기서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 등 참조). 또한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꺾어,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에서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해외입양을 목적으로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아동의 의사에 반해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이탈시켜 시설장 등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에 따라 처벌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 다) 아동복지법 제15조 제2항

2021. 3. 30. 시행 법률 제17784호
제15조(보호조치)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외의 자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입양기관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 이외의 자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해야 한다. 입양을 포함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을 공공만이 가능하도록 창구를 일원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21. 6. 30.부터 친생

부모 등 보호자의 입양상담은 입양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맡게 되었으며,<sup>6)</sup> 지방자치단체장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관련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입양 동의권이 있는 친생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2).

## 5) 추방

### 가) 헌법 제2조 및 제10조

1972. 12. 27. 시행 헌법 제8호	1980. 10. 27. 시행 헌법 제9호	1988. 2. 25. 시행 헌법 제10호
제2조 대한민국의 국민의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의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재외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8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9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해외입양아동이 입양된 국가의 국적을 온전히 취득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즉, 국가는 해외입양인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재외국민으로서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었으며, 구체적으로는 개별적인 입양 현황과 국적취득 상황 등을 파악해야 했다.

6)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안내] '21. 6. 30.부터 입양상담 절차가 변경됩니다.", [https://ncrc.or.kr/ncrc/na/ntt/selectNttInfo.do?mi=1053&bbsId=1021&nttSn=2637&catGori=&tabName=\(2021, 11, 21, 최종확인\)](https://ncrc.or.kr/ncrc/na/ntt/selectNttInfo.do?mi=1053&bbsId=1021&nttSn=2637&catGori=&tabName=(2021, 11, 21, 최종확인))

## 나) 민법 제882조

1960. 1. 1. 시행 법률 제471호	2013. 7. 1. 시행 법률 제11300호
<p>제882조(외국에서의 입양신고) 제814조의 규정은 입양의 경우에 준용한다.</p> <p>제814조 (외국에서의 혼인신고) ①외국에 있는 본국민사이의 혼인은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고를 수리한 대사, 공사 또는 영사는 지체없이 그 신고서류를 본국의 소관호적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제882조(외국에서의 입양 신고) 외국에서 입양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814조를 준용한다.</p> <p>제814조(외국에서의 혼인신고) ①외국에 있는 본국민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고를 수리한 대사, 공사 또는 영사는 지체없이 그 신고서류를 본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p>

외국에서 국민 사이에 입양결연을 하는 경우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과의 국민 사이의 입양에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민인 아동이 대사관에 방문하여 입양절차를 완료했다거나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법원의 인가나 입양기관의 점검 없이 입양된 아동이 현지에서 국적취득을 포함해 사후적인 지원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 6) 사후관리

1960. 1. 1. 시행 법률 제912호	1981. 4. 13. 시행 법률 제3438호	2021. 6. 30. 시행 법률 제17784호
<p>제8조 (구청장, 시장, 군수가 취할 조치) ①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가 그 관할구역내에서 요보호아동 또는 요보호임산부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일시보호하고 지체없이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보호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구역내의 아동복지시설에 그 보호를 위탁할 수 있다.</p>	<p>제11조 (보호조치) ①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요보호아동 또는 요보호임산부를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아동 및 그 보호자에 대하여 훈계하거나 서약서를 제출시키는 것</li> <li>2.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지도를 행하게 하는 것</li> </ol>	<p>제15조(보호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li> </ol>

1960. 1. 1. 시행 법률 제912호	1981. 4. 13. 시행 법률 제3438호	2021. 6. 30. 시행 법률 제17784호
<p>제9조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취할 조치)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요보호아동 또는 요보호임산부에 대하여는 보고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1. 아동 및 그 보호자에 대하여 세유처분을 하거나 서약서를 제출시키는 것                  2.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아동 또는 보호자에 대한 지도를 행하게 하는 것                  3.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그 보호를 위탁하는 것                  4. 보육시설, 조산시설, 정신박약아보호시설, 맹농아아양호시설, 신체허약아보호시설, 지체불자유아보호시설, 모자보호시설, 탁아시설, 교호시설 또는 부랑아보호시설에 입소시키는 것</p> <p>제10조 (아동에 대한 일시위탁보호)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조의 조치를 취할 때까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일시위탁하여 보호하게 할 수 있다.</p>	<p>3.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4.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그 보호를 위탁하는 것                  5. 특수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아동 및 임산부에 대하여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성격과 행동에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하여 다른 선도기관에 의뢰하는 것</p> <p>②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아동 또는 임산부를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하게 할 수 있다.</p>	<p>2. 「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3.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p> <p>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외의 자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p>

아동의 보호는 1960년 「아동복지법」이 제정될 때부터 국가의 책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가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인지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결정해 왔던 것이 그 예이다. 2011. 8. 4. 개정되어 2012. 8. 5. 시행된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도 아동을 위한 보호조치 중 하나로 열거되었다. 입양도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아동보호조치의 하나이므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계획 수립이나 사후관리 등이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다. 소결

아동 또한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로 국가는 이러한 아동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책무를 진다(제10조). 특히 헌법은 해외로 입양된 아동이 수령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는 재외국민의 지위를 갖는 입양인을 보호할 의무를 요청하고 있다(제2조 제2항). 아동, 그리고 ‘국외’로 입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나의 출생이 등록될 권리, 정체성에 관한 권리, 그리고 국적을 취득하고 부모를 알 권리를 차별받아서서는 아니된다(제11조).

해외입양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으로는 입양특례법이 있다. 이 법은 고아입양특례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여러 번 명칭이 변경되었지만 처음 만들어진 목적은 ‘해외입양을 위한 간이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외에도 민법, 구 호적법과 가족관계등록법, 아동복지법, 실종아동법, 시설미성년후견법 등을 관련 법령으로 꼽을 수 있다. 국가는 앞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 상황을 파악하거나 해결하지 못했고, 오히려 문제를 촉진하는 경우도 있었다.

**1) 우선, 기아호적과 호적 창설의 문제가 있다.** 구 호적법의 선례는 무적자를 엄격하게 보았고, 호적이 불명한 경우에는 호적을 창설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실제 무적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1977년 만들어진 시설미성년후견법 시행령이나 1977년 이후의 입양특례법은 약 14일에서 15일 정도의 공고기간을 두고 부양의무자를 조사하는 것으로 무적자임을 형식적으로 확인해왔다. 이렇게 무적자임을 확인한 이후에는 시설미성년후견법에 따르면 보호시설의 장이,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입양기관의 장이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고, 입양기관의 장은 1977년 입양특례법 이후 현재까지 무적자인 아동의 일가창립, 추적 또는 가족관계등록 창설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한편 구 호적법 선례에 따르면 이미 호적이 있는데도 신분을 위장하여 새로 호적을 만드는 것은 법률상 무효이므로 말소해야 하지만, 이와 같은 말소 절차가 진행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기록의 조작 또는 위조의 문제가 있다.** 1977년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에서 처음으로 입양알선기관이 입양서류를 비치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2012년에 중앙입양원이 설치되면서 입양기록이 각 입양기관에서 중앙입양원으로 이관되도록 하였으며, 중앙입양원을 통해 입양인이 자신의 정보를 공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입양기관이 폐업하지 않는 한 수십 년간 축적한 입양기록을 중앙입양원이 강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실정이다. 기아호적의 창설이나 신분의 교체도 기록의 조작 또는 허위기재된 서류로 볼 수 있다. 1999. 5.까지는 허위로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면 해외이주법상 이

주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기아호적을 가지고 출국하려 하거나 타인의 신분과 바꾸어 출국하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아동의 출국이 불가능했어야 한다.

3) 또한 입양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신분이 바뀌는 문제들이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해외이주법상 이주자의 결격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양친과 양자가 사전에 만나 애착을 형성하고 가정법원의 인가를 받아 부모와 자녀관계를 형성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오로지 대리인인 입양기관이 절차를 진행하여 아동이 출국하게 되는 ‘대리입양’ 제도와 연결된다. 오로지 ‘효율성’만을 앞세운 이러한 대리입양 제도는 부적격한 양부모로 입양될 경우 발생할 위험을 전적으로 아동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에 반한다. 1977년 이후 입양특례법이 2012년에 개정될 때까지 외국인이 국외에서 입양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고도 입양기관이 이주허가를 받아 아동을 출국시킬 수 있었다.

4) 한편 불명확한 양도 및 제3자에 의한 불법양도의 문제도 지적할 수 있다. 기아호적을 창설한 이후에는 서류상 부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모의 동의가 없이도 손쉽게 입양될 수 있게 된다. 부모가 아닌 제3자가 불법으로 입양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입양특례법은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거나 친권상실 결정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양자가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부모가 있는 아동이라면 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다. 한편 민법은 후견인이 친권자가 정해놓은 거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친족회나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해외로 입양된 아동 대다수의 경우 기아호적이 창설되면서 친권자의 동의를 얻는 조항이나 후견인의 권한을 견제하는 조항은 작동할 수 없었다.

5) 실종아동의 입양 문제와 관련하여, 2005년 입양특례법을 개정하면서 입양기관이 부모 등 직계존속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의무로 정하였다. 2005년에 제정된 실종아동법에는 미신고 보호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고, 2021년부터 시행된 아동복지법은 입양기관 등 지방자치단체장 이외의 자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도록 개정되었다. 입양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개입 없이는 입양을 고민하는 친생부모 상담을 하거나 보호대상아동을 인수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리고 1953년 이후 지금까지 형법에서 미성년자의 약취·유인을 범죄로 정하여 처벌하고 있지만 해외입양 과정에서 관련 규정으로 처벌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6) 입양 후 추방과 관련해 국적 취득을 확인하도록 의무를 명시한 규정들이 있었다. 1966년 고아입양특례법을 개정하여 입양알선기관을 허가제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입양알선기관에게 입양아동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 규정은 1977년 입양특례법에서는 사라

졌다가 1996년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입양기관은 국외로 입양되는 자가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사후관리를 하도록 다시 정하게 되었다. 민법은 외국에서 국민과 국민 사이의 입양을 하는 경우 영사관 등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국적’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국가로부터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조치이며 특히 국경을 넘어 국외로 입양된 아동의 경우에는 새로운 국가에서의 보호 및 복지체계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서 국적 취득은 더욱 중요하다. 입양절차 전체를 관장했던 입양기관, 나아가 국가는 이러한 입양 이후 국적 취득 확인에 관한 책무를 이행했어야 한다.

7) **마지막으로 입양부모의 적격성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았다.** 우선 아동복지법은 처음 입법된 1960년부터 아동의 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해왔으며, 2012년부터는 입양도 아동보호조치의 하나로 제시했다. 입양이 국가가 책임지는 아동보호체계의 일부라면, 입양부모의 적격성에 대한 심사와 사후관리는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1961년 고아입양특례법은 아동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적절한 교육과 보호를 제공하도록 양부모에게 서약하도록 하거나 이를 공공기관이 보증하게 하였다. 또한 양부모에게 대한민국이 요구하면 아동의 양육상황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서약하도록 했으며, 만일 양부모가 아동의 인권을 유린하는 경우 다른 가정에게 입양되도록 요구하는 권리도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이 점차 삭제되고, 1977년 입양특례법에서는 아동의 권리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대리입양’까지 허용하였으며, 양부모에 대한 검증을 해당 국가의 검증보고서로 대체하게 되었다. 입양알선기관의 입양된 아동의 신상을 수시로 파악할 의무도 1977년에 함께 삭제되었다. 양친의 자격 요건은 이후로도 크게 변화는 없었으며, 입양기관의 사후관리에 관해서는 2015년이 되어서야 입양특례법 시행령 개정으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기에 이르렀다.

## 3.2. 해외입양절차에 관한 국제인권규범 검토

### 가. 해외입양과 유엔 아동권리협약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1990년부터 국제인권조약으로서 효력을 갖게 된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현재까지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국제조약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보

아 권리를 구체적으로 체계화한 문서이다. 이 중 특히 제7조는 아동의 정체성의 권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1) 이름을 가지고 국적을 취득하며, 부모를 알고 부모에게 양육받을 권리

### 제7조

1.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이름을 갖고, 국적을 취득하며, 가능한 부모를 알고, 부모에게 양육받을 권리가 있다.
2. 당사국은 국내법 및 이 분야의 관련 국제규범에 따른 의무에 근거하여, 특히 무국적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권리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7조는 아동의 이름을 갖고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정하고 있으며,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부모에게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에게 이러한 권리를 보장할 의무는 부모 뿐 아니라 국가 역시 지고 있어, 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은 아동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가가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을 때에는 태어나도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출생 미등록 아동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아동은 국가로부터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예방접종 등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적절한 시기에 교육을 받을 기회에서도 배제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출생등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의 아동은 불법 또는 탈법적인 방법으로 입양되거나 유기되는 등 더욱 심각한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협약 제7조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현행 출생신고 제도를 살펴보면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해 처리되며,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일부로서 존재한다. 이 가족관계등록법이 ‘국민’의 출생에 대한 등록과 그 증명에 대한 사항만을 규정한다고 명시함에 따라(법 제1조)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아동이 보편적으로 출생을 신고, 등록하고 이를 증명받을 수 있는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에 관계 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이 등록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sup>7)</sup>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외에도 2017년 대한민국의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에도 여러 국가가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의 도입을 권고하였고, 2012년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15년 자유권규약위원회, 2017년 사회권규약위원회, 2018년 여성차별

7)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2019,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CRC/C/KOR/CO/5-6) [22].

철폐위원회와 인종차별철폐위원회까지, 국제사회는 입을 모아 대한민국 정부에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의 도입을 권고하였다.

## 2) 입양과 아동 최상의 이익의 원칙

### 제21조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또한,

1. 아동의 입양은 적용 가능한 법과 절차에 따라, 적절하고 신빙성있는 모든 정보에 기초해 오직 권한있는 관계 당국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야 한다. 관계 당국은 부모나 친척, 법정대리인과 관련된 아동의 법적 신분 및 필요한 경우, 상담 등에 기초한 관계자들의 입양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입양을 허가하여야 한다.
2. 국외입양은 아동이 위탁가정이나 입양가정을 찾지 못했거나 또는 어떤 적절한 방법으로도 아동의 출신국에서 양육될 수 없는 경우, 아동양육의 대안적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3. 국외로 입양된 아동도 국내입양 사례에 적용되는 안전보호 기준을 동등하게 향유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4. 국외입양의 경우, 입양 알선이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적절한 경우 양자 또는 다자간 약정이나 협정을 체결해 본 조항의 목적을 촉진시키며 이러한 체계 안에서 아동에 대한 해외에서의 입양 알선이 관계 당국이나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1조는 입양 시 아동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입양과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적절하고 신빙성 있는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입양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이 때 상담 등에 기초하여 관계자들의 입양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역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국내입양과 비교하여 해외입양에는 더욱 촘촘한 절차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해외입양은 아동이 위탁가정이나 입양가정에서도 양육될 수 없거나 어떤 적절한 방법으로도 아동이 출신국에서 양육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아동 양육의 대체 수단으로서 고려해야 한다. 특히 협약은 해외로 입양된 아동들은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음을 인식하여 국내입양 시 적용되는 안전보호 기준을 동등하게 적용할 것을 한 번 더 강조하였으며, 입양의 알선이 관계자들에게 금전적인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역시 강조하였다.

대한민국은 2012년 입양특례법의 개정을 통해 입양 시 국가의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국내입양을 최우선으로 시행하도록 하며, 국가의 입양정책 수립을 위해 국내외 입양 모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

다. 또한, 같은 해 민법의 개정을 통해 일반 입양과 파양 시에도 법원의 허가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입양특례법 등의 개정을 통해 아동이 가능한 원가정에서 양육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부모 가정 등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데 지원하는 비용이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비용보다 낮은 등 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분명히 드러난 바와 같이 해외입양 시 사후관리가 매우 부족하며, 입양 아동의 복리가 보장되지 못하여 아동인권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이러한 점에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법원허가제 도입을 포함하여 입양을 규제하는 조치가 취해진 것은 환영”하나, 이전 권고가 모두 이행되지 못한 점을 우려하여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모든 연령대에 있는 아동을 위한 입양절차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입양에 있어 미혼모의 자발적인 동의가 의무적일 것”과 “절차상 불필요한 지연 방지 및 입양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그들의 활동이 적절히 규제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파양된 사례를 포함하여, 입양아동의 사후관리 및 사후 서비스를 강화할 것”, “입양아동이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를 찾고 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도록 보장할 것”, 그리고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의 기준을 고려하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sup>8)</sup>

### 3) 미동반 아동의 보호: 일반논평 제6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협약에 대한 일종의 유권해석에 해당하는 ‘일반논평’을 통해 당사국에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의 입양을 고려하는 경우” 관련 국제 문서, 특히 1993년의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과 그 협약의 1994년 “난민과 기타 국제실항아동의 입양에 관한 권고”뿐만 아니라 협약 제21조 하에 제시된 전제조건들을 전적으로 존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는 특히 입양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때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sup>9)</sup>

-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의 입양은 일단 아동이 입양될 지위에 있는 경우에만 고려되어야 한다. 실제로, 이는 특히 추적 및 가족 재결합에 대한 노력이 실패한 경우, 또는 부모가 입양에 동의한 경우를 의미한다. 입양을 위해 필요한 부모와 다른 사람, 기관 및 당국의 동의는 자유로운 것이어야 하며 알려져야 한다. 이는 분명히 그러한 동 의가 어떠한 종류의 지불이나 보상에 의해 유도된 것이 아니며, 철회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의미한다.

8)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2019,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CRC/C/KOR/CO/5-6) [33].

9)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2005, 일반논평 6호 ‘출신국의 외부에 있는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에 대한 대우’ [9].

-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은 비상사태가 한창일 때 급하게 입양되어서는 안 된다.
- 모든 입양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적용 가능한 국내법, 국제 법 및 관습법을 준수하며 수행되어야 한다.
-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른 아동의 견해를 구해야 하며, 모든 입양절차에서 그 견해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은 아동이 입양과 아동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그 동의 행위의 결과에 대해 상담 받고 충분히 고지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동의는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며, 어떠한 종류의 지불이나 보상에 의해 의도된 것이어서는 안 된다.
- 거주국내의 친척에 의한 입양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아동의 출신 공동체 혹은 적어도 아동의 문화 내에서의 입양이 우선된다.
- 입양은 다음의 경우에 고려되지 않는다.
  - A. 성공적인 추적에 대해 합리적인 희망이 있고 가족 재결합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 일 때 아동이나 부모가 표현한 요청에 반하는 경우
  - B. 부모나 기타 생존 가족의 추적을 위한 모든 가능한 절차가 수행될 수 있는 합리적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이 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특히 적절한 추적의 수행 가능성과 관련되어 있으나 추적 절차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만 한다.
- 망명국내의 입양은 가까운 미래에 안전과 존엄성의 조건하에 자발적인 본국송환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되어서는 안 된다.

#### 4) 취약한 아동의 보호: 일반논평 제7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특히 취약한 아동에 대하여, 다양한 목적을 위해 유기되고 부모와 분리된 아동의 매매 및 유기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해 왔다. 이 때 입양, 특히 해외입양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동의 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이에 1993년의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에서는 이러한 영역에서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체제와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따라서 입양을 승인 또는 허용하고 있는 모든 당사국이 이 조약을 비준하여 수락할 것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강력히 촉구해왔다. 또한, 아동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하여 국제 협력이 필요하며,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함 역시 분명히 하였다.<sup>10)</sup>

#### 5)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와 대안양육

한편, 2021년 9월 16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제네바에서 아동의 권리와 대안양육에 관한 일반토론의 날(Day of General Discussion: DGD)을 개최하여 아동 당사자들의 대안양육 관련 경험에 대한 의견을

10)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2005, 일반논평 7호: 초기 유년기에서의 아동권리의 이행 [36].

청취하였다. 일반토론의 날, 아동·청소년들은 대안 양육, 정체성의 유지, 정신건강 및 웰빙, 취약집단 지원 및 비차별 문제의 해결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sup>11)</sup>

-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에게 재정 지원과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여 가정 내에서의 관계 위기와 스트레스를 완화할 것.
- 아동·청소년과 함께 통합적인 부모 교육, 훈련, 지원을 계획하고 지원할 것. 부모들이 이를 통해 아동을 더욱 잘 양육할 수 있는지, 아동의 권리를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 어떻게 아동·청소년과 긍정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지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
- 부모들이 상담, 정신 건강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동시에 도움과 조언을 받는 것에 대한 낙인효과를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
- 대안 양육이 아동 또는 청소년에게 최상의 이익이라면, 형제자매들이 함께 양육되는 것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며, 양육 환경 전환에 있어서 중요 관계들과, 언어, 문화, 종교가 유지되도록 할 것.
- 일상생활과 양육과 관련된 결정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유의미하게 참여시키고 그들에게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을 제공할 것. 이러한 훈련과 교육에는 반드시 아동과 청소년이 포함되어 직접 어떤 방법들이 도움이 되는지 들을 수 있어야 함.
- 아동과 청소년의 의미 있는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을 인식하고, 이들이 발언하는데 필요한 정서적 및 실질적 지원을 제공할 것. 여기에는 의사소통 도구나 번역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아동과 청소년, 특히 기존에 불평등과 권리침해의 상황에 놓여있던 아동과 청소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엄청난 영향을 받았음. 적극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코로나19에 대한 경험을 듣고, 바이러스에 대응하고 방역하기 위한 관련 국제법, 정책 등에서 아동의 권리를 주목할 것.
- 보호자, 생물학적 부모, 서비스 제공자(교사 등)와 대안 양육 시스템 종사자들이 정기적인 교육과 인식 개선 훈련에 참여하여 폭력, 학대를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양질의 돌봄에 대한 지침을 배워야함.
-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과 지원을 요청할 안전하고 사적인 공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 코로나19 방역과 회복에 있어서 대안양육 환경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
- 대안양육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사례관리에서 모든 양육 환경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추적을 시행할 것. 문제 해결이나 양육환경 전환에 있어서 분명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을 것.
- 아동·청소년에게 또는 필요시 그 가족에게 상담과 정신 건강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것. 양육환경 전환이나, LGBTQI 정체성을 가진 또는 장애를 가진 아동과 청소년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 해당 서비스들은 근본 원인 해결과 예방 및 대응계획 지원을 함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를 중심으로 사회 생태학적인 그리고 포괄적인 접근방식으로 뒷받침 되어야 함.
- 재정적, 감정적, 실질적 지원이 대안양육 환경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의무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 대안양육 환경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 야외 활동 공간, 친구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고, 코로나19가 이러한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목할 것.
- 빈번한 스태프 교체가 아동과 청소년의 관계 형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또한 대안양육 종사자의 건강과 웰빙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신 건강과 웰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감독을 제공할 것.
- 아동과 청소년이 양육기간 동안 혹은 그 이후에도 자신들의 개인정보(personal records)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 대안양육 환경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낙인과 차별적인 문화 관행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것. 그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모든 아동과 청소년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글로벌 운동을 육성할 것.
-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성인 모두에 대한 아동 권리 중심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함.
- 대안양육 환경의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의 문화, 개인정보·역사에 대해 알고, 자신들의 언어, 종교, 문화적 축제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아동과 청소년의 정체성 유지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인식을 개선할 것.

11) Day of General Discussion 2021 on Children's Rights and Alternative Care: Key findings and conclusions, [https://www.ohchr.org/Documents/HRBodies/CRC/Discussions/2020/DGD\\_Report\\_EN.pdf](https://www.ohchr.org/Documents/HRBodies/CRC/Discussions/2020/DGD_Report_EN.pdf) (2021. 11. 22. 확인).

## 나.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

###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헤이그 국제사법회의는 1993년 5월 29일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아동입양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sup>12)</sup> 헤이그아동입양협약은 국제입양의 당사자인 아동에 대하여 최소한의 보호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국제입양 절차만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규약과 국제적 및 국내적 위탁가정 배치와 입양에 대한 아동의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회적, 법적 원칙의 유엔 선언 (UN Declaration on Social and Legal Principles relating to the Protection and Welfare of Children with Special Reference to Foster Placement and Adoption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등 이전의 국제 규범과 구별된다.

헤이그아동입양협약은 1995년 5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대한민국 정부 또한 협약 가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2013년 5월 24일 협약에 서명하였지만 2021년 11월 현재까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헤이그아동입양협약을 비준할 것을 반복하여 권고하고 있다.<sup>13)</sup> 제21대 국회에서는 김성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입양법안」,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헤이그아동입양협약의 내용은 협약의 범위, 국제입양의 요건, 중앙당국과 인가된 단체, 국제입양의 절차적 요건, 입양의 승인과 효과, 일반조항, 최종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 1) 협약의 원칙

헤이그아동입양협약의 일반원칙으로는, ① 아동 최상의 이익과 아동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입양의 보장, ② 입양시 아동의 탈취·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도록 보호망을 구축, ③ 국가 간 협력체제 구축, ④ 국제입양을 허가하는 중앙당국의 권한 보장을 들 수 있다.<sup>14)</sup>

12)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1993 Intercountry Adoption Convention: Guide to Good Practice, 2008, (이하 ‘협약 지침서’) <https://www.hoch.net/en/publications-and-studies/details4/?pid=4388&dtid=> (최종확인: 2021. 11. 22.)

13) CRC/C/KOR/CO/5-6, para. 33., CRC/C/KOR/CO/3-4, para. 50.

14) 협약 지침서, paras. 37.~110.

## 2) 아동 최상의 이익과 아동의 기본권 존중 보장

협약은 아동 최상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과 비차별 원칙, 아동의 연령과 성숙정도 등을 고려해 아동의 의견이 입양 절차 전반에 청취되어야 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차별 금지로는 헤이그아동입양협약에 따라 기존의 법적 친자관계를 종료시키는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지는 경우 아동의 권리는 수령국 국내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권리와 동등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제26조 2.항). 또한 아동 최상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원가정 양육 원칙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서문), 국제입양은 출신국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을 수 없는 아동에게 고려될 수 있다는 국제입양의 보충성 원칙도 명시하였다(서문 및 제4조 참조).

## 3)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헤이그아동입양협약은 그 동안 사인 주도 하에 이루어졌던 국제입양 절차를 혁신하여 국가의 주도과 관여 하에 이루어질 것을 예정하고 있다.<sup>15)</sup> 중앙당국(Central Authority)이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한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중 공적 기관이나 인가된 단체에 조치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당국이 '직접' 이행해야 하는 책무로는 우선, 중앙당국은 입양에 관련된 부당한 재정적 또는 기타 이득을 방지하며 이 협약의 목적에 반하는 모든 관행을 저지하기 위해 직접 또는 공적 기관을 통해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제8조). 또한 중앙당국은 국내입양과 국제입양 등에 관한 통계 등 협약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유지해야 하며,<sup>16)</sup> 협약의 운용에 관한 정보를 상호교환하고, 그 적용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직접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때 중앙당국 간 상호 교환되어야 하는 정보로는, 수령국의 경우에는 수령국의 국제 입양정책, 예비입양부모 선정 및 평가기준, 입양 사후서비스 및 지원이 있고, 출신국의 경우에는 국제입양에 관한 출신국의 정책, 국제입양에 관한 실제적 필요성, 특수 요구가 있는 입양대상 아동을 포함한 국제입양을 필요로 하는 입양아동의 소개, 예비입양부모 신청절차, 구비서류와 표준양식 및 언어요건, 입양신청에 적용되는 행정적·법적 절차와 처리기간 등이 있다.<sup>17)</sup>

---

15) 현소혜, "헤이그 입양협약 가입에 따른 국제입양절차 개편방안", 가족법연구, 제28권 2호, (2014), 81.

16) 협약 지침서, para. 186.

17) 협약 지침서, para. 181.

#### 4) 입양 사후 정보의 보존과 입양 사후 서비스

체약국에 부과된 협약의 의무는 아동이 국경을 넘어 입양 부모에게 이동된 후에도 중단되지 않는다. 헤이그아동입양협약은 체약국에 아동의 출생에 관한 정보(특히 병력과 그 부모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보존하고 아동 또는 그 대리인이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30조). 이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명시한 아동의 부모를 알 권리와도 연결된다(제7조). 또한 협약은 중앙당국이 입양 상담과 입양 후의 서비스 촉진을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제9조 c.항), 입양과정과 그 완료를 위해 취해진 조치, 그리고 입양 전 위탁 기간 동안 수령국으로 이전된 경우 그 상황에 대해 보고할 의무가 있다(제20조)는 점 또한 밝히고 있다.

### 다. 기타 국제규범 및 문서

#### 1) 팔레르모 의정서

대한민국이 2015년 비준한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이하 “팔레르모 의정서”)는 “착취를 목적으로, 협박이나 무력의 사용 혹은 다른 형태의 강제, 유괴, 사기, 기만, 권력의 남용, 취약한 지위의 이용,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대가나 이익의 제공 혹은 수락 행위를 통해, 사람들을 모집, 운송, 이전, 은닉, 혹은 인계하는 것”을 ‘인신매매’라 규정하고 있다.

의정서의 정의에 의하면 인신매매의 유형에는 성착취 등과 함께 아동의 매매와 불법 입양이 포함되며, 입양기관의 잘못된 관행으로 가족에 의해 납치되는 사례, 부모 중 한 쪽의 적절한 동의 없이 입양된 사례, 신원 위조, 호적 위조, 아동에 대한 신상 서류 허위 진술, 불명확한 양도, 부모가 아닌 제3자의 양도 등이 포함될 수 있다.<sup>18)</sup>

1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인신매매 방지 및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 연구, (2021), 35-36.

## 2)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국제적 아동 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이하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불법한 아동의 아동이나 유치에 의한 유해한 결과로부터 아동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고, 아동의 상거소국으로의 신속한 반환을 보장하는 절차를 수립함과 아울러 면접교섭권을 보호하기 위해 1980년 10월 헤이그에서 채택되었다. 대한민국 또한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국제결혼 파탄시 일방 배우자가 해외로 아동을 탈취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2012년 12월 협약에 가입하였고, 2013년 3월 발효되었다. 해외입양의 외관을 가졌으나 보호자의 양육권 등을 침해해 아동이 불법적으로 다른 국가로 이동된 경우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불법적으로 아동이 다른 계약국으로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자, 또는 협약에 따른 면접교섭권이 침해된 자가 이동반환 지원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 아동 소재국 중앙당국으로의 지원 신청서 전달 등 협약에서 정한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8조).

## 3) 이주 글로벌 컴팩트

2018년 12월 대한민국을 비롯한 유엔 회원국 대다수가 참여하여 「안전하고 질서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 컴팩트」(이하 “이주 글로벌 컴팩트”)라는 국제문서를 채택했다. ‘안전하고 질서있고 정규적인 이주’가 가능하다는 비전과 함께 ‘공동의 이해, 공동의 책임, 공동의 목표’를 추구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23개의 구체적인 이행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이 중 특히 목표14는 “이주 주기 전반에 걸쳐 영사 보호, 지원 및 협력을 강화한다”고 규정하여, 해외입양의 사례에 적용될 수 있다. 이주 글로벌 컴팩트 목표14의 구체적인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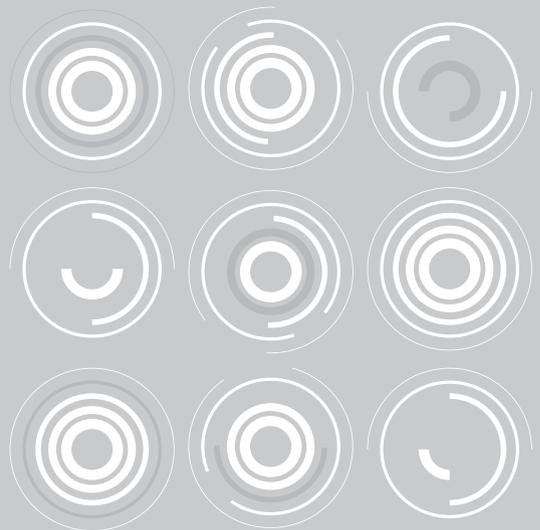
### **목표14 이주 주기(migration cycle) 전반에 걸쳐 영사 보호, 지원 및 협력을 강화한다.**

국제법에 따라, 우리는 항상 모든 이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해외에 있는 자국민에 대한 영사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 간 영사 협력을 강화할 것과 영사사절의 기능을 발전시켜 이주민과 이주민 출신국, 경유국, 목적국의 정부 당국 간 상호작용을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과거 해외입양절차 인권침해사례 보고서:  
심층 인터뷰

# PART 4

## 국제입양에 대한 정부차원의 조사 해외 사례





## 4. 국제입양에 대한 정부차원의 조사 해외 사례

### 4.1. 네덜란드 (2021)

#### 정부조사위원회

네덜란드 국가간 입양 조사 위원회(Committee investigating intercountry adoption, COIA)

#### 조사배경

1980년 브라질에서 입양된 파트릭 노르도번의 사례를 계기로 2018년 12월에 네덜란드 국가간 입양 조사 위원회가 설치됨. 그의 양부모는 정식 입양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신들이 친부모라고 주장해 아기 때 그를 네덜란드로 데려왔으며, 상파울루 네덜란드 영사관 직원 한 명은 이 불법 입양을 도왔음. 조사위원회는 입양아들이 친부모를 찾는 과정에서 이 같은 불법 입양 사례가 다수 밝혀지고, 불법 입양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18년 설치되었음.

2019년 4월 18일, 법무보호부 장관(Minister of Legal Protection)은 독립된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거 국가간 입양과 관련하여 일어난 문제의 가능성이 있는 사례들을 조사하게함. 부여된 과업은 주로 1967년부터 1998년 사이 방글라데시, 브라질,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및 스리랑카에서 일어난 입양 문제들임.

####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2019년 4월 ~ 2021년 2월

#### 조사내용

1967년부터 1998년까지 방글라데시, 브라질,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의 어린이 입양에 초점을 맞추어 인권침해의 실태를 고발하였으나, 인권침해는 해당 국가뿐 아니라 모든 출신국에서 조사되었음. 한국에서 네덜란드로 입양된 아동은 총 4095명으로 1971년부터 1980년까지 2,317명, 1981년부터 1990년까지는 1,323명으로 각각 출신국 비율 1위, 4위를 차지함. 대한민국의 국제입양에서도 인권침해가 행해졌다는 사실이 이 보고서에 포함되어있음.

## 조사보고서

2021년 2월 발표

## 권고안

본 위원회는 법률보호부 장관(Minister for Legal Protection)에게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

1. 정부의 인정 : 정부는 입양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음을 인정한다.
2. 국가간 입양의 중단 : 사적인 요소를 가진 국가 간 입양 시스템은 현재 형태로 지속될 수 없다. 위원회는 파악된 문제 사례가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할 현실적인 공공 법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갖는다. 의사결정과정을 통한 최종 결과를 보류하고, 위원회는 국가간 입양을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
3. 국립 전문 센터 National Centre of Expertise 운영 : 국가는 정체성, 친생가족 찾기 및 사후관리 지식을 통합한 전문 센터를 설립하고, 입양인들이 자신의 기록에 접근하고, 친생부모를 찾으며, 적절한 심리적, 법적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정부조치(실행여부 모니터링 필요함)

네덜란드 정부는 국가 간 입양 조사위원회(Committee Investigating Inter-country Adoption, COIA)의 보고서 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과거 국제입양 과정에서 인신매매나 서류 조작 같은 인권침해를 발견하였다며, 성명을 통해 국제입양을 당분간 전면 중단하기로 선언하고 불법 입양으로 피해를 본 입양인과 부모들에게 사과함.(산더르 더커르 네덜란드 민권 담당 장관 2021년 2월 8일 현지시간)



Figuur 2: Top 10 herkomstlanden in de periode 1957-2019  
(Het aantal geadopteerden staat vermeld achter de naam van het land)

COIA 보고서는 국제입양 과정에서 나타난 ‘인권 침해’를 두 유형으로 분류함.

### 1) 불법행위(illegal activities)

관련당국의 부패; 문서를 위조하여 입양인의 출신과 신원을 밝히는 것을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 의도적으로 부정확한 정보(나이 등)를 입력하는 행위; 대가 또는 강압을 통해 자녀를 포기하게 하는 행위; 아동 밀매 및 납치; 아기농장

### 2) 비윤리적 행위(unethical acts)

어머니의 빈곤 또는 전쟁, 자연재해 및 사회적 금기와 같은 기타 사회적 및 문화적 상황을 이용하여 아동을 포기하게 만드는 행위; 정보의 부적절한 보관; 부정확한 정보 입력 및 문서의 투명성 부족

#### 구체적인 유형

- Absence of documents and/or personal data; 문서 및/또는 개인 데이터의 부재
- Document forgery; 문서 위조
- Failure to perform duties in accordance with general principles of good administration and associated rules and procedures; 행정 오류 : 일반 원칙과 관련 규칙 및 절차에 따라 의무를 수행하지 않음
- Fraud and corruption: Wilfully misleading and deceiving something or someone or misusing authority or power for personal gain. 사기 및 부패: 고의로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오도하고 기만하거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권위나 권력을 오용
- Concealment of status: Deliberately making a person’s parentage and true descent ambiguous or uncertain. 신분 은폐
- Child theft: deliberate and illegal removal of minors from parents or legal guardians. 아동 도난, 유괴 : 미성년자를 부모나 법적 보호자로부터 고의적이고 불법적으로 추방하는 행위
- Child trafficking: transporting, recruiting or trafficking minors for the purpose of exploitation. 아동 매매: 착취를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운송, 모집 또는 인신매매하는 행위
- Baby farms: places where women (whether or not forced, and/or for a fee) are made pregnant, or where they stay to give birth; to then give up their new-born child for intercountry adoption. 아기농장: 여성(강제 또는 유료)이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위해 머무는 곳. 태어난 아이를 포기하도록 하여 국제입양을 보냄

## 4.2. 벨기에 (2021)

### 정부조사위원회

플레미쉬 지역정부의 보건복지가족부 (Ministry of Welfare, Public Health and Family) 당시 장관인 Jo Vandeurzen은 전문가(국제 입양 관련 법, 역사-사회, 윤리 및 심리학적 측면의 전문가-3개 대학)들로 구성된 독립 연구 패널 위촉(Independent research panel of experts)

### 조사배경

국가간 입양인들이 자신의 입양 역사와 입양 절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례가 언론과 플레미쉬입양 센터 (Flemish Center for Adoption)에 보고됨

###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2019년~2021년 9월

### 조사내용

입양아동을 좀 더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재 입양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과거의 국가간 입양 관행을 조사하기 위한 임무를 가짐

### 조사보고서

2021년 8, 9월에 걸쳐 이 전문가 패널은 최종 조사 결과 및 권고안을 플레미쉬 정부와 복지,가족, 보건, 빈곤감소부 장관인 Wouter Beke 에게 보고함.

### 권고안

#### 권고안 중 과거의 잘못된 실행에 대한 '대처' 부분의 권고안

- a) 잘못된 입양의 희생자에 대한 공적인 인정 : 국가간 입양의 과오에 대한 인정과 중재를 위한 임시위원회 설립 권고
- b) 입양 과정에서 등록 등의 오류나 누락으로 행정적 어려움을 겪는 입양인들에게 국가 지원,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별도로 보고할 수 있는 창구 마련, 청구 절차 단순화.
- c) 국가간 입양 관련 모든 정보와 문서를 중앙에서 관리하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출생국과 공유

d) 과거 입양 오류 및 책임소재에 대한 추가적이고 심층적인 연구 진행

#### 과거 잘못된 실행으로부터의 '회복'에 대한 권고안

- a) 형법 내 회복의 가능성 모색 및 집행
- b) 회복을 위한 법률적 처리 외 보다 구체적이고 균형있는 대안 마련
- c) 과거 입양의 경우 예외를 두고 정체성에 관련된 정보(이름, 출생지 등)를 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할 것
- d) 정부가 책임을 지고 과거 입양에 대한 회복 절차를 진행하고 그 후속 조치에 대해 자문위원회에 보고할 것
- e) 입양사후서비스를 통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적인 법 제도를 정비할 것.

#### 정부조치(실행여부 모니터링 필요함)

벨기에 플레미쉬 지역정부 해외입양 중단 결정(2021.9.2)

Wouter Beke 장관은 2021년 9월 2일 국가간 입양을 2년간 중단하고, 입양제도 개선을 위한 액션플랜 수립을 결정함.

### 4.3. 아일랜드 (2021)



아일랜드에서 1922년부터 1998년까지 운영된 미혼모 보호소에서 태어나거나 살던 신생아 사망률이 15%에 달했다는 공식 보고서가 나왔다. 사진은 보호소 실태 조사를 촉발한 계기가 된 골웨이주 튜엄의 미혼모 보호소 터. 2014년 이 터에서 사람 매장 흔적이 발견되면서, 보호소 조사를 위한 위원회가 구성됐다. 튜엄/EPA 연합뉴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78578.html#csidxda6413a92dc1216ae6f37da7cfe0a48](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78578.html#csidxda6413a92dc1216ae6f37da7cfe0a48)

### 정부조사위원회

아일랜드 미혼모와 아동보호소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vestigation into Mother and Baby Homes)

### 조사배경

2014년 아일랜드 역사학자 캐서린 콜리스가 2014년 골웨이 주의 투암 마을에서 ‘봉 세쿠르(Bon Secours) 수녀원이 운영한 미혼모 시설 ‘성모의 집’에서 어린이 796명이 묘비나 관도 없이 집단 매장된 사실 밝혀냄. 이 연구가 준 충격으로 아일랜드 정부 위원회 설치 및 조사 시작

###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2015년 2월~2021년 2월 28일 (6년간)

### 조사내용

- 조사 대상: 1922~1998년(총 76년간) 총 18개 미혼모자 거주시설(Mother and Baby Homes)에 입소한 미혼모 5만 6천명 및 그 자녀 5만 7천명
- 사회적으로 입양이 이 “정당성 없는(illegitimate)” 아동들에게 더 나은 선택으로 여겨졌으며, 친모의 권리보다는 입양 부모의 권익이 우선했음.
- 미혼모들의 증언에 따르면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입양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아이를 포기했고, 입양 동의가 충분한 정보와 숙려기간 없이 이루어지거나 강압(사회적, 친족, 종교인 등)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많음.

### 조사보고서

총 3천여쪽의 보고서 중 제 32장에서 150쪽에 걸쳐 입양에 대해 다루고 있음. 이 중 조사 대상 기관의 조사 대상 기간 중 해외 입양 건수 1,638명(이중 1,427명 미국으로 입양). 주로 40년대~60년대 이루어짐.

## 권고안

- 이 시설의 생존자들에게 출생기록과 출생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권리를 보장하고, 이 미혼모 시설과 입양기관들의 기록을 축적할 정부차원의 중앙 기록 저장소(central repository of the records) 설치 언급 및 정보접근권 강화 입양법 개정 계획.
- 부처별(보건부 및 아동권리부처)로 흩어져있는 기록들을 아일랜드 국가 아카이브(National Archives of Ireland)로 옮겨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권고.
- 보상 및 향후 실행 계획 담당 부처: 아동 평등 장애 통합 및 청년부(Department of Children, Equality, Disability, Integration and Youth)

## 정부조치(실행여부 모니터링 필요함)

- 보고서 결과에 따른 정부차원의 사과(2021년 1월 13일 국무총리 공식 사과 성명 발표). 및 재정적 보상 계획(4월 중 발표 예정)과 매장된 이들의 유해발굴을 위한 법안 추진
-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 실행계획도출(Government Action Plan)
  - (1) 생존자 중심 접근(생존자 요구에 따른 제도화, 즉각적인 상담)
  - (2) 공식 사과
  - (3) 개인 정보 접근(정보 및 추적에 대한 법제화, 정보 접근권 보장, 기관 자료의 중앙 보관소 설치)
  - (4) 아카이브와 데이터베이스(국립 추모 및 기록 센터, 국가 자료에 대한 공공 열람권 보장, 데이터베이스 확대, 아키비스트 위촉)
  - (5) 교육과 연구(증언들에 대한 발표, 연구 장학금, 용어에 대한 연구, 사망등록 기록에 대한 연구)
  - (6) 추모(국가차원의 추모, 지역 차원의 추모, 생존자가 진행하는 연례 추모 행사, 아동 기금)
  - (7) 회복과 인정(피해자의 건강 지원, 재정 지원 등)
  - (8) 존엄성을 지키는 매장(유해 발굴, 재 매장, 장례 등 지원)

## 4.4. 호주 (2012)

### 정부조사위원회

호주상원조사위원회(Community Affairs References Committee)

### 조사배경

1951~1975년 진행된 추산 15만 건의 입양들중 다수가 주로 출생 직후 아동을 친모와 분리하여 입양가정에 영구적으로 배치하는 “완전 단절(Clean Break Theory)” 및 “완전 입양(Closed Adoption)” 원칙에 따라 진행됨.

###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2010.6 ~ 2012.2 (18개월)

### 조사내용

미혼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사회적 낙인 및 미혼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부재로 인하여, 미혼모와의 분리 및 입양이 아동을 위한 최선의 이익으로 간주됨. 미혼모들의 의사와 반하여, 혹은 충분한 정보 없이 간호사, 의사, 사회복지사, 종교인 등을 통해 아동을 포기하도록 강요한 사례 다수. 이러한 강제입양은 대부분 20세기 후반에 이루어짐. 이 관행은 ‘제도화된 신생아 사업’이라 불리며, 이로 인한 친모와 입양아동들의 평생에 걸친 상실 및 고통 보고.

### 조사보고서

2012년 2월 강제 입양 관행에 대한 호주 상원 조사 보고서 발표(337page)

### 권고안

- 2013~2017년까지 4년간 1천 1백 5십만 호주달러(한화 100억 정도 규모)의 예산으로 카운슬링과 기록 추적 전문가 서비스(5백만달러), 심리지원 시스템 강화(5백만달러), 아카이브 구축(1백5십만 달러) 배정.
- 별도 5백7십만 달러 예산으로 2021년 6월까지 강요된 입양 사후지원 서비스 실시

### 정부조치(실행여부 모니터링 필요함)

- 2013년 3월 호주 수상(Prime Minister) 줄리아 길라드(Julia Gillard)가 국회에서 그 피해자들의 평생에 걸친 고통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정부의 대응안을 발표.
- 사회복지부가 전국의 7개 기관을 통해 강요된 입양 사후지원 서비스 실행: 상담 핫라인 운영, 개별 정보 지원, 사례관리, 기록 추적(가족찾기), 치유적 상담, 네트워킹 기회등 제공.

Forced Adoptions Support Services website

link>><https://www.dss.gov.au/families-and-children/programmes-services/family-relationships/forced-adoption-practices/support-services-for-people-affected-by-past-forced-adoption-policies-and-practices>

- 국가기록원(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산하에 강요된 입양의 역사에 대한 웹사이트(Forced Adoptions History Project)를 설치, 공식 사과 1주년 기념일(2014)에 론칭하고 강요된 입양의 역사 아카이브를 영구적으로 전시함. 또한 2015년 ‘동의 없는(Without Consent)’이라는 특별전을 마련하여 강요된 입양의 역사 기념함.

## 4.5. 그 외 조사계획 중인 국가

### 4.5.1. 스웨덴

#### 정부조사위원회

스웨덴 국제입양 조사위원회

(Utredning av Sveriges internationella adoptionsverksamhet)

조사위원장(특별조사관)은 Anna Singer(법학자, 변호사, 옘살라대학 교수) 위촉됨.

#### 조사배경

- 2019년 칠레 하원이 국제 입양과 관련된 범죄 사례 조사 보고서 발간. 이에 스웨덴 정부는 이 범죄 수

사 결과를 기다려 조치를 취하겠다 하였음.

(관련: <https://www.camara.cl/legislacion/comisiones/integrantes.aspx?prmID=2221>)

- 2021 2월 22일, 네덜란드의 국제입양 중단선언에 힘입어 스웨덴 보건사회부 장관(Minister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Lena Hallengren이 지연되고 있는 칠레 정부의 조사를 기다리기보다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해외입양 과오에 대해 입양기관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힘.

###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2021년 10월~2023년 11월 (예정)

### 조사내용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해외입양 과오에 대해 입양기관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힘. 조사는 칠레 사례 뿐만 아니라 100여개국에서 입양된 6만명의 아동에 대해 모두 조사한다는 입장을 가짐.

### 조사보고서

2023년 11월까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

## 4.5.2. 스위스

### 정부조사위원회

스위스 정부(명칭 미정)

### 조사배경

- 2017~2018년 스위스 미디어에 의해 1980년대 이루어진 스리랑카에서의 해외입양의 불법성에 대한 보도가 있음. 이에 2018년 의회에서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촉구. 조사의 일환으로 2020년 2월 발간된 취리히 대학 Zurich Univ. of Applied Sciences의 보고서- 11,000명 이상의 스리랑카 아동이 유럽으로 매매, 불법입양됨을 밝힘).
- 2020년 12월 14일 스위스 정부(Federal Council)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900여명의 스리랑카 아동이 불법적으로 스위스로 입양된 사실과 당국의 입양 규제에 대한 태만을 공식 인정함. 이후 보다

면밀한 조사 및 현 시스템 점검 약속.

- 2018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설립된 스위스 거주 스리랑카 출신 입양인들의 이익단체인 Back to the Roots가 UN 강제 실종 위원회(UN 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s, UNCED)에 1970년대 이래 지난 30년간 불법적 입양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

###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2021년 5월~2022년 5월 (예정)

### 조사내용

- UNCED는 이에 불법 입양을 아동 매매 및 강제 실종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2021년 5월, 스위스 정부에 지난 30년간 이루어진 스리랑카로부터의 불법 입양을 조사하라고 권고함. 또한 이 위원회는 불법 입양의 희생자들이 국적회복이나 귀환을 원할 경우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함.
- UNCED 가 강제 실종으로 간주한 불법적 국제입양의 내용으로는 아이가 수령된 후 정체성에 관련된 정보가 조작된 경우, 보호자로부터 유괴하거나 실종된 경우, 산모가 실종된후 출생하여 불법적으로 입양된 경우, 의료진이 산모에게 아이가 죽었다고 하며 보여주지 않은채 중간 조직을 통해 아이가 매매되어 스위스로 입양된 경우, 산모들이 자유롭게 결정하지 못한채 강제로 출산을하고 스위스로 아이가 공급된 “baby farm”사례 등이 있음.

### 조사보고서

스위스 정부는 2016년 비준한 강제실종으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국제 협약의 실행에 대해 2022년 5월 7일까지 UNCED 권고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함.

## 참고자료 및 링크

### 네덜란드

- 보고서

<https://www.rijksoverheid.nl/documenten/rapporten/2021/02/08/tk-bijlage-coia-rapport>  
<https://bettercarenetwork.org/library/the-continuum-of-care/adoption-and-kafala/committee-on-the-investigation-of-intercountry-adoption-report-unofficial-translation>

- 관련보도

<https://www.yna.co.kr/view/AKR20210209001500098>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5993085>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982516.html>

### 벨기에

- 보고서

[expertenpanel-interlandelijke-adoptie-eindrapport-met-aanbevelingen.pdf \(opgroeien.be\)](#)

- 관련기사

Flanders working to future-proof intercountry adoption  
<https://www.brusselstimes.com/belgium/185491/flanders-working-to-future-proof-intercountry-adoption/>,  
Beke wants a break for intercountry adoption, candidate parents are outraged: 'Not respectful' <https://netherlandsnewslive.com/beke-wants-a-break-for-intercountry-adoption-candidate-parents-are-outraged-not-respectful/230780/>

### 호주

<https://forcedadoptions.naa.gov.au/>  
Forced Adoptions Support Services website  
<https://www.dss.gov.au/families-and-children/programmes-services/family-relationships/forced-adoption-practices/support-services-for-people-affected-by-past-forced-adoption-policies-and-practices>  
[https://ko.wikipedia.org/wiki/%ED%98%B8%EC%A3%BC\\_%EA%B0%95%EC%A0%9C\\_%EC%9E%85%EC%96%91](https://ko.wikipedia.org/wiki/%ED%98%B8%EC%A3%BC_%EA%B0%95%EC%A0%9C_%EC%9E%85%EC%96%91)

### 아일랜드

- 보고서

<https://www.gov.ie/en/publication/d4b3d-final-report-of-the-commission-of-investigation-into-mother-and-baby-homes/?referrer=http://www.gov.ie/report/>  
<https://www.gov.ie/en/publication/22c0e-executive-summary-of-the-final-report-of-the-commission-of-investigation-into-mother-and-baby-homes/>

<https://www.gov.ie/en/publication/ffd02-commission-of-investigation-into-mother-and-baby-homes-final-report-frequently-asked-questions-12-january-2021/>

• **관련보도**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1/jan/12/ireland-report-appalling-abuse-mother-baby-homes>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3005500085>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11215510000688>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78578.html](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78578.html)

## 스웨덴

Sweden to probe international adoptions amid worries over illegal practices(2021.2.22)

<https://www.reuters.com/article/us-sweden-adoptions-idUSKBN2AM187>

Sweden To Investigate Illegal Intercountry Adoptions (2021.2.22)

<https://www.hrw.org/news/2021/02/22/sweden-investigate-illegal-intercountry-adoptions>

Social Affairs Committee: The government should investigate the adoptions (2021.6.4)

<https://www.dn.se/sverige/socialutskottet-regeringen-bor-utreda-adoptionerna/>

Hallengren: We will investigate the adoptions from China (2021.6.22)

<https://www.dn.se/varlden/hallengren-vi-ska-utreda-adoptionerna-fran-kina/>

## 스위스

• **정부 보도자료**

<https://www.admin.ch/gov/en/start/documentation/media-releases.msg-id-81577.html>

Switzerland urged to pay reparations for illegal adoptions from Sri Lanka (2021. 5.11)

<https://www.swissinfo.ch/eng/switzerland-urged-to-pay-reparations-for-illegal-adoptions-from-sri-lanka/46609398>

UN body puts illegal adoptions in new, criminal light (2021. 8.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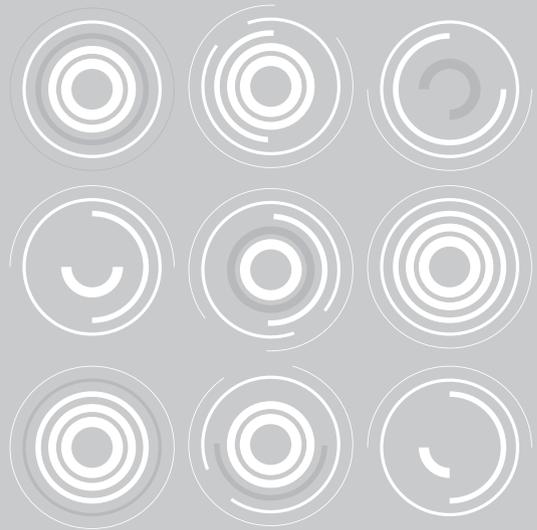
<https://www.swissinfo.ch/eng/un-body-puts-illegal-adoptions-in-new--criminal-light/46905860>



과거 해외입양절차 인권침해사례 보고서:  
심층 인터뷰

# PART 5

## 결론 및 제언





## 5. 결론 및 제언

본 조사는 입양인 당사자 10명과 입양관계자 5명의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과거 해외입양절차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깊이있게 들여다볼 수 있었다. 본 보고서를 토대로 과거 해외입양절차에 있어서 우리사회 및 정부를 향한 몇 가지 제언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 5.1. 결론

본 조사는 과거 해외입양절차에서 발생했던 문제를 해외입양인의 목소리를 직접 드러내 접근 하였다. 이를 위해 절차상 인권문제의 소지가 있는 해외입양인을 인터뷰하였다. 이들의 목소리는 해외입양절차에서 어떤 문제가 존재했고 국가는 어떤 역할을 했었는가에 대해 당사자가 직접 문제제기를 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기록의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해외입양인과 입양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과거 해외입양절차에서 인권적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동 최상의 이익의 원칙에 부합하는 실천의 맥락에서 진행되었던 해외입양은 목적과 달리 개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해외입양의 구조가 내포하고 있는 국가폭력적인 성격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시기상 늦었지만 인권책무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을 방기한 책임을 되물어야 할 시점인 것이다.

본 조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과거 해외입양절차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범주화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 입양절차의 문제점 ::

### 고아 호적 창설, 신분변경, 기록의 조작, 불명확한 입양과정

먼저 입양절차의 전반적인 문제는 원가정보호나 국내입양 보다 해외입양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나타났다. 입양국가의 제도에 부합하기 위해 부모가 존재한 아동의 경우 입양이 불가했기 때문에 ‘고아’로 만들어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당시 열악했던 시대적 상황은 입양이 결정된 아동에게 돌발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 경우 입양부모에게 고지하지 않고 아동을 다른 아동으로 교체하여 결연을 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신분조작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입양인의 기록은 입양의 성사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요하게 간주되지 않았다. 이는 해외의 가정으로 가게 되면 다시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에 기반하여 기록을 보관할 필요성을 갖지 않았다. 결국 기록의 왜곡 역시 입양만 성사시키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에 기초하여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기록이 부실하다는 것은 입양과정이 투명하지 않는 사안과 연결된다. 한 개인이 어떻게 입양대상이 되어 입양기관에 의뢰되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 해외로 가게되었는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개인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위한 과정이 첫 출발부터 어긋나게 되는 것이다.

전반적인 입양절차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었어야 할 아동의 입장이 부재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동의 인권을 침해한 상황을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 (2) 입양인 기록의 문제 ::

### 개인정보접근권(입양기관), 근본을 알 권리

입양인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알 권리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러나 입양인 당사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에 있어서 비협조적인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그들의 기록을 제공받더라도 기록이 부실한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언어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한다.

입양기관이 과거 기록에 대해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이 부실하다면 입양기관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져야 할 의무가 있다. 입양기관이 입양인의 권익을 위한 기관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 역시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가장 책임을 지니고 컨트롤할 수 있는 행위자는

국가라는 점은 명백하다. 과거 해외입양의 관행으로 인해 기록이 부실하다면 국가는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입양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와 관련한 근원적인 문제는 인간의 삶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 (3) 입양기관의 책임 ::

#### 산업적 입양의 반대, 입양기관의 부패, 절차적 문제제기, 사후관리부재

과거 해외입양은 아동을 해외로 보내는데만 주목했다. 입양을 보내는데 급급했고, 효율적이고 간이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이로 인해 국가와 입양기관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해외입양을 산업으로 전환시켰다. 아동의 이익이 아닌 입양기관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자본을 축적하는 도구로 활용하였던 것이다. 입양기관의 비용은 최대한 절감하고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해외입양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입양절차가 부실하게 진행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입양인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 (4) 입양인 지원 ::

#### 모국방문과 가족찾기 지원(통번역 지원), 국적회복 지원 등

해외입양인이 가족찾기에 나설 경우 우선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의사소통이다. 가족찾기의 전 과정에서 그들에게 필요할 통역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입양인이 자신의 기록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통번역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체계의 지원은 국가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보내졌던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할 수 있다.

## (5) 시민권 문제 :: 국적 취득, 추방 입양인

시민권 취득과 관련한 사안은 한국과 입양국가 간 긴밀한 협의체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안은 양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 입양을 보낸 국가의 잘못도 있지만 입양국가의 체계 역시 시민권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추방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입양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한국 역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양 국가의 태도는 인권책무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다. 법제도와 당시 상황에 의해 불가피하게 공백이 발생했다면 그 사안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고 공백을 메우는 해결방안을 송출국과 수령국 양 국가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본 조사결과, 해외입양은 최후의 선택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에 입각하여 입양을 고려할 때에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다른 방법이 불가능했을 때 한번 더 생각하고 숙고해야 하는 최후의 선택지로 남겨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적 기관이 아닌 국가의 공적 영역에서 전 과정을 총괄해야 한다. 입양은 한 개인의 전 생애에 영향을 미칠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을 지닌 국가에 의한 감독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 조사는 과거 해외입양절차의 문제는 곧 인권의 문제임을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듣는 과정이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국가 역할의 공백을 지적하였다. 다시 말하면 인권침해의 행위자가 다름 아닌 국가였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행위자 역시 국가이다. 따라서 해외입양구조에 접근할 국가의 역할을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는 인권침해의 행위자가 될 수도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될 수도 있다. 한국은 인권의 나침반에서 어느 방향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해외입양의 문제는 방향을 판단할 척도일 것이다.

## 5.2. 제언

뿌리의집은 해외입양인 당사자와 해외입양사업의 직간접적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과거 해외입양절차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심층적 층위의 증인과 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과거 해외입양절차에 있어서 인권침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우리 사회와 정부를 향해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안에 대해서 본격적인 조사사업을 개시하기를 제언한다. 본 조사는 말 그대로 파일럿 프로젝트일 뿐이며, 조사의 규모나 전문성에 있어서, 이런 인권 침해 사안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어 국가의 관심을 환기하는 수준에 불과한 조사보고서이다.

반드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이든 과거사진실화해위원회이든, 독립적인 국가조사기구이든, 거의 70년에 걸친 장기지속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국가조사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긴급한 착수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싶다.

둘째, 국가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해외입양인의 기록을 관장하고, 해외입양인의 근본에 관한 권리(rights to origin)을 보장하며, 현재의 삶에 광범위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트라우마를 비롯한 인권침해를 치유하는 국가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에도 기록의 부실관리와 유실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며, 해외입양인들은 자신들의 삶의 근본에 관한 권리를 훼손당하고 있기 때문이며, 동시에 해외입양 인권침해의 현재적 발현이라고 할 수 있는 트라우마의 곤경에 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권리의 관련 당사자들 중 일부는 나이가 들고 지속적으로 인권침해의 결과를 안고 죽음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만약 국가조사기구의 설립을 법제화하고 시작하게 되는 일이라면, 국가조사기구의 설립과 동시에 한국의 해외입양에 대한 모라토리엄(일시정지) 선언을 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고 싶다.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는 시점에도 여전히 인권침해가 지속되도록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넷째, 해외입양인의 삶의 경로에 개입된 모든 기관들의 기록관련 행위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제언한다. 아동의 분리 혹은 이탈, 아동의 획득과 발견, 아동의 입양 의뢰와 보호조치, 아동의 법적 신분(고아호적) 특정 절차, 입양결과와 아동의 송출,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근원을 알 권리로서의 가족 찾기에 대한 국가

의 조력 행위 등에 연루된 모든 기관들의 업무 수행과 기록관리에 대한 조사를 하기를 제안한다. 그 비율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의 입양예비아동은 입양기관들의 친생부모들과의 직접 상담을 통해서 의뢰받았을 것이다. 본 조사에 나타나는 바에 의하면, 주로 아동일시보호소, 아동보호시설, 영아원, 미혼모시설, 조산원, 산부인과, 경찰서, 시군구 지자체 사회복지과 등등을 통해서 입양기관들은 입양예비아동들을 해당 기관의 아동으로 특정해서 입양을 진행했음을 볼 수 있다. 입양기관은 시군구청과 경찰서와 등기소 등을 통해서 아동의 신분을 특정했고, 종종 기록의 부실기재와 조작이 발생했다. 최종적으로는 보건복지부의 해외이주허가와 시군구청과 등기소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국가 시스템 안에도 아동의 기록이 남아있다. 이 모든 경로에 있는 해외입양인들의 기록을 국가가 확보하고 입양인의 근원을 알 권리 보장의 토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기록관리의 부실은 입양기관의 아동획득 경로에 있었던 친생부모 및 상기한 모든 관련 기관들과 입양기관 사이에 일어난 사무협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기록에 관한 사무는 아동에 대한 보호의 긴급성이나 지원의 이름으로 자행된 금전수수의 인센티브로 인해 뒷전에 내어 몰리고, 결국 기록의 부실이 야기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군구청이나 경찰서 혹은 등기소는 물론 보건복지부의 해외이주허가의 부실하고 무책임한 관리에 그 뿌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기록관리 전반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이 조사사업을 통해서 과거 해외입양 인권침해는 입양절차 상에서 일어난 고아호적 만들기, 입양 부모적격성심사의 실패, 사후관리의 실패 등에서 특별히 뚜렷이 들어나고 있고, 바로 여기에서 해외입양인들을 가족 찾기 등을 통한 근본을 알권리를 보장해주기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어 준다. 이 사태에 대한 국가의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을 통해 국가의 실패를 인정하고 해외입양인에 대한 사과와 비록 부족한 중에도 해외입양인들에 대한 인권친화적인 조력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바, 국가의 사과와 해외입양인들의 근본을 알 권리에 대한 국가의 인권친화적 조력 시스템의 구축을 현행 제도 안에서나마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을 제안한다. 가족 찾기 등 근본에 대해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사적 주체에 불과한 민간 입양기관에 맡겨 두고 있는 현행 제도를 철폐하고 국가의 직접 책무로 변경하고, 재회에 관련한 충분하고 깊은 상담과정과 통번역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해외입양인에 대한 국가정책의 중심을 인권적 관점에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상기한 바와 같이 해외입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두루 아울러 지는 것과 나란히, 해외입양의 사실상의 주체였던 입양기관의 산업적 입양과 부패 및 자산 축적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함께 그 비윤리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세계 최장기 최다 아동송출국으로서 아동인권침해의 보조적 역할을 단단히 했던 국가와 해외입양기관들은 물론, 이에 협업한 우리

사회 전반의 실패와 비윤리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 및 책임의식의 확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언한다.



과거 해외입양절차 인권침해사례 보고서:  
심층 인터뷰

## 애프터로그





## 해외입양인 10인 인터뷰 감회

김성수

University of Sheffield 동아시아 역사학 박사  
전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전문위원  
‘함석헌평전’ 저자

나는 지난 8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두 달간 10명의 해외입양인들 인터뷰 했다. 인터뷰 하면서 느낀 점은 비록 이들에 대한 해외입양이 지난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과거’에 일어났지만 이들은 해외입양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로 인해 지금 현재까지도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해외입양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는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진행 중 인 것을 절감했다.

10명의 입양인 중 3-4명은 구면이라 비교적 인터뷰가 수월했다. 하지만 초면 입양인 중 한 두 명은 사전교류가 없어서 인지 신뢰관계를 쌓는데 어려움을 느꼈다.

10명의 해외입양인들이 과거를 거쳐서 지금까지 겪고 있는 입양과정의 문제점들을 몇 몇 유형별로 범주화해 분류해 보면 아래와 같다.

### ◎ 입양인에 대한 입양기관의 기록위조 혹은 신분 세탁

입양기관에서 해외입양을 보내기 위해 한 아동을 다른 아동과 바꿔치기한다. 그 과정에 입양인의 신상정보 기록을 위조하거나 친모가 있는 아동을 고아로 세탁한다. 그 결과로 지금까지도 많은 입양인들은 진정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극심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

### ◎ 추방된 혹은 추방위기에 놓은 미국입양인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지원 필요

어린 시절 미국으로 해외입양 보내진 후 몇 십 년 간 그곳에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미국시민권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고 한국으로 추방되었거나 추방위기에 놓인 입양인들이 있다. 이렇게 추방된 해외입양인들은 노숙을 하거나 고시원 등에 머물며 말도 안통하고 문화도 다르며 지인하나 없는 한국에서 생존고투하며 하루하루를 버겁게 연명하고 있다. 이들은 한미 양국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이미 자살한 이도 있고 거의 죽음직전에 몰린 이들도 있다. 이른바 문명국가라는 한미정부에 의해 법의 사각지대에 몰린 이들에게 한미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마땅하다. 한국정부는 추방된 입양인들이 잘 정착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언어문화적, 심리상담적 지원을 해주는 한편 미국정부에게는 이들을 인도적 입장에서 다시 미국으로 데려갈 것을 권고해야 마땅하다. 한국과 미국 정치권은 돈이나 표가 되어야 움직이는데, 해외입양인들은 돈과 표에 별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정치권은 이 문제에 아주 소극적이다.

### ◎ 입양 전 입양부모에 대한 정신병력, 나이 등 사전조사 부실 혹은 위조

해외입양부모 중 정신병력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서 입양부모로서의 자격이 부족함에도 입양을 한 경우가 있다. 해외입양에 재정적 이익이 큰 동기가 되는 사설입양기관 입양에서는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무조건 입양을 보내야만 수익을 남기는 상황이다. 그런 입양기관에서 입양예비부모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해결책은 입양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공적영역인 국가기관에서 주관, 관리, 집행하는 것이다.

◎ **입양 후 사후관리 소홀**

해외입양인들이 입양부모에게 성폭력이나 아동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사설입양기관의 사후관리부족으로 입양인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남기고 비극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설입양기관 입장에서는 아동판매(?)가 일단 끝났으니 더 이상 아동의 복리에 사후 신경을 안 쓰는 구조다. 결국 입양에 대한 모든 절차(사건과 사후)를 공적인 국가기관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길만이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 **입양인 기록은 사설입양기관이 아니라 정부기관에서 보관하고 관리해야**

해외입양인들이 친부모를 찾고자 국내 사설입양기관을 방문하면서 겪고 있는 고충 중의 하나는 입양기관의 부실한 기록관리와 임의적 기록공개 때문이다. 많은 경우 입양인들에 대한 기록공개여부는 입양기관 직원들의 '재량'과 당시 '무드'에 달린 것 같다. 일관성이나 원칙 없는 이런 입양기관의 '갑질'로 인해 입양인들은 스트레스, 불안, 심지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 국가가 국민의 기록을 보관, 관리하고 공개하는 것처럼 입양인들에 대한 모든 기록도 영리를 추구하는 사설입양기관이 아니라 공적인 국가기관에서 보관, 관리하고 공개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 **해외입양인들이 친부모를 찾기 위해 모국 방문시 통역지원 등 정부의 과감한 지원 절실**

해외입양인들은 외모만 한국인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외국인들이다. 이들이 성인이 되어 모국을 방문해 친부모를 찾고자 할 때 걸림돌 중 하나가 '언어장벽'이다. 친부모를 찾는 지난한 과정이나 막상 친부모를 찾아도 언어장벽으로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어렵다. 입양인들이 개인적으로 통역을 구하는 수고를 한국정부는 덜어 줄 의무가 있다. 친부모를 찾고자 방한한 해외입양들에게 정부는 무료로 통번역서비스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

◎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관련, 정부의 공식적 사과와 보상 필요**

지난 70년간 약 30만 명의 아동을 해외입양 보냄으로서 한국정부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였다. 이들 해외입양인 중 상당수가 어려서부터 인종차별, 아동학대, 인권침해를 받았고 성인이 되어서도 그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는 경우가 있다. 정부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직권조사나 이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해외입양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조사결과를 국가보고서를 통해 발표하고 피해자들에게는 국가의 사죄와 더불어 재정적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정부는 한부모 혹은 친부모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함으로써 입양이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일어나지 않게 조치 할 의무가 있다. 부득이하게 입양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국내입양을 우선시키고 해외입양은 전면 중지해야 향후 해외입양과정에서 발생할 인권침해를 근원적으로 차단 할 수 있다.

다음은 필자가 인터뷰 한 각각 해외입양인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인권침해사건의 일부를 소개한다.

**입양인 D**

그는 1970년 출생 후 미국으로 해외입양 보내졌다. 입양기관홀트에서 그의 입양부모후보에게 입양 전 심리검사를 하던 중 입양모 후보는 아동입양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이 나왔다. 그리고 결국 2번의 입양시도가 실패한 후 3번째 입양시도에서 입양모 후보는 입양부모를 위한 심리검사를 통과했다. 그 후 입양한 것이 바로 그였다. 그래서 그런지 그가 해외입양되고 난 후 그의 입양모는 그를 야단칠 때 마다 항상 “너는 내 3번째 선택이었어, 알겠니?”라며 소리쳤다. 그는 필자에게 회상했다. “불행하게도 양어머니는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제게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저를 마치 편

칭백처럼 때렸어요.” 이런 술한 양어머니의 폭행으로 그의 몸에는 지금도 흉터가 남아있다. 성인이 된 지금 그는 양어머니가 당시 어떤 욕구불만이나 정신질환이 있어서 자신을 그렇게 학대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에게 충격적이었던 것은 어린 시절 양어머니가 그에게 이런 말을 할 때였다. “나는 원래 파란 눈을 가진 백인 금발 여자아이를 입양하고 싶었다. 그런데 그런 아이를 입양하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했지. 그런데 너를 입양하는 것은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고 조건도 까다롭지 않았지. 가격도 싸서. 그래서 그냥 너를 입양했어.”

그는 양어머니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며 자랐고 백인이 아니고 파란 눈이 아닌 자기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렇게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 “입양가족의 집은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집에는 항상 큰소리와 큰 주먹이 날아다녔어요. 전 겁에 질려 구석에 앉아 지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30세가 되던 지난 2000년 그는 마침내 양부모와 아예 결별했다.

그는 지난 2001년 방한해 1970년 그 익산 부근에서 아이를 주었다는 기록이 있는지 익산경찰서에 문의했으나 그런 기록은 7년만 보관되고 폐기되어서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2001년 그는 한국 홀트를 방문해서 어떻게 입양 전 심리검사에 2번이나 떨어진 가정애 자기를 입양 보냈냐고 화를 내며 항의했다. 당시 홀트 직원의 반응은 뜻밖이었다. “미국에서 좋은 생활을 했잖아요? 영어도 할 줄 알고, 한국에서 영어도 가르치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는 그 직원의 뻘뻘스런 답변에 어이가 없었다. “제가 영어를 말할 줄 알고 가르치면 다른 것은 다 괜찮다고 그 직원은 모든 것을 정당화해서 정말 놀랐어요.” 라고 그는 필자에게 말했다.

그는 설사 해외입양이 불가피 하더라도 입양부모의 자격기준이 지금보다 훨씬 엄격하길 원한다. “홀트에서는 기독교 인이면 입양부모로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라고 그는 단호하게 말한다. “입양부모의 정신질환 이력도 충분히 검증되어야 합니다. 입양아가 입양부모의 구타로 제 경우처럼 몸과 마음에 부상을 당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으면 입양기관이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입양인 A

그는 국내입양기관에 의해 자신의 신분이 다른 아동의 신분으로 위조되어서 지난 1976년 미국으로 해외입양 보내졌다. 입양기관이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위조하였기에 그는 지금도 자신의 정체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아래는 그가 한국정부에 주는 권고 중 일부다.

“한국정부는 이제 그 국격에 맞게 해외입양인들을 보살펴 주어야 한다. 특별히 해외입양인이 친부모를 찾고자 시도 할 때, 정부주도의 유전자 검사를 포함,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과 지원이 필요하다. 아동권리보장원의 해외입양 담당직원은 현재 단 2명이다. 해외입양인 30만 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외입양 담당직원이 최소 50명 이상은 되어야 한다. 인권침해문제에 이렇게 소극적인 한국을 대할 때마다 나는 한국이 인권 3류국가임을 절절히 실감한다. 인터넷 강국이라는 한국 아동권리보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봐도 해외입양인이 담당직원과 연락 할 이메일 주소조차 없다. 이것은 한국정부가 얼마나 해외입양인 인권침해문제에 무관심한지 보여준다. 제발 한국이 국가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인권침해문제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

## 입양인 H

그는 1978년 미국으로 해외입양 보내진 후 그곳에서 33년을 살았지만 미국시민권이 없다. 일반적으로는 해외입양인에게 미국양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해줄 의무가 있다. 그러나 어떤 양부모들은 해외입양인에 대한 시민권취득 조치를 게으름이건 실수건 하지 않음으로써 그 의무를 방치한다. 그럴 경우 해외입양인은 미국에서 20~30년 이상 자란 후 어느 날 갑자기 미국정부에 의해 자기가 태어난 나라로 추방될 위기에 놓이고 실제 추방되기도 한다.

한국에서 태어난 지 생후 몇 개월 만에 미국으로 입양 보내져 한국으로 추방된 입양인은 한국말을 전혀 못하고 의식 구조도 한국인이 아니다. 그들은 입양 보내진 나라인 미국정부에 의해서 한국으로 추방되고 모국인 한국정부에선 이들 추방된 한국입양인들을 외면하고 있다. 해외입양인들의 생존권과 인권문제에 대해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방치된 입양인들의 생존권과 인권문제는 한미정부가 하루속히 공조하여 국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 실종된 해외입양인들의 생존권 문제에 대해 한미정부 공조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는 지난 2001년 입양부모에게 왜 자신을 한국에서 입양한 후 미국국적 취득을 신청 안했느냐고 물어보니 입양부모는 잊어버렸다고 답변했다. 그는 어이가 없었다. 그러나 나중에 미국이민국의 기록을 보니 그가 6살 때인 지난 1984년 입양부모에게 그가 미국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상기시키는 서신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었다. 그런데도 그의 입양부모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그의 입양부모는 그가 미국으로 입양오자마자 사회보장카드를 받도록 조치했다. 그렇게 하면서 그의 입양부모는 그로 인해 세금혜택 등을 받았다. 결국 그의 입양부모는 그들의 재정에 유리한 조치만 즉시 취한 것이고 돈이 얼마가 드는지는 모르지만 그에 대한 시민권취득 조치는 의도적으로 잊어버렸거나 게을리 한 것이다.

그는 지난 2001년 미국에서 미국시민권 신청과정을 밟았다. 그런데 당시 그가 미국에 이미 23년이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미국시민권을 신청할 수 없었고, 먼저 그린카드(영주권)신청자격을 얻어야 했다. 그래서 그는 2001년 그린카드 신청자격을 밟기 시작했는데 자격을 얻기까지 1년이나 걸렸다. 그래서 2002년에야 그린카드신청을 할 수 있었고 그 후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 복잡한 과정을 거쳐 7년이 지난 2009년에야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 미국정부는 그에게 미국시민권을 신청하려면 5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이미 미국에 31년간 살았는데 미국정부는 마치 그를 어제 미국에 금방 도착한 이민자처럼 대해서 그게 아주 불쾌했다고 했다.

미국시민권을 신청하려면 그가 5년 동안 미국 내에 그린카드로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유지해야 했다. 그런데 그는 지난 2011년 2월, 5년 이내에, 한국에 왔기 때문에 그린카드 효력이 끝나 미국시민권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했다.

미국에서 그를 마치 불법체류자나 2등 국민으로 취급하는 것이 진저리나도록 싫어서 그는 그가 자란 동네의 학비가 저렴한 주립대학을 가려고 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가 23년 이상을 살면서 자란 곳인데도 미국시민권이 없다고 그에게 외국학생처럼 비싼 등록금을 내라고 했다. 그는 그런 큰돈이 없었고 그래서 대학진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할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 그는 식당이나 창고 등에서 여러 가지 잡일을 닦치는 대로 하며 살았다.

그는 친모가 그를 아예 입양 보내지 않았으면 그의 인생이 훨씬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한국에서 살면서 어떤 생활고나 혼혈아에 대한 차별,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그가 미국에서 겪은 어려움, 고통, 외로움, 적막함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그는 생각한다. 그는 사랑하는 친모와는 어떤 어려움도 함께 오순도순 살면서 다 극복해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는 '입양이 영원히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필자에게 밝혔다.

## 입양인 J

그는 1964년 출생 3개월 후 미국으로 해외입양 보내졌다. 그는 미국에서 미국인과 결혼해 슬하에 아들도 하나 있다. 지난 1995년 그는 자신이 미국시민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다. 그 후 부터 그는 미국정부로부터 한국으로 추방위기에 직면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추방이 안 되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 와중인 지난 2012년 그가 48세가 되던 해 그는 중증 척추병으로 의사로부터 노동 불가 진단을 받았다. 의사로부터 노동 불가 진단을 받을 경우 미국시민은 월 2천 불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미국시민권이 없고 추방위기에 놓인 노동 불가 진단을 받은 그가 미국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월 862불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는 지금 하루살이와 같이 앞날이 불안한 생존을 하고 있다.

그는 1964년 생후 3개월 때 미국으로 입양 보내 진 후 왜 아무도, 한미 입양기관이나 정부가 입양사후관리를 전혀 안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는 두 나라의 입양기관과 정부가 그가 입양 후 미국시민권을 받았는지, 입양부모가 입양 아동을 잘 양육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전혀 점검하거나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것은 철저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미국시민권을 못 받고 한국으로 추방된 한국계 미국입양인 40세의 필립 클레이는 한국으로 추방된 후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이렇게 두 국가와 입양기관들에 의해 방치된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는 한국정부가 미국에서 시민권을 못 받고 추방된 해외입양인들을 위해 미국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요구한다. 아래는 그가 한국정부에 주는 권고 중 일부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미 추방되어서 거리에서 노숙을 하거나 고시원 생활을 하면서 고통 받고 있는 해외입양인들에게 한국정부의 금전적 지원이 절실하다. 이들은 인종적으로는 한국인 이지만 정서나 문화적으로 철저한 미국인이고 한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지인도 거의 없다. 만약 어느 한국인을 한국정부가 어느 아프리카 한 국가로 추방하고 언어도 안통하고 문화도 다르며 지인하나 없는 그곳에서 그 추방된 한국인이 제대로 생존 할 수 있기를 기대 할 수 있겠는가?

한국정부는 일본이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고 한국피해자에게 보상하지 않는다고 늘 불평한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해외입양인들에게 한국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가한 과오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즉 과거를 무시하거나 외면하고 사죄에 극도로 인색한 것이다. 아니 일본은 타민족인 한국인들에 대한 과거사를 부정하거나 외면하고 있는 것이지만 한국은 같은 민족인 해외입양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과거사를 부정하고 외면하고 있다. 즉 어떻게 보면 한국은 일본보다 더욱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 이제라도 한국정부는 그런 해외입양인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미국에서 시민권을 못 받고 한국으로 추방된 해외입양인들은 한국과 미국 두 나라에서 다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이들 추방된 입양인들은 정서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긴박한 상황에 놓여있다. 그래서 이들이 만약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이들이 모국에 무사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한국어와 한국문화 소개, 상담심리 등의 다각적이고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추방된 해외입양인들은 한국정부의 너무도 인색한 지원에 절망하여 노숙자나 범죄자로 전락하거나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발생한다.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추방된 해외입양인들 ‘미국과 한국은 둘 다, 왜 우리를 나 몰라라 하는가?’라며 절규한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한국정부는 미국에서 추방된 해외입양인들을 위해 과감하고 즉각적인 지원을 해 주기를 촉구한다.”

## 입양인 I

1983년 출생으로 추정되는 그는 1984년 미국으로 해외입양 보내졌다. 한 사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고비, 즉 그 출발선에 대한 국가책임의 유기로 인해 그는 지금까지 분투하고 있다. 한 아동이 한 부모에게서 태어나면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신의 출생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당연한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 한국 정부의 출생에 대한 무책임한 법과 정책 때문이다. 모든 인간의 포기하지 않는 정체성 추구는 존중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뿌리외집 김도현 목사는 이렇게 주장한다. “모든 사람의 건강을 위해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해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무한 보호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는 합의를 어느 정도 이끌어냈다. 이처럼 입양인 정체성의 권리실현을 위해선 개인정보보호법에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 친생부모의 곤혹을 보호하기 위해 입양인 정체성의 권리를 유보시키는 한국의 법제는 개혁되어야 한다. 한 그룹(친생부모)의 권리보호가 다른 그룹(입양인)의 권리를 빼앗아 지켜질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다른 어떤 권리도 자녀가 부모를 만나는 데 우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입양인의 친생부모에 대한 추적권은 한국정부에서 법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사생활이나 프라이버시를 자기 자녀에 대해 주장하는 부모는 너무나 무책임한 부모가 아니겠는가? 어떤 권리도 자녀가 부모를 만나는 데 우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는 한국정부에 이렇게 권고한다.

“한국 정부가 해외입양인이 친부모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헤아려주고, 해외입양인이 친부모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기본권 차원에서 정책과 법을 제정해 주었으면 한다. 인간이 자기 부모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런데 한국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입양인들이 친부모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런 면에서 한국정부는 해외입양 중 발생한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전문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입양과정에서는 꼭 아동 이익 우선의 원칙을 세우고 지켜야한다. 해외입양과정에서 절대로 재정적 이윤을 앞세우는 영리행위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 한국정부는 입양인들에게 자신의 부모와 가족, 즉 뿌리에 대해 알권리를 법으로 보장해주고 부여해 주어야 한다.”

## 입양인 E

그는 국내입양기관에 의해 신분이 위조되어 1982년 미국에 해외입양 보내졌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일과 이름 그리고 친부모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모른다. 그는 한국정부가 먼저 해외입양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인권침해 문제를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해외입양인들에게 사죄하기를 촉구한다.

한국전쟁 후에 시작된 해외입양은 빈곤과 가난의 산물이었다. 당시는 먹고 살기 힘들어 아이들을 해외로 보냈다고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면피를 받았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자고나면 G20, OECD 가입국,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떠든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막대한 해외입양(아동수출) 현황은 세계를 놀라게 한다. 혈연중심의 문화라 그런가? 문화가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잘못된 문화는 과감히 바뀌어야 한다. 조선시대 남존여비나 첩의 문화가 있다고 해서 그 문화를 오늘

우리가 따르고 지켜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잘못된 문화는 저주일 뿐 가꾸고 지켜야 할 가치가 전혀 아니다.

세계 최저출산율에도 지금도 진행 중인 우리나라의 해외입양아동 숫자는 세계를 놀라게 한다. 세계 최저출산율 국가라고 언론에서는 연일 보도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확실한 '해외입양대국'이다. 왜 그럴까? 입양인 친생부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싱글맘들이 열악한 복지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아이를 키우기가 극도로 어렵기 때문이다. 일반시민은 싱글맘과 그 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깨야 하고 정부는 싱글맘과 그 자녀에게 과감한 복지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 입양인 F

그는 1972년 생으로 어린 시절 프랑스로 해외입양 보내졌다. 그는 어린 시절 프랑스 입양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강간당하는 고통을 겪는다. 더욱 힘들었던 것은 자신이 입양부에게 강간당하는 장면을 한국에서 프랑스로 함께 입양된 남동생이 목격한 것이다. 더구나 그가 나중에 입양모에게 이 사건을 이야기하자 입양모는 “네가, 아빠를 유혹했잖아!” 하며 오히려 피해자인 그의 뺨을 때린 것이다. 이 사건은 그와 그 남동생에게 평생 현재까지도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17세가 되자 그는 입양부모 집을 떠났고, 그 후로 입양부모와 아예 연을 끊고 살고 있다. 그는 18세가 되던 해 자신을 강간한 입양부를 고소했다. 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입양부는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인 한국정부가 이제는 해외입양을 중단하고 자국민이 낳은 아이들은 스스로 돌보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과거 아이들을 해외입양이라는 명목으로 해외에 돈을 받고 판매한 것에 대해 한국정부가 해외입양인들에게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 입양인 G

그는 1968년 출생(추정) 후 1972년 스위스로 해외입양 보내졌다.

그는 해외입양인들이 2중국적을 받을 수 있도록 오랫동안 캠페인을 벌여 마침내 지난 2011년 국회법안을 이끌어내고 해외입양인 중 제일 첫 번째로 2중국적을 받은 입지전적인 해외입양인이다. 그는 해외입양이 정말 필요하다면 영리를 추구하는 사설 입양기관이 아니라 공적인 국가기관이 입양을 집행, 관리,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치 외국인에게 이민허가나 영주권을 부여하는 일도 이윤을 추구하는 사설영리기관이 아닌 공적기관인 정부기관이 하듯이 해외입양을 다루는 과정에도 이런 원칙과 절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 입양인 C

그는 지난 1982년 네덜란드로 해외입양 보내졌다. 그는 한국정부에 해외입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당부를 했다.

“한국정부는 해외입양을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 70년간 이뤄졌던 해외입양에 대한 기록을 정부가 사설 입양기관으로부터 전부 인계받아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 가능하면 이 기관에 이해당사자인 해외입양인들을 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이사진으로 채워야 한다. 현재의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인지원센터는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 그리고 해외 입양인들이 한국국적을 회복하는 방법을 아주 쉽고 간편하게 해줘야 한다.

그동안 해외입양으로 피해를 본 친모와 입양인들에게는 국가의 사과와 더불어 금전적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 특별히 싱글맘에 대해 한국사회는 편견을 버려야 하고, 정부는 과감한 재정적 지원을 해줘야 한다. 또한 입양과정에서 싱글 맘의 자녀를 고아로 둔갑시키는 신분세탁이나 위조 행위를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 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 입양인 B

그는 1966년 출생 후 1972년 친모가 사망했다. 생활고로 친부가 양육을 포기함에 따라 그는 고아원에 있다가 1975년 미국을 거쳐 캐나다로 입양 보내졌다. 캐나다에서 어린 시절 입양부에게 강간을 당했고, 지금까지 그 후유증에 시달리며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다. 입양되었을 당시 양부모가 40세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신을 입양할 수 있었는지 그는 전혀 이해 할 수 없다고 한다.

입양되기 전 한국고아원에 있을 당시 그는 수많은 폭력과 학대에 시달렸다고 한다. 그는 한국정부가 지금이라도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학대당하고 가혹한 폭력에 시달린 수많은 인권침해 피해자들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해외입양인들과 관련하여 그가 한국정부에 주는 권고다.

“해외입양인들에게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초대하는 한국정부 프로그램에 젊은 해외입양인으로 나이제한이 있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한국정부가 그런 나이제한을 철폐했으면 한다.

입양인들의 출생기록 등은 사설입양기관이 아닌 공적인 정부기관에서 보관하고 입양인이 원할 때 자신에 관한 기록을 아무런 제약 없이 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해외입양인이 친부모를 찾으러 모국 방문 시 한국정부에서 의무적으로 통역을 제공해 줘야 한다.

해외입양이 꼭 불가피하다면 사설입양기관이 아닌 한국정부에서 입양부모의 정신건강, 나이, 병력 등에 대해 철저히 사전조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입양 후엔 입양사후관리가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내 경우는 입양사후관리가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 나는 내 인생을 파괴한 한국을 증오한다.”

## 함께해주신 분들

뿌리의집이 [과거 해외입양절차에 있어서 인권침해조사 시범사업]의 고민을 시작한 시점은 몇해 전입니다. 뿌리의집 게스트하우스를 통해 수많은 해외입양인을 만나면서 입양기록의 부재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해외입양인들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계기로 해외입양인 당사자들의 권리를 우리 사회가 얼마나 외면해왔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나아가 법과 제도, 인식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주신 모든분들이 있었기에 이 보고서가 발간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b>조 사 기 관</b>	사단법인 뿌리의집
<b>협 력 기 관</b>	사단법인 두루
<b>후 원 기 관</b>	국가인권위원회 '2021년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
<b>조사참여자</b>	김도현(사단법인 뿌리의집 대표) 김성수(University of Sheffield 동아시아 역사학 박사, 전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전문위원, '함석헌평전' 저자) 김재민(성공회대 사회학 박사) 강정은(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김 진(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마한얼(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이정주(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한선필(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소라미(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임상교수, 변호사) 신필식(서울대 여성학 박사, 입양연대회의 사무국장) 황선미(사단법인 뿌리의집) 김창선(사단법인 뿌리의집)
<b>입양인 인터뷰이</b>	Dae-won Kim(Jan Wenger) 한국명 김대원 Emily Warnecke 한국명 강숙원 Kara Bos 한국명 강미숙 Kim Goudreau 한국명 김명숙 Matthew Robert Scherer 한국명 서마테로버트 Robyn Park 한국명 박주영 Shiko Yoon-shik Boxman 한국명 김윤식 익명을 원한 세 분의 입양인
<b>관계자 인터뷰이</b>	김유경(배넷 대표) Dave Ripp((사)해외입양인연대 G.O.A.'L 친가족찾기어드바이저) 익명을 원한 세 분의 입양관계자
<b>자료조사</b>	최진경(사단법인 뿌리의집)
<b>녹취 및 번역</b>	김훈밀 이미영 이수인 이수현 채선도 최경인 최윤정 Marc Champod, Rose Ingle Young Kim, Kris Pak
<b>녹취 및 번역 자원활동</b>	류지원 박지민 백수민 임옥규 홍성애

## 해외입양인과 함께하는



뿌리의집은 현대의 마음 위에 세워진 해외입양인을 위한 게스트하우스이자 해외입양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우리 사회의 입양담론 형성과 전개에 사려깊은 관점을 모색하는 시민단체입니다.

### 설립목적

2003년에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뿌리의집 (KoRoot: The House of Korean Root)은 대한민국 태생의 해외입양인의 모국 방문과 재정착 과정을 지원하며, 그들의 인권신장에 기여하고, 입양인과 우리사회 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입양인의 정체성 함양과 더불어 해외입양에 관한 우리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입양인 및 입양인 원가족들과 양육미혼모들과의 연대 안에서 우리 사회의 친생가족중심의 양육체계 확립에 적극 기여하고자 합니다.

### 주요사업

- 해외입양인쉼터사업 : 해외입양인 전문 게스트하우스 운영
- 모국생활지원사업 : 해외입양인 모국생활의 실질적 필요나 가족찾기 지원 및 명절행사
- 권리옹호사업 : 해외입양인과 친생부모의 권익을 옹호하는 제도개선 및 연대활동
- 연구사업 : 해외입양에 대한 인식과 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활동
- 출판사업 : 해외입양 담론의 다양화를 위한 출판사업

### 후원안내

뿌리의집은 후원자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우리사회에서 자신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애쓰는 해외입양인들의 권익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후원자분들의 따뜻한 지지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기부금지정대상단체.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혜택)

자동이체후원(CMS) : CMS란 자금관리서비스(Cash Management Service)로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직접 회비를 출금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 뿌리의집 홈페이지 후원신청 및 직접 연락 신청.(출금일 매월 24일)

카드후원 : 카드납부 시 1.87%의 수수료 공제 후 입금. 뿌리의집 홈페이지 후원신청 및 직접 연락 신청.(승인일 매월 20일)

개별 입금 및 은행 자동이체 등록 : 직접 입금 및 자동이체 등록. 아래 후원계좌 참조.

신한은행 : 100-019-570796      예금주 : 사단법인뿌리의집

국민은행 : 343601-04-006975      예금주 : 사단법인뿌리의집





국가인권위원회 2021년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

**과거 해외입양절차 인권침해사례 보고서:  
심층 인터뷰**

**해외입양인 당사자들의 목소리**



03031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25-10  
T. 02-3210-2451 F. 02-3210-2453  
[www.koroot.org](http://www.koroot.org)

Copyright©KoRoot. All rights reserved.